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673-01

2017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본 보고서의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보이스아이(VOICEYE)가
실려 있습니다.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인권상황 실태조사



Nation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11. 28

연구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현명호 (중앙대학교)
공동연구원: 이민규 (경상대학교)
 김민경 (라포심리연구소)
 김형래 (서울사이버대학교)
연구원: 조윤경 (중앙대학교)
 박경지 (중앙대학교)
 김형택 (중앙대학교)
 이유지 (중앙대학교)
 조재희 (경상대학교)
 오연경 (경상대학교)
 정그린 (경상대학교)

< 목 차 >

요 약	3
1. 서론	23
가. 연구 배경	23
나. 연구 목적	25
다. 연구 방법	26
1) 방문 조사	27
가) 설문 조사	27
나) 심층 면접	27
2) 문헌조사	28
라. 연구 범위	28
2.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31
가. 국내사례	31
1) 국방헬프콜	31
2)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31
3) 병영생활상담관과의 상담	32
4)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32
가) 그린캠프	32
(1) 입·퇴소 절차	33
(2) 운영	34
나) 블루캠프	36
(1) 입·퇴소 절차	36
(2) 운영	37
나. 해외 사례	38
1) 독일	38
가) 대표병사	38

나) 지휘계통	38
다) 국방 ombudsman	38
2) 이스라엘	39
3) 대만	39
가) 대상별 심리위생교육 체계	40
나) 심리보도업무 체계	40
4) 미국	41
가) Combat and Operational Stress Continuum(COSC) Model (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Borden Institute, 2011)	41
나) Operation Stress Control and Readiness (OSCAR) program (Rand Corporation, 2015)	42
5) 영국	43
가) Trauma Risk Management (TRiM) (Greenberg, Lanston, & Jones, 2008)	43
나) Field Mental Health Team(FMHT)(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Borden Institute, 2011)	43
다) Depart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DCMH)	44
라) The Reservist Mental Health Programme(RMHP) (Pinder, Fear, Wessely, Reid, & Greenberg, 2010)	44
마) King's Centre for Military Health Research (KCMHR)(Pinder et al., 2010)	44
다. 요약 및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44
3. 군복무 부적응 관련 인권침해 실태	49
가. 문헌조사	49
나. 방문조사	52
1) 군 인권 실태	52
가) 대상별 결과 분석	52
(1) 캠프 입소병사	52
(2) 캠프 도우미병사	58
(3) 캠프 운영 간부	61
(4) 일반병사	64
(5) 일반 간부	68

나) 대상 간 비교분석	74
(1) 인권침해 예방교육	75
(2) 인권침해 실태	75
(3) 인권침해 구제제도(대책)	78
다) 결과 요약	82
(1) 대상별 결과 분석 요약	82
(2) 대상간 비교 분석 요약	83
2)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 실태	84
가) 대상별 결과분석	84
(1) 캠프 입소병사	84
(2) 캠프 도우미병사	87
(3) 캠프 운영 간부	87
(4) 일반병사	90
(5) 일반 간부	92
나) 대상 간 비교분석	93
(1) 인권침해 실태	94
(2) 인권침해 구제(대책)	98
다) 결과 요약	100
(1) 대상별 결과 분석 요약	100
(2) 대상간 비교 분석 요약	101
라) 입소사유별 유형화	102

4.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개선방안 107

가. 입소전 인권침해경험 및 개선방안	107
나. 입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108
다. 캠프 입소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109
라. 자대복귀 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111
마. 군 전반적인 인권 관련 개선방안	112

5. 결론 및 제언 117

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17
나. 기대효과	122



참고문헌	127
부 록	131
가. 군 인권 실태	131
나.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그린/블루캠프)에서의 인권실태	144
면담지 정리	146
의견조사(그린캠프_입소병사용)	169
의견조사(그린캠프_도우미병사용)	179
의견조사(그린캠프_간부용)	185
의견조사(일반부대_일반병사용)	190
의견조사(일반부대_간부용)	197
의견조사(일반부대_복귀병사용)	203

< 표목차 >

[표 1] 연구 흐름도	26
[표 2] 최근 3년간 그린캠프 입소 및 퇴소 현황('14년~'16년)	34
[표 3] 그린캠프 표준 프로그램 (개인별 심리평가, 집단상담, 심리치유 등)	35
[표 4] 최근 3년간 블루캠프 입소 및 퇴소 현황('14년~'17년 9월)	36
[표 5] 블루캠프 표준 프로그램	37
[표 6] 인권침해 구제제도 인지 및 경험 여부와 만족도	55
[표 7]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과 이유	56
[표 8] 인권침해 구제방법 운영실태	57
[표 9] 군 내 인권침해 경험 시 효과적인 구제방법	57
[표 10]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경험유무와 만족도	60
[표 11] 군 인권 실태 문항별 응답 대상	74
[표 12] 인권침해 방지 시 주도적 역할	75
[표 13] 입소 전 인권침해/복무 부적응 병사 피해사항	78
[표 14] 인권침해 구제 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부서	78
[표 15] 인권침해 구제방법 경험유무	80
[표 16] 인권침해 구제방법 운영실태	81
[표 17] 인권침해 구제방법 불만족 이유	81
[표 18] 캠프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	84
[표 19] 캠프 내에서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험	87
[표 20] 캠프 내 인권 실태 문항별 응답 대상	93
[표 21] 캠프 내 인권침해 경험(목적)_인적 침해요인	96
[표 22] 캠프 내 인권침해 경험(목적)_비인적 침해요인	96
[표 23] 캠프 복귀병사가 겪는 인권침해(피해사항)	97
[표 24] 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	97
[표 25] 군 내 인권침해 경험 시 효과적인 구제방법	98
[표 26] 입소병사/ 복무부적응 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	98
[표 27] 입소병사/ 복무부적응 병사 피해사항 처리 시의 어려움	99
[표 28] 입소병사 (지휘병사)에게 인권 관련 문제가 생길 시 해결 방법	99
[표 29] 캠프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 해소를 위한 방법	99

표 부록 목차

[표 1]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과 이유	141
[표 2]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실태	141

[표 3]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경험 유무와 만족도 142
 [표 4]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 및 이유 142
 [표 5] 인권침해 구제방법 운영실태 143

< 그림목차 >

[그림 1] 국군 심리보도업무체계 41
 [그림 2] 인권 교육 내용 52
 [그림 3]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53
 [그림 4] 군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 53
 [그림 5]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구제 요청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54
 [그림 6] 군대에서 인권침해시 상담할 대상 55
 [그림 7] 구제방법을 이용해보지 않은 이유 56
 [그림 8] 캠프 입소 전 겪은 인권침해 58
 [그림 9]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59
 [그림 10] 구제 요청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 60
 [그림 11]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61
 [그림 12] 인권교육 내용 62
 [그림 13] 인권교육 강사 62
 [그림 14] 인권침해 구제 가장 효율적인 기관/부서 63
 [그림 15] 인권교육 내용 64
 [그림 16] 인권교육 강사 64
 [그림 17]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65
 [그림 18] 병사 인권에 취약한 부분 65
 [그림 19] 인권침해 구제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기관/부서 67
 [그림 20] 복무 중 겪어본 복무부적응병사의 유형 67
 [그림 21] 복무부적응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68
 [그림 22] 병사에게 인권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 방법 69
 [그림 23] 병사 인권에 취약한 부분 69
 [그림 24] 인권교육 내용 70
 [그림 25] 구제 요청이 증가하였다 생각하지 않은 이유 70
 [그림 26] 인권침해 구제 가장 효율적인 기관/부서 71
 [그림 27] 주로 접한 부적응 병사의 유형 72
 [그림 28] 복무부적응 병사 피해사항 처리시 어려운 점 72
 [그림 29]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부적응 병사 인권이 침해된다 생각하는 이유 73
 [그림 30] 군 내 심리적 어려움의 주된 이유 76
 [그림 31] 병사의 취약한 인권 76

[그림 32] 경험한 복무부적응병사 유형	77
[그림 33] 구제방법 이용하지 않는 이유	80
[그림 34] 캠프 복귀병사가 겪는 인권침해	86
[그림 35]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 해소를 위한 방법	86
[그림 36] 입소 병사 인권에 취약하다 생각하는 부분	88
[그림 37] 주로 접한 캠프 입소 병사 유형	89
[그림 38] 피해사항 처리 시 어려운 점	89
[그림 39] 캠프 복귀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90
[그림 40] 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	91
[그림 41] 캠프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해소 위한 방법	91
[그림 42] 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	92
[그림 43] 복귀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92
[그림 44] 캠프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 해소를 위한 방법	93
[그림 45] 캠프 입소의 주된 이유	94
[그림 46] 캠프 입소병사와 일반병사의 취약한 인권	94
[그림 47] 캠프 입소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95

그림 부록 목차

[그림 1] 인권교육 장소	131
[그림 2] 입대 후 인권교육 횟수	131
[그림 3] 인권교육 강사	131
[그림 4]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구제 요청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132
[그림 5] 인권침해 구제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기관/ 부서	132
[그림 6] 인권교육 내용	132
[그림 7] 인권교육 장소	133
[그림 8] 입대 후 인권교육 횟수	133
[그림 9] 인권교육 강사	133
[그림 10] 병사들의 인권에 취약한 부분	134
[그림 11]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	134
[그림 12] 인권침해 구제 가장 효율적인 기관/ 부서	134
[그림 13]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	135
[그림 14] 인권교육 장소	135
[그림 15]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135
[그림 16]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 집단	136
[그림 17] 병사들 계급 분포	136
[그림 18] 인권교육 장소	136

[그림 19] 인권교육 횟수	137
[그림 20]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137
[그림 21]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	137
[그림 22]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구제요청 이용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138
[그림 23] 병사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된 이유	138
[그림 24] 인권교육 장소	138
[그림 25]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	139
[그림 26] 인권교육 강사	139
[그림 27]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139
[그림 28] 군내 인권침해 방지 위해 주도적 역할 해야 할 기관/집단	140
[그림 29] 병사들이 군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주된 이유	140
[그림 30] 복무부적응 병사들이 겪는 피해사항	140
[그림 31] 복무부적응 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	141
[그림 32] 입소 병사들에게 인권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 방법	144
[그림 33] 입소 병사들이 캠프에 오게 되는 주된 이유	144
[그림 34] 캠프 입소 병사들이 겪는 피해사항	145
[그림 35] 입소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	145



요 약



요 약

1. 서론

가. 연구 배경

- 한국에서 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시각은 매우 폐쇄되고 경직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안보특성상 징병제 운영으로 인해 젊은 청년들은 강제성이 동반되는 수동적 자세로 군에 입대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내 인권 문제는 군내 구타 및 각종 악성 사고, 사망 사고 등과 맞물려 많은 논란이 되어 왔음.
- 군인의 인권문제의 해결은 군내 사망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국방부에서는 사망 문제 및 악성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병영 내 부적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전캠프, 힐링캠프, 그린/블루캠프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캠프를 운영하여 왔으나 이러한 군의 사고예방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과 실행, 인식 등의 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 현재 그린/블루캠프는 육군 군단급 부대 20개소와 해군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캠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방안과 시설기준, 프로그램의 전문성, 운영 인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인권위원회(2012)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취약한 복무부적응 병사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그린/블루캠프에 입소한 병사의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서는 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인권침해에 대한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첫째, 그린캠프 운영에 있어 입소자들이 세심하게 보호받지 못한 다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지적이 있음. 둘째, 자대배치 후 군복무 부적응으로 식별되어 그린 캠프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소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권침해의 문제가 나타났음. 셋째, 그린캠프에 입소하게 되면 개인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은 물론이고 부대 내 조직 구성원이 암암리에 알게 되어 자대복귀 후에 복무에 적응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파악되고 있음. 넷째, 군복무 부적응 문제로 전역하는 경우 사회적 장면에 복귀하여 적응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 사회복귀를 위해 전역 전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2012).
- 본 연구에서는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인권문제 발생실태와 요인 그리고 외국군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육·해·공군 실무부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금까지 군내의 캠프 운영 등 복무부적응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응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의 특성과 현실에 적합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인권침해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1)육·해·공군을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2)현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무 적응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군복무 부적응자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복무 부적응 병사는 국가인권위원회(2006)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1)군 입대자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2)군대 조직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요인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3)개인의 안녕 및 군대와 일반 사회의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현재 나타내거나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사를 지칭함.

다. 연구 방법

1) 방문 조사

가) 설문 조사

- 육·해·공 각 부대를 방문하여 총 6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총 3개의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캠프 또는 병역심사관리대 입소병사 37명, 도우미 병사 36명, 간부 14명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후 다시 일반부대로 복귀한 병사 3명에 대해서도 설문을 실시함
- 일반 부대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일반병사 각 251명, 112명, 110명과 간부 17명, 11명,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 설문은 인권 교육의 경험 및 실태,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복무 부적응 병사 및 그린캠프(블루캠프) 입소병사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음.

나) 심층 면접

- 심층 면접은 방문 조사 해당 부대의 휴게실, 면담실 등 조용한 공간으로 인터뷰에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인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 부대에서는 심층면접 목적상 인원별로 구분(입소자, 도우미병사, 간부)하여 각각 2~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면접의 내용으로는 인권 교육 경험(효과, 만족도, 개선점 등),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그린캠프(블루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그린캠프(블루캠프) 운영에 대한 개선점, 입소 상의 인권침해 사항, 병사에 대한 처우, 병사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질문하였음.

2) 문헌조사

-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획득하기 위해 군 관련 기관의 문서, 규정, 실태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관련 저널 및 참고문헌을 수집하였음.
- 외국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사례를 획득하기 위해 해외 저널 및 참고문헌을 수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음.

라. 연구 범위

- 첫째, 국내·외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살펴봄.
- 둘째, 육·해·공군 부대를 방문하여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함.
- 셋째,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인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2.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국내사례

- 국내사례에서는 현재 병사가 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과 군에서 현재 병사의 군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봄. 병사가 군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들 가운데 가장 인지도가 높은 국방헬프콜,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병영생활상담관과의 상담에 대하여 알아보고, 군 생활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육군의 그린캠프와 해군의 블루캠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

1) 그린캠프

- 육군에 입영한 병사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신병교육단계, 자대복무단계의 검사를 통과한 후 해당 부대로 배치되어 본격적인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됨. 식별과정 중에서 관심병사로 판단되는 병사는 그린캠프 교육대에 입소하게 되며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병사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함.
- 그린캠프는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 식별한 복무부적응자, 자살우려자를 관리 및 치료하여 자살 예방은 물론 사단급 이하 부대가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단급(2작전사령부 예하는 사단급 부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교육대라고 할 수 있음.

가) 입 · 퇴소 절차

- 그린캠프 입소 기준은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2016. 4. 1. 부분개정)」 제 17조 5항(입소대상자 및 입·퇴소절차)을 기준으로 하며, 입소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뜻함.
 - (1)복무 부적응자로서 부대에서 다른 병사와의 갈등이 있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병사, (2)자살우려자로서 입대 전/후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신인성검사 결과에서 정서 불안이 나타나고 자살징후가 식별된 병사, (3) 그밖에 전투력을 저해하거나 지휘부담,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병사가 입소 기준에 따라 그린캠프 교육대에 입소할 수 있음.
- 그린캠프 퇴소 심의는 현역복무부적합 인원에 대한 처리를 위해 육군규정(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2016.4.1.,부분개정)」 17조 5 ②)을 준수함.

- 심의위원회 구성: 군단 참모장(위원장), 상담관, 교육대장, 교관요원 등
- 적응여부 평가: 그린캠프 교육 관찰 결과, 진료소견서 등을 토대로 평가
- 결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대복귀, 차후 재입소, 병역심사관리대 입소로 결정
- 최근 3년 간 그린캠프의 입소 및 퇴소인원 현황

〈최근 3년간 그린캠프 입소 및 퇴소 현황 ('14년 ~ '16년)〉

구분	총 입소인원	치유 후 자대복귀	재입소후 자대복귀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14년	3,132명	1,511명	795명	826명
'15년	3,310명	1,489명	909명	912명
'16년	3,493명	1,385명	889명	1,219명
계	9,935명	4,385명	2,593명	2,957명

(출처: 국방부)

나) 운영

- 그린캠프 주요프로그램 운영 및 편성은 정규 프로그램 2주, 총 8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육군본부 정책연구보고서(그린캠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2017)에서 조사한 20개의 그린 캠프 중 16개(80%)가 육군규정에서 제시한 2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3주간 운영하는 캠프 2곳, 4주간 운영하는 캠프 2곳으로 나타났음.
- 그린캠프 교육이 끝나면 병역심사관리대로 연계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대로 복귀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주간의 그린캠프 표준 프로그램 내용

〈그린캠프 표준 프로그램 (개인별 심리평가, 집단상담, 심리치유 등)〉

구분	월	화	수	목	금
1주차	입소/등록 심리평가 자기소개	미술·웃음 치료	체육활동	음악치료	스트레스 해소법
			개별상담		
2주차	미술·웃음 치료	분노조절	봉사활동	집단상담 음악치료	개인정비 퇴소
		상담치료			

※부대별 강사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대별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 운용

(출처: 국방부)

-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2016.4.1., 부분개정)」에 따르면 그린캠프 운영 인원은 교육대장(원사) 1명, 행정담당관(중·상사) 1명, 분대장 3명, 행정병 1명이며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운영 인원은 인성지도 능력을 보유한 우수한 자 선발을 원칙으로 함.

2) 블루캠프

- 해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복무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의 선도·치유를 위해 블루캠프를 운영함.
- 블루캠프 기간 동안 군복무 적응 가능성과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후속 조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가) 입·퇴소 절차

- 블루캠프 입소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함.
 - (1)전대급 부대장 건의를 통해 장성급 부대장이 승인한 자, (2)장성급 부대 '신상관리위원회'에서 입소대상자로 의결된 자.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요구되거나 현역복무부적합자, 사고자 중 처벌(징계) 등 미조치자는 입소 대상에서 제외됨.
- 블루캠프 퇴소자는 복무적응도 심의결과에 따라 후속 관리됨. 부대 재배치 대상자는 신소속 부대 간부가 직접 인솔하여 인계되는 반면, 병역처분 변경 조사 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조사 후 장성급 부대장 책임 하에 추가적인 교육 및 관찰 또는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병역처분 변경 심사절차에 의거하여 조치됨.
- 최근 3년 간 블루캠프의 입소 및 퇴소인원 현황

〈최근 3년간 블루캠프 입소 및 퇴소 현황 ('14년 ~ '17년 9월)〉

구분	총 입소인원	자대복귀	재입소	전역
'15년	80명	59명	2명	19명
'16년	103명	74명	6명	23명
'17년 (~9월)	89명	69명	2명	18명
계	272명	202명	10명	60명

(출처: 국방부)

나) 운영

- 블루캠프는 해군교육사, 1/2/3 함대에 설치하여 지역 개념으로 운영됨.
- 운영 주기는 월 1회이며, 운영 기간은 2주로 규정되어 있음. 운영 주기는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되며, 운영기간은 추가적인 교육관찰이 필요할 때 1주 추가됨.
- 블루캠프 표준 프로그램 내용

〈블루캠프 표준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1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등록, 사전교육, 입소 통보(입소자 가족) • 집단/개별 상담 및 심리치료, 군기/군법교육, 분노조절 교육 • 영화감상(휴먼드라마), 심리극/미술/웃음/음악 치료(외부강사)
2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상담 및 심리치료, 심리극/미술/웃음/음악 치료(외부강사) • 근무체험, 사회봉사활동, 군종장교 면담, 영화감상(휴먼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관계관 면담, 복무적응도 심의(재배치 또는 부적합조치 결정)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과 군의관·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근무체험, 가족상담, 인사관계관 면담

(출처: 국방부)

- 해군 블루캠프 운영지침에 따르면 블루캠프 운영인원은 교육대장(진행관), 관리대장, 정신과 군의관, 지도관, 헌병수사관, 군종/법무장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구성됨.

나. 해외 사례

- 병사가 군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 군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봄.

1) 독일

- 군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원수리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표병사, 지휘계통, 국방옴부즈맨에게 소원수리를 함으로써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4).

2)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병사가 전투로 인해 경험하는 각종 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와 복무 중 경험할 수 있는 부적응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복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Mental Health Center를 운영 중임(국가인권위원회, 2012).

3) 대만

- 대만은 군 인원을 세분화하여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병사의 부적응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음.
- 병사 상담지원, 심리 건강교육, 심리평가, 자살방지를 목적으로 총 7개의 「지구심리위생센터」를 설립하고, 국군 심리상담 「3단계 치료체계」 및 지역협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국방대학교, 2008).

4) 미국

- 미국은 병사의 스트레스 대처 수준을 연속선상에서 구분하여 모든 병사의 적응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을 제공하는 Combat and Operational Stress Continuum Model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소속 전문가, 외부 전문가, 병사, 간부로 이루어진 정신건강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자살예방에 관하여 육·해·공군이 군 특성에 부합하는 개별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5) 영국

- 영국은 동료병사의 지지에서부터 정신의학적 치료 기관으로의 연계까지 단계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군대 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가장 먼저 동료 지지체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 전문가팀으로 연계되어 복무 가능 여부가 판단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 정신건강 연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다. 요약 및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 국내에서 병사가 군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살펴보고 병사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해외 제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병사 제도는 병사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함. 반면에 우리나라 군대의 소원수리 제도는 병사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째,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이 독자적으로 군 병사의 부당한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병사가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휘관을 통하여 군내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모든 군 관련 문제의 해결 및 결정권이 군 내에 소속되어 있어 해당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뢰로운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셋째, 미국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OSCAR 제도를 활용하여 병사가 호소하는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 도움과 조언을 제공함. 우리나라에서도 병영생활상담관이 각 부대에 상주하여 병사가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군대 지휘체통의 특성상 병영생활상담관의 독자적인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며 군대 지휘체통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됨.
- 넷째, 대만의 지구위생심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심리위생 교육은 외부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되며 간부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간부가 병사의 정신적 문제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3. 군복무 부적응 관련 인권침해 실태

가. 문헌조사

- 송용석(2006)은 군에서는 군 기밀과 관련된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제한, 해외여행 금지, 군무 외의 집단행위 제한 등과 같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부대의 임무수행과 기강

확립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으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음.

-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2)에 따르면, 병사의 자유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사생활의 미보장, 계급이나 직책의 권위의식에 대한 위압감, 상급자들의 개인적인 일 지시, 분대장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 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파악하였음. 행복추구권적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병사 복지 차원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병사는 개인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이 부족하고 전화기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음. 통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병사의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군 내에서 일반병사의 기본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었음.
- 양철호 등(2005)의 연구에서 군 복무자의 기본 인권 중 생존권의 측면에 대해 병사가 군 복무기간 중 생활하는 주거시설이 매우 열악하며, 병영문화의 경직성과 폐쇄성, 비밀주의와 권위주의적인 특징이 있고, 자유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임태훈, 2013)에서는 병사의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8.5%가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구타를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는 병사도 17.7%에 달했음. 김형래(2016)의 연구에서는 군대 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병사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졌으며, 폭행 경험은 전역 이후 사회생활에 다시 복귀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음.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및 2013년 임태훈의 연구 결과에서 군에서 병사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원수리 제도의 신뢰성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병사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용하지 않는 병사에게는 신뢰성면에서도 부족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임태훈(2013)의 연구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진정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인지도를 확인하였을 때, 각 기관별로(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담당 부서) 59.3%, 72.5%, 67.5%의 비율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진정 의사를 파악하였을 때 각 기관별로(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담당 부서) 79.3%, 75.7%, 75.7%의 비율로 진정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진정 의사가 없는 병사는 기관별로(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담당 부서) 56.9%, 71.2%, 67.1%의 비율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개인의 구제요청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4)에서 간부의 20.2%, 병사의 29.1%가 군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대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형식적이라는 점과 교육 이후에도 상급자가 변화하는 것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부적응 집단의 경우 73.7%의 병사가 인권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답하는 등 교육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나. 방문조사

1) 군 인권 실태

가) 대상 간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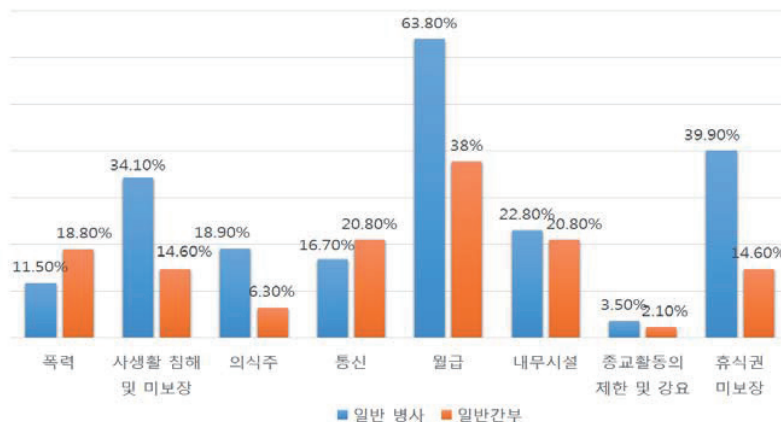
(1) 인권침해 예방교육

- 인권교육의 내용은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범위 및 의무’(병사 76.8%, 간부 76.4%),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로는 ‘자대’(병사 79.7%, 간부 89.1%), 인권교육의 횟수는 ‘2-3회’(병사 61.7%, 간부 58.2%)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 인권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본 결과,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대부분 ‘변화 없다’(87.5%)에 응답한 반면, 일반병사와 간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선되었다’(일반병사 60.5%, 간부 87.3%)에 응답하였음. 또한 ‘변화 없다’ 또는 ‘저하되었다’로 보고한 응답자 중 인식이 변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권교육이 형식적임’(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 78.6%, 일반병사 71%, 간부 100%)에 높게 응답하였음.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 및 집단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국방부 등 상급부대’가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일반병사 및 간부의 경우에는 ‘지휘관’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2) 인권침해 실태

- 군에서 병사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 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자발적 입대’, ‘선임과의 갈등’, ‘성격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병사의 인권 처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부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대체로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평균 3.35점, 4점 척도).

병사의 취약한 인권



- 병사의 취약한 인권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병사의 경우 ‘월급’, ‘휴식권 미보장’,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간부의 경우에는 ‘월급’, ‘내무시설’ 및 ‘통신’, ‘폭력’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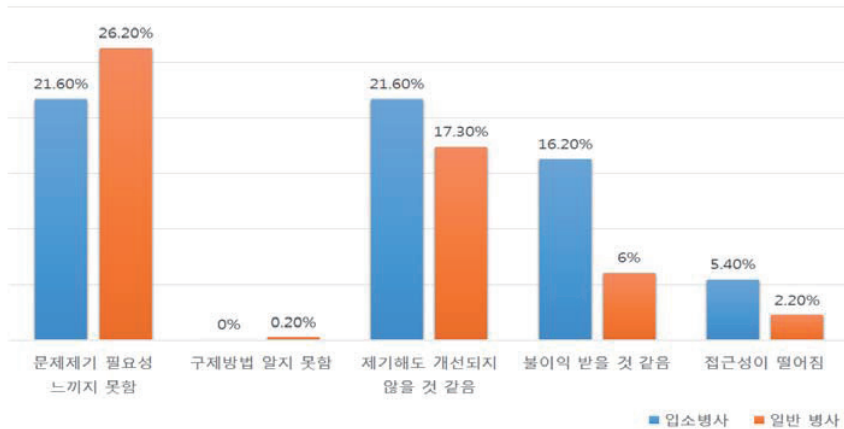
-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병사의 경우 군 내에서 인권침해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평균 2.04, 4점 척도).
- 복무부적응병사 유형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간부는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반면에 병사는 '낮은 실수 및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에 높게 응답하였음.
-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무부적응 병사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일반 간부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평균 2.15, 4점 척도).
- 복무부적응 병사의 군대 적응을 위해 '도움/배려 병사 관리 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평균 2.2점, 5점 척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후임들의 무시·편견·안 좋은 시선, 낙인,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됨, 부담감 등이 있었음.
- 병사의 복무부적응이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병사의 경우 약간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3.03, 4점 척도) 간부의 경우에는 꽤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평균 3.27, 4점 척도). 또한,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병사의 경우 약간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2.75, 4점 척도), 간부의 경우에는 약간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평균 2.97, 4점 척도).
- 복무부적응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병사와 간부 모두 '없음'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3) 인권침해 구제제도(대책)

- 병사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 또는 구제 요청 이용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일반병사와 간부 모두 조금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캠프 입소 병사의 경우, 그린캠프 입소병사는 '변화 없다'(42.9%)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블루캠프 입소병사는 '조금 증가하였다'(50%)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 인권침해 구제 방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 일반병사 및 일반간부의 경우 '지휘관 및 주임원사'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그린/블루캠프 간부의 경우에는 '감찰부서'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 병사에게 인권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일반간부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해당 지휘계통으로 보고해 해결'(66%)이 가장 많았음. 또한, 복무부적응 병사에게 피해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로는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처우개선'(65.2%)이 가장 많았음.
-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평균 2.5점, 4점 척도).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징계 등 사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평균 2.2점, 4점 척도). 알고 있는 인권침해 구제방법으로는 '소원수리(마음의 편지)'(89.2%) 및 '국방 헬프콜'(89.2%)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인권침해 시 구제방법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이용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일반병사의 경우 ‘지휘관과의 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인권침해 시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병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문제 제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및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에서 높았음.

구제방법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인권침해 구제방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병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지휘관과의 대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이 잘 운영된다고 인식하였음. 반면에 ‘외부 NGO 단체’, ‘국방신문고’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누구와 상담할 것인지에 대해 캠프 입소병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육군의 경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66.7%), 해군의 경우 ‘주임원사’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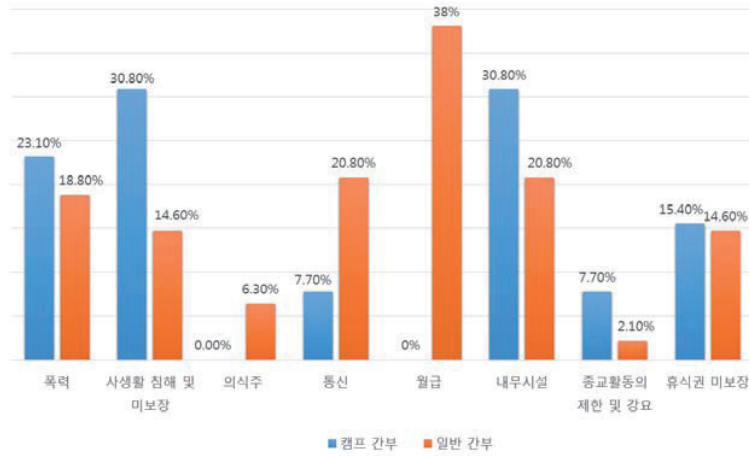
2)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 실태

가) 대상 간 비교분석

(1) 인권침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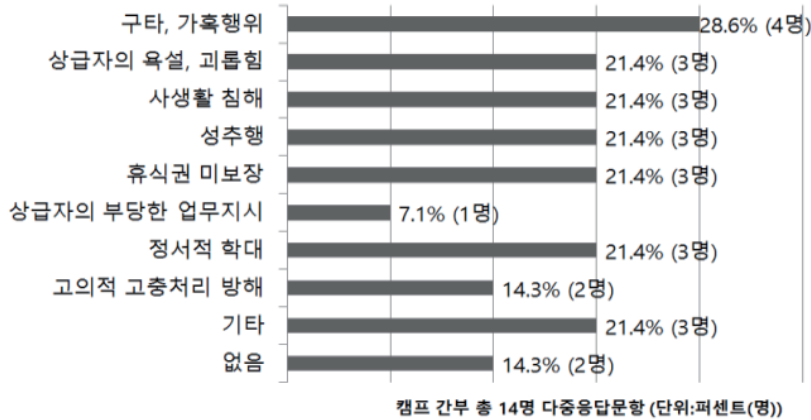
- 캠프입소의 주된 이유에 대해 그린/블루캠프 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임병과의 갈등’, ‘가정문제’, ‘성격문제’에 높게 응답하였음.
- 캠프 입소병사의 취약한 인권에 대해 캠프 간부에게 알아본 결과,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과 ‘내무시설’에 높게 응답하였음. 반면에 일반병사의 취약한 인권에 대해 일반간부에게 알아본 결과, ‘월급’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캠프 입소병사, 일반병사 취약한 인권



-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의 인권에 대한 처우를 캠프 간부에게 알아본 결과 처우가 꽤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평균 3.57, 4점 척도).
-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에 대해 캠프 간부에게 알아본 결과, ‘구타, 가혹행위’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그린/블루캠프 입소 병사들이 겪는 피해사항



- 그린/블루캠프 내 인적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 캠프 입소병사에게 알아본 결과, 그린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고민이나 건의사항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 상담을 포기’(42.9%), ‘계급과 직책의 권위의식으로 인해 위압감을 느낌’(33.3%)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반면에, 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캠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입소하게 됨’(41.7%) 및 ‘계급과 직책의 권위의식으로 인해 위압감을 느낌’(41.7%)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또한 그린/블루캠프 내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험에 대해 캠프 도우미병사에게 알아본 결과, ‘상급자들이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지시’, ‘자유시간, 정비시간, 자기계발 시간 등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음’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 그린/블루캠프 내 비인적 인권침해 경험을 캠프 입소병사에게 알아본 결과, 그린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38.5%), ‘그린캠프 내에 마땅히 될 곳이 없음(휴식시설 부족)’(33.3%)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반면에, 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전화기 등과 같은 편의시설의 부족(통신시설 부족)’(83.3%),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66.7%)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또한 그린/블루캠프 내 인권침해 목적을 캠프 도우미병사에게 알아본 결과, ‘개인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 시설의 부족(운동시설 부족)’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 그린/블루캠프 복귀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캠프 입소병사, 일반병사, 일반간부 모두 ‘없음’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였음.

그린/블루캠프 복귀병사들이 겪는 인권침해(피해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
캠프 입소병사	없음 (40.5%)	정서적 학대 (37.8%)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16.2%)
일반 병사	없음 (58.1%)	정서적 학대 (23.5%)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10.2%)
일반 간부	없음 (43.2%)	정서적 학대 (27.3%)	기타 (13.6%)

- 그린/블루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병사와 간부 모두 ‘복귀병사와 일반 병사는 차이가 없다’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복귀병사의 경우 면담에서 타 병사의 선입견이 심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나 아무런 인권침해를 겪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어 부대마다 분위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린/블루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

	1순위	2순위
일반 병사	복귀병사와 일반병사는 차이가 없다 (42.9%)	복귀병사는 자기조절을 못하고 의지력이 약해 군 적응이 힘들 것이다 (22%)
일반 간부	복귀병사와 일반병사는 차이가 없다 (48.9%)	복귀병사는 자기조절을 못하고 의지력이 약해 군 적응이 힘들 것이다 (24.4%)

- 그린/블루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 캠프 입소병사는 별로 좋지 않다고 인식하였음(평균 2, 4점 척도). 반면에 일반병사는 약간 좋은 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평균 2.64, 4점 척도).

(2) 인권침해 구제(대책)

- 군 내에서 인권침해 경험 시 어떤 구제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캠프 입소병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군 내 인권침해 경험 시 효과적인 구제방법

구제방법	효과적이다
1. 군 내 사법제도	51.4% (19명)
2.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40.5% (15명)
3. 지휘관과의 대화	48.6% (18명)
4.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27% (10명)
5. 지휘관 및 상급자에게 보고	45.9% (17명)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70.3% (26명)
7.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54.1% (20명)
8. 외부 NGO 단체에 진정	45.9% (17명)
9. 국방 신문고 이용	27% (10명)
10. 국방 헬프콜	51.4% (19명)
1. 부모님, 친지, 친구에게 알림	48.6% (18명)

그린캠프 입소병사 총 37명 응답 단위: 퍼센트(명)
* 1,6,7,8,9,10,11번: 무응답 제외 값

- 자신이 지휘하는 병사에게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간부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해당 지휘계통으로 보고해 해결’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 그린/블루캠프 복귀병사가 받고 있는 차별, 편견,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인식개선 캠페인’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반면에 일반병사와 일반간부의 경우 ‘동료병사 및 간부와 대화’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나) 입소사유별 유형화

-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2주로 구성되어 있음.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미술치료, 대인관계치료, 웃음치료, 스피치 교육 등 부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개인의 부적응을 다루는 심리치료에서는 표면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보이더라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치료계획을 달리하고 있지만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입소자의 개별 입소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군 부적응’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입소병사의 만족도를 파악했을 때, 약 16% (N=12)의 병사가 입소 사유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은 병사가 치유 후 자대로 복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대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반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개선방안

-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현존하는 형태로 복무 부적응병사를 위한 캠프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음.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유용할 수 있음.

가. 입소전 인권침해경험 및 개선방안

- 인격모독이나 자존감에 손상을 주는 비인권적인 대우가 여전히 만연하다고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권교육과 지휘관들의 모범적인 역할 및 병사의 상호존중적인 행동에 대한 강화와 비인권적인 행동에 대한 적절한 처벌 등이 필요할 것임.
- 직접적인 상해의 증거나 질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병사의 신체적 고통에 대해 지휘관이 무관심 혹은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병사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병사의 건강상 호소에 보다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또한 재미삼아 하는 사소한 말장난이나 업무질책이 한 개인에게는 군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행동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병사의 인권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적 측면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이 구축되고 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병사의 인권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규모 집단모임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입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 입소전 캠프에 대한 사전정보나 충분한 이해없이 지휘관의 권고를 통해 입소하게 된 병사는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갖고 캠프에 입소할 수 있음. 따라서 병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시 그린캠프나 블루캠프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지휘관들에게는 캠프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홍보책자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입소절차의 간소화와 수시 입소의 활성화를 통해 즉각적인 휴식이나 부대로 부서의 분리가 필요한 병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도움이 절실한 병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프의 운영목적과 필요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지휘관과 동료병사가 잦은 실수나 위축을 보이는 병사를 배려, 격려, 지지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기능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서도 적응기능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부적응병사를 위한 캠프에 입소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임.

다. 캠프 입소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 전우조로 짝을 지어 입소병사를 관리하는 것이 사생활침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임.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는 바람직해 보이나 자해가 우려되는 위기병사나 정신증적 상태가 동반되는 병사는 관리보호가 확실히 보장되는 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
- 입소병사는 프로그램 참여가 강제적인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집단프로그램

참여보다는 개별상담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이에 개별상담을 강화하고 입소병사가 거부감을 나타내는 ‘음악치료’, ‘웃음치료’, ‘만들기’ 등의 집단프로그램은 신체활동이나 야외활동 위주로 대체하여 병사가 자연스럽게 서로 친밀감을 쌓아가고 신체적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여 긴장을 완화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캠프 입소병사에게 단일증상에 대한 구조화된 치료로 이루어진 맞춤형 치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에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은 집단으로 진행하되 개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 상담 위주로 치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를 위해 치료적 역량이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상근 병영생활전문가를 확충하는 방안과 외부전문가들을 캠프 기간에만 단기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음.

- 휴식권과 관련하여 입소병사는 짜인 다양한 프로그램에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느라 개인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였음. 이에 개인상담, 대인관계기술향상, 자존감향상 등 병사 개개인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외의 시간은 체육활동 등을 통해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유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물리적 환경의 개선 또한 그린캠프나 블루캠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는 요인일 수 있으므로 쾌적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함.
- 캠프 입소병사는 스스로 군복무 부적응자라는 위축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명찰이나 의복 등에 차이를 두어 일반병사와 구분되게 하는 캠프가 있었음. 이는 입소병사 스스로 낙인을 갖게 하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라. 자대복귀 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 낙인효과는 입소병사가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설문에 응답한 입소병사의 50%가 복귀 후의 ‘무시나 왕따’ 등의 정서적 학대를 가장 우려하는 인권침해로 예상하고 있었음. 또한 상당수의 일반병사도 캠프 입소병사가 위협할 수 있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음. 군복무 기피자라는 인식도 상당하였는데 이러한 편견적 태도는 입소병사가 복귀하였을 때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정신적인 문제는 스트레스에 노출 시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며, 특히 군에서의 부적응은 낯설고 통제적인 환경에서 겪게 되는 급성스트레스장애일 수 있고 주변의 배려를 통해 좋아질 수 있다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해 보임.
- 입소병사 또한 그린캠프나 블루캠프에 대해 입소 전에는 정신이상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고 하는 바 군에서는 캠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소병사는 캠프에 입소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기대임. 따라서 개방적이며 솔직한 태도가 권장되는 것이 낙인효과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음.

마. 군 전반적인 인권 관련 개선방안

- 인권교육 후 인권의식이 향상되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인권교육이 체계화되

어 있기 보다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군조직의 특수성과 병사의 욕구수준에 맞는 매뉴얼화 된 인권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군 간부나 지휘관들이 병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병사는 조직에서 기대되는 행동들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에 병사의 인권 교육에 우선하여 간부나 지휘관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병사가 겪는 인권침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병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모범적 행동들을 수행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임. 또한 병사는 효과적인 구제기관으로 외부 기관을 선호하며 군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군도 옴부즈맨 형태의 민간 감시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병사와 지휘관들이 인권 보호를 위한 선진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음.
- 일반병사는 ‘낮은 급여’를 가장 큰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었고 뒤이어 휴식권미보장, 사생활침해, 복지시설 부족’ 등을 인권침해로 인식하였음. 이에 입대에 따른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복무 동기가 높아질 수 있고 군 적응에 대한 의지도 높일 수 있을 것임. 간부는 ‘비자발적인 입대’를 병사 부적응 요인의 일순위로 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며, 징병제 단계에서라도 병사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적 합의와 이에 따른 실행이 필요해 보임.

5. 결론 및 제언

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첫 번째, 입소과정에서의 자발성을 높이고 불안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그린캠프에 대한 자료를 각 부대에 제공하고 지휘관에게 그린(블루)캠프의 목적과 프로그램, 입소기간과 입소 후의 조치, 캠프를 유지하는 인권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 두 번째, 도우미 병사는 관련 분야의 대학전공자를 선별하여 캠프의 분대장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서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도우미 병사의 소진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해야 하겠음.
- 세 번째, 일률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외부활동이나 운동 등을 장려하는 것이 좋겠으며, 개인상담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개인상담은 전문적인 과정으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하나의 캠프 당 최소한 1.5인 이상의 상담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네 번째, 인권에 대한 교육,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
 - 인권감수성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험수준과 경계수준, 보통수준과 우수수준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 병사 뿐 아니라 부대원 모두에게 적용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잘 유지되지 않는 부대원에게는 외부 전문가가 방문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권함.

- 다섯 번째, 인권교육 내용을 매뉴얼화하고 일률적인 강의 보다는 참여형 교육, 대화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이 일상 군 생활과 밀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인권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과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됨.
- 여섯 번째,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정정해달라는 구제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임.
 - 국방 옴부즈맨 제도 실시를 고려해볼 만함.

나.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군의 현재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군이 부적응 병사의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제고하고 좀 더 현실성 있는 인권 향상반응을 이끌어낼 것임.
- 둘째, 그동안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인권교육의 실시형태와 이에 대한 자세, 그리고 진정으로 군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게 되어 부족한 인권교육 내용이나 실시 방법, 교육의 실시자의 자격과 교육의 독립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임.
- 셋째, 현재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그린(블루)캠프의 프로그램을 검토한 자료를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의 형태와 프로그램의 실시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넷째, 캠프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친 후 자대복귀한 병사에 대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 등 다양한 낙인효과를 상쇄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서론



1. 서론

가. 연구 배경

한국의 군 조직은 일반적으로 매우 폐쇄되고 경직된 조직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특성상 징병제 운영으로 인해 젊은 청년들은 자발적이기 보다는 강제성이 동반되는 수동적 자세로 군에 입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내 인권문제는 군내 구타 및 각종 악성 사고, 자살 사고 등과 맞물려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인권(Human rights)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로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권리이다. 이에 인권은 국가 이전에 천부적으로 의미 있는 전국가적인 권리이며 따라서 국가입법을 통해서 규정될 필요도, 국가권력을 통해서 그 효력이 담보될 필요도 없는 초실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권리이다(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한국법학원).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인권을 향유하고 주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병사는 일반국민으로서의 지위와 군사행정기관 구성원이라는 특별권력관계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민의 지위로서 기본권을 가지는 동시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인과는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즉, 병사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특별권력관계로 인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과 법률적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2012).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였으나, 그 결과는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므로 군과 관련한 인권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이를 다루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군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군내에서는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군인의 인권문제의 해결은 군내 자살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국방부에서는 자살문제 및 악성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병영 내 부적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전캠프, 힐링캠프, 그린/블루캠프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캠프를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군의 사고예방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과 실행, 인식 등의 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먼저, 군내 뿐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부족하고,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군내 인식이 편협하며, 사회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군내 인권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인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또한 군 특성상 지휘관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며, 병사의 복무부적응이나 자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윤민재, 2008).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가 시행된 이후 많은 병사가 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

러 문제들로 인해 복무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한국군의 자살사망자 수는 1969년 54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으며, 박정희 정권까지 연간 300~400명이 군복무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후 군 내 자살자 수는 1987년 이후 연간 200명 이하로 감소되었고 1995년 이후 100명 내외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 대 들어 100명 이하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자살사망자 수의 감소는 군대 내 비인권적인 소요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압력 그리고 이에 반응하여 권위적, 폐쇄적, 폭력적, 수직적인 군 문화를 변화시켜 군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군의 노력 등이 이루어낸 성과로 볼 수 있다.

군복무 부적응자 및 자살우려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캠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육군의 경우, 2003년 11월에 복무 적응 및 심리치료를 위한 비전캠프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사고 우려자를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12월에 상시로 운영되는 힐링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복무 부적응자 및 자살우려자를 관리, 치료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부대가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단급 그린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육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 시행되면서 그린캠프라는 공식명칭이 부여되었으며, 2011년 7월부터 그린캠프를 군단급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린캠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2017).

해군의 경우, 2011년 10월부터 해군 교육사 및 해병대사에서 군 부적응 병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병역심사관리대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 4월부터 병역심사관리대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고 군 부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블루캠프(부적응자 프로그램)를 설립하였다. 이후 2014년 9월에는 교육사 4개소와 작전사 및 함대까지 블루캠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4년 9월부터 12월 간 시범 운영 이후 2015년부터는 이를 정상 시행하였다. 2015년 2월에 해군 블루캠프 운영부대를 작전사에서 교육사로 조정하여,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해군의 블루캠프는 교육사에서 운영하고 있다(해군 본부, 2017).

현재 그린/블루캠프는 육군 군단급 부대 20개소와 해군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캠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운영 방안과 시설기준, 프로그램의 전문성, 운영 인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그린캠프의 운영과 관련된 기준이 육군본부에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하부대에서는 부적응 병사의 신속한 치유, 격리 보호와 지휘관의 부담 경감 등의 사유에 따라 병사를 그린캠프로 입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입소 과정은 간부와 일반 병사로 하여금 그린캠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며, 이는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병사에 대한 낙인효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낙인효과는 입소병사의 복무의지를 저하시키고, 자대복귀에 있어 인권침해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12)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취약한 복

무부적응 병사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그린/블루캠프에 입소한 병사의 인권상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인권침해에 대한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그린캠프 운영에 있어 입소자들이 세심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지적이 있다. 둘째, 자대배치 후 군복무 부적응으로 식별되어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소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나타났으며, 이렇게 강제 입소하게 되는 입소자의 경우에는 분노감정이 폭발하고 교육에 대한 목표와 동기를 지니지 못해 교육 효과도 미비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셋째, 그린캠프에 입소하게 되면 개인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은 물론이고 부대 내 조직 구성원이 암암리에 알게 되어 자대복귀 후에 복무적응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인권침해(간부에 의한 감시감독으로 개인 사생활침해, 괴병 등 군 생활을 고의로 기피하는 자로 낙인, 상급자의 구타·가혹행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부당한 대우 등)가 파악되고 있다. 넷째, 군복무 부적응 문제로 전역하는 경우 사회적 장면에 복귀하여 적응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 사회복귀를 위해 전역 전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2012).

본 연구에서는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인권문제 발생실태와 요인 그리고 외국군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육·해·공군 실무부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금까지 군내의 캠프 운영 등 복무부적응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응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의 특성과 현실에 적합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나. 연구 목적

군복무 부적응은 해당 병사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군 복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군 전체로 보았을 때도 전투력 손실 및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저하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 조사한 군복무 부적응 실태조사 이후 군에서는 군 복무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적응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복무 적응을 유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진정사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사건과 같은 군복무 부적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군이 시행하고 있는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해 현 실태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인권침해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육·해·공군을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2)현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군복무 부적응자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6)에서 복무 부적응 병사¹⁾를 (1)군 입대자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2)군대 조직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요인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3)개인의 안녕 및 군대와 일반 사회의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현재 나타내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복무 부적응 병사는 앞서 설명한 정의에 부합함과 동시에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사를 지칭한다.

다. 연구 방법

[표 1] 연구 흐름도



1) '복무 부적응 병사'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본 연구 목적상 사용되는 용어이다.

1) 방문 조사

본 연구팀은 2017년 7월부터 2017년 9월 약 2달에 걸쳐 총 10곳의 육·해·공군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 진행하였다. 방문조사 해당 부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육군 그린캠프 부대는 1군사령부, 2작전사령부, 3군사령부에 소속된 그린캠프 중 현재 캠프가 운영 중인 곳을 선정하였고, 육군 일반부대는 그린캠프에 입소한 후 퇴소하여 생활하는 복귀병사가 있으며 그린캠프 부대와 인근 한 부대를 방문하였다. 해군의 경우 블루캠프 그리고 복귀병사 인원을 고려한 인근부대를 방문하였다.

선정된 부대에 방문 조사를 실시하기 전 pilot study를 위해 2017년 7월 14일 수도방위사령부의 그린캠프에 방문하여 미리 구성된 설문지 및 면담지를 실시하였다. 파일럿 연구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설문지 및 면담지를 수정하여 이를 이후 방문하는 그린(블루)캠프와 일반부대에서 조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에게 협조 요청 후 부대 책임자와 연구진이 방문일정을 조정하였다. 방문 조사 일정은 부대장 및 부대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취지와 진행 일정에 대한 공유, 자료 협조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설문 및 인터뷰 인원 선정방식은 연구진이 해당 부대 책임자에게 최소 필요 인원을 요청한 후 해당 부대에서 임의로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연구팀은 부대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개조로 나누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심층면접은 피면접자와 면접자, 면접보조원으로 구성하여 관계자의 배석 없이 진행하였다.

가) 설문 조사

설문조사는 육·해·공 각 부대를 방문하여 총 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총 3개의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캠프 또는 병역심사관리대 입소병사 37명, 도우미 병사 36명, 간부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부대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일반병사 각 251명, 112명, 110명과 간부 17명, 11명,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후 다시 일반부대로 복귀한 병사 3명에 대해서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인권 교육의 경험 및 실태,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복무 부적응 병사 및 그린캠프(블루캠프) 입소병사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30분 이내이며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한 후 실시하였다.

나) 심층 면접

심층 면접은 방문 조사 해당 부대의 휴게실, 면담실 등 조용한 공간으로 인터뷰에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 졌으며, 설문 조사를 실시한 인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희망자가 없는 경우 무작위 추출로 면접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를 위한 인터뷰 녹취에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군 적응 프로그램 부대에서는 심층면접 목적상 인원별로 구분(입소자, 도우미병사, 간부)하여 각각 2~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접의 내용으로는 인권 교육 경험(효과, 만족도, 개선점 등),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그린캠프(블루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그린캠프(블루캠프) 운영에 대한 개선점, 입소 상의 인권침해 사항, 병사에 대한 처우, 병사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2) 문헌조사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획득하기 위해 군 관련 기관의 문서, 규정, 실태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관련 저널 및 참고문헌을 수집하였다. 또한, 외국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사례를 획득하기 위해 해외 저널 및 참고문헌을 수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라.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육·해·공군 부대를 방문하여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셋째,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인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범위에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연구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에서는 국내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의 현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국내외 문헌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에서는 군 인권침해 구제 제도와 군 복무적응 제도로 구분하여 각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침해 구제 그리고 군 복무적응 제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외국군 사례와 국내사례를 비교하여 외국군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현재 병사가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적 측면과 군 특성상 취약한 부분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과 군에 복무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면접을 실시한 자료를 통해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 인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된 방안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입소 전, 후 그리고 전역 후 까지 단계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2.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국내사례

국내사례에서는 현재 병사가 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주로 사용하게 되는 방법들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앞서 병사 스스로 군에서 겪은 부정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방헬프콜과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제도가 있으며, 군 내에서 병영생활 상담관과의 상담, 지휘관 또는 간부와의 비공식적인 접촉, 부대 인권 상담관과의 상담 등과 같이 다양한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현재 시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군 병사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국방헬프콜,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병영생활상담관과의 상담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후 현재 군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육군의 그린캠프와 해군의 블루캠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1) 국방헬프콜

국방헬프콜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병사자살예방 및 고충상담, 성범죄 신고/상담, 군 범죄신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12월 ‘국방헬프콜센터’가 개소되어 당시 1만 7258건에서 2016년까지 5만 7990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80명의 병사 중 89.2%가 “국방헬프콜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병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권침해 구제제도임을 알 수 있다. 국방헬프콜은 현역병사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님, 입대예정자, 일반 민간인 등 누구나 전화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소속부대 지휘관과 헌병대, 경찰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하고 심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국방헬프콜에서는 전문상담관이 수신하여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건들과 병사의 복무부적응, 인권침해,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365일 24시간으로 운영되어 신고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확인하여 조치하고 이후 진행사항을 통보해주는 등 쌍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소원수리제도는 병사의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들을 해소하기 위해 군 내에서 편지 및 건의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 3절 25조 고충처리(국방부, 2012)에 따르면 군인사법상의 고충처리제도의 이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각급 부대에서는 소원수리의 형식으로 고충처리를 접수하였다. 하지만 이 규율이 폐지되고 군인복무기본법(2017)에 따라 병사가 직접 고충처리가 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 각 부대

의 소원수리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병사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형사처벌 등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지휘부나 감찰부에 소원수리(마음의 편지)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병사의 고충을 지휘관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3) 병영생활상담관과의 상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는 복무 병사의 심리적 부적응 지원과 사고예방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복무부적응 병사의 식별 및 관리, 보호병사 및 관심병사의 현장위주 상담 및 관리, 병사 기본권 제한사항 식별 및 시정 지휘조언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고우려자 및 보호관심병사 등에 대한 현장위주의 상담 관리가 이뤄지며, 병사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갈등을 관리하고 지휘 및 조언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군생활, 개인신상,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이나 장기복무군인가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관은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적응이 예측되는 병사의 인성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분석 및 평가 후 상담을 실시한다. 그 결과를 신병인 경우 신병교육기관의 지휘관 및 병사 배치 부대의 상담관에게 보고하고, 자대배치 이후 병사의 경우 신상파악 결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제공한다. 모든 상담관은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지며 상담 중 자해, 자살의도, 탈영, 상습구타, 성추행 등 복무 부적응에 의한 사고 및 기본권 침해 사례를 인지했을 때에는 대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방부, 2015).

4)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육군의 그린캠프, 해군의 블루캠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린캠프와 블루캠프의 운영, 목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군은 복무인원과 부대의 위치 등의 특성이 육군이나 해군과 달라 캠프운영의 필요성이 적어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가) 그린캠프

육군에 입영한 장정들은 사고예방 차원에서 신병교육단계와 자대복무단계의 검사를 통과한 후 해당 부대로 배치되어 본격적인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식별과정 중에서 관심병사로 판단되는 병사가 그린캠프 교육대에 입소하게 된다. 입소한 병사는 끊임없는 자살과 자해에 대한 충동, 건강문제,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한다(김재술, 2016).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육군에서는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병사가 겪을 수 있는 고립감, 사기저하, 절망감, 무기력감 등 다양한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를 해소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린캠프는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 식별한 복무부적응자, 자살우려자를 관리 및 치료하여 자살 예방은 물론 사단급 이하 부대가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단급(2작전사령부 예하는 사단급 부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교육대라고 할 수 있다. 육군본부 정책연구보고서(그린캠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2017)에 의하면 그린캠프 운영 개념 정립에 있어서 군단급 그린캠프는 ‘심리적 안정을 통해 군복무 가능인원 치유’와 ‘전문강사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자대복귀’로 명시하고 있다. 사단급 그린캠프는 ‘사고 예방 차원의 관리/수용가능’,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및 전역심사 전 대기’로 명시하고 있다. 그린캠프 교육대는 도움, 배려 군에 속한 병사를 대상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고 왜곡된 신념체계의 변화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며 더불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복무적응을 유도하여 크게는 자살사고 예방과 건강하게 자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김재술, 2016).

(1) 입 · 퇴소 절차

그린캠프 입소 기준은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2016. 4. 1. 부분개정)」 제 17조 5항(입소대상자 및 입·퇴소절차)을 기준으로 한다. 입소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뜻한다. (1)복무 부적응자로서 부대에서 다른 병사와의 갈등이 있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병사, (2)자살우려자로서 입대 전/후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신인성검사 결과에서 정서불안이 나타나고 자살징후가 식별된 병사, (3) 그밖에 전투력을 저해하거나 지휘부담,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병사가 입소 기준에 따라 그린캠프 교육대에 입소할 수 있다. 입소기준과 절차는 자대의 특성이나 그린캠프별 목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휘부담 및 고위험군 위주로 입소시키는 경우, 병역심사관리대 입소를 위해 기다리는 경우, 그린캠프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 예하 부대 심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 군단 입소 심의 없이 수시 입소 조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린캠프의 입소 절차는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 사단으로 보고된 이후 사단에서 군단으로 보고한 뒤 군단에서 그린캠프 교육대에 입소자를 통보하는 절차를 따른다. 먼저,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 해당 부대 지휘관이 해당 병사의 신인성검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와 병사 면담 및 관찰을 통해 대상자를 건의하게 된다. 입소자 본인은 그린캠프 입소 희망서를 작성하고 이에 동의를 하면 연대 입소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사단 인사처에 보고한다. 보고 받은 사단에서는 입소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는 참모장(위원장), 인사참모, 군중참모, 의무대장, 주임원사, 병영생활상담관 등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된다. 해당 부대 지휘관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입소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해당 병사의 입소사유를 구분하여 군단 인사처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군단에서는 사단 입소자 심의 자료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분석하고 확정된 뒤 그린캠프에 통보한다. [표 2]는 그린캠프 연도별 입소인원을 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매년 입소병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입소 총계에는 재입소, 잔류 인원이 매월 중복해서 계산됨으로

써 입소병사 한 명이 여러 번 중복 산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감안하면 매년 입소인원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그린캠프 퇴소 심의는 현역복무부적합 인원에 대한 처리를 위해 육군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2016.4.1.,부분개정)」 17조 5 ②에 따르면 퇴소심의 첫 번째 단계로, 군단 참모장을 위원장, 상담관, 교육대장, 교관요원 등으로 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번째로 그린캠프 교육 관찰 결과, 진료소견서 등을 토대로 적응 여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대복귀, 차후 재입소, 병역심사관리대 입소로 판단한다.

연도별 퇴소현황을 [표 2]에서 살펴보면, 현재까지 자대복귀율은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고, 재입소 및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및 전역심사)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 최근 3년간 그린캠프 입소 및 퇴소 현황 ('14년 ~ '16년)

구분	총 입소인원	치유 후 자대복귀	재입소후 자대복귀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14년	3,132명	1,511명	795명	826명
'15년	3,310명	1,489명	909명	912명
'16년	3,493명	1,385명	889명	1,219명
계	9,935명	4,385명	2,593명	2,957명

(출처: 국방부)

(2) 운영

그린캠프 주요프로그램 운영 및 편성은 정규 프로그램 2주, 총 8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 1회 퇴소 심의절차를 통해 입소병사의 향후 거취를 결정하며, 2014년부터 정규 입소시기 외에 위기관리를 위한 상시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추가 업무가 부여되었다. 2주간의 표준프로그램을 일부 그린캠프 교육대에서는 3, 4주 운영하는 등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운영방식을 선택해서 운영하게 되었다. 육군본부 정책연구보고서(그린캠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2017)에서 조사한 20개의 그린캠프 중 16개(80%)가 육군규정에서 제시한 2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3주간 운영하는 캠프 2곳, 4주간 운영하는 캠프 2곳으로 나타났다. 그린캠프 교육이 끝나면 병역심사관리대로 연계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대로 복귀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주간의 그린캠프 표준 프로그램 내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분야별로 살펴보면 진단(41시간), 인성교육(16시간), 치료(21시간), 기타(15시간)로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필요에 따라 반복된 교육이 이루어진다(한재원, 2016). 그린캠프 프로그램은 개

인별 심리진단 및 평가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및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 강사에 의해 구조화와 비구조화된 집단 상담,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구성되어 있다. 그린 캠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교육, 체험활동, 체력훈련, 대인관계(사회성 기술훈련),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 그린캠프 표준 프로그램 (개인별 심리평가, 집단상담, 심리치유 등)

구 분	월	화	수	목	금
1주차	입소/등록 심리평가 자기소개	미술·웃음 치료	체육활동	음악치료	스트레스 해소법
			개별상담		
2주차	미술·웃음 치료	분노조절	봉사활동	집단상담 음악치료	개인정비 퇴소
		상담치료			

※부대별 강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대별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 운용

(출처: 국방부)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2016.4.1.,부분개정)」에 따르면 그린캠프 운영 인원은 교육대장(원사) 1명, 행정담당관(중·상사) 1명, 분대장 3명, 행정병 1명이며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육군본부 정책연구보고서(그린캠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2017)에서 20개의 그린캠프에 대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운영 인원의 규모는 캠프별로 최소 5명에서 최대 21명까지로, 육군규정에서 제시한 8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캠프는 5개소였고, 이 경우 1:1 멘토 병사를 운영하였다.

그린캠프 교육대 운영 인원은 인성지도 능력을 보유한 우수한 자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대장과 행정지원부사관은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였거나 인성지도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분대장은 심리학 또는 상담학과 재학 등 기본 상담능력을 보유한 우수자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인원 선발은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리학과, 상담학과, 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자를 선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우 공감능력, 성실성, 책임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또한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2016.4.1.,부분개정)」에서 그린캠프 운영 인원 선발 규정에서 제시하는 운영인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교육대장은 그린캠프 교육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행정담당관은 그린캠프 교육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고 병력 관리 및 교육대장 보좌를 담당한다. 또한 분대장은 교육지원 및 입소자를 인솔하고 통제하며, 행정병은 교육대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2017년 7월 1일부터 그린캠프 전담 상담관을 선발하고 있으며, 입소병사를 대상으로 더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자대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블루캠프

해군의 경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복무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의 선도·치유를 위해 블루캠프를 운영한다. 블루캠프에서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복무부적응의 원인, 심리적 상태 등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 복무적응을 유도한다. 블루캠프 기간 동안 군복무 적응 가능성과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후속 조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국방부, 2017).

(1) 입·퇴소 절차

블루캠프 입소 기준은 해군 블루캠프 운영지침(국방부, 2017)을 기준으로 한다. 입소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1)전대급 부대장 건의를 통해 장성급 부대장이 승인한 자, (2)장성급 부대 ‘신상관리위원회’에서 입소대상자로 의결된 자.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요구되거나 현역복무부적합자, 사고자 중 처벌(징계) 등 미조치자는 입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속부대에서는 블루캠프 입소 1주일 전까지 해당 병사의 입소의뢰 및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한다. 구비서류에는 병사의 신상기록부(관찰기록부), 본인 입소동의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기록, 병원 진료기록, 지휘관 의견서(추천서) 및 기타 신상관련 참고자료가 포함된다. 블루캠프 운영부대에서는 블루캠프 입소 지시(통보) 및 대상자 인사명령을 시달하고 소속부대원은 자체 인사명령을 시달하며 타 소속부대원은 해군본부(부서관/병/군무원과)에 인사명령을 의뢰한다. 마지막으로 입소자 소속부대 간부가 인솔하여 블루캠프에 직접 인계하는 과정으로 입소가 이루어진다.

현재 블루캠프 퇴소자는 복무적응도 심의결과에 따라 후속 관리된다. 부대 재배치 대상자는 신소속 부대 간부가 직접 인솔하여 인계된다. 반면, 병역처분 변경 조사 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조사 후 장성급 부대장 책임 하에 추가적인 교육 및 관찰 또는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병역처분 변경 심사절차에 의거하여 조치된다.

최근 3년 간 블루캠프의 입소 및 퇴소인원의 총계는 제시된 [표 4]와 같다.

[표 4] 최근 3년간 블루캠프 입소 및 퇴소 현황 ('14년 ~ '17년 9월)

구분	총 입소인원	자대복귀	재입소	전역
'15년	80명	59명	2명	19명
'16년	103명	74명	6명	23명
'17년 (~9월)	89명	69명	2명	18명
계	272명	202명	10명	60명

(출처: 국방부)

(2) 운영

블루캠프는 해군교육사, 1/2/3 함대에 설치하여 지역 개념으로 운영된다. 운영 주기는 월 1회이며, 운영 기간은 2주로 규정되어 있다. 운영 주기는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되며, 운영기간은 추가적인 교육관찰이 필요할 때 1주 추가된다. 표준 프로그램은 [표 5]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5] 블루캠프 표준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1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 등록, 사전교육, 입소 통보(입소자 가족) 집단/개별 상담 및 심리치료, 군기/군법교육, 분노조절 교육 영화감상(휴먼드라마), 심리극/미술/웃음/음악 치료(외부강사)
2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상담 및 심리치료, 심리극/미술/웃음/음악 치료(외부강사) 근무체험, 사회봉사활동, 군종장교 면담, 영화감상(휴먼드라마) 인사관계관 면담, 복무적응도 심의(재배치 또는 부적합조치 결정)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과 군의관·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근무체험, 가족상담, 인사관계관 면담

(출처: 국방부)

해군 블루캠프 운영지침에 따르면 블루캠프 운영인원은 교육대장(진행관), 관리대장, 정신과 군의관, 지도관, 헌병수사관, 군종/법무장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구성된다. 교육대장(진행관)은 블루캠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 및 보완한다. 또한 입소자와 운영요원을 관리하며 입소자 구비서류를 검토하며 퇴소자에 대한 제반 상담·관찰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리대장은 블루캠프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의 군수/시설 분야 지원 및 지정된 운영요원에 대해 지원한다. 정신과 군의관은 병사의 입소부터 퇴소까지 입소자에 대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유지한다. 또한 관찰결과 소(의)견서를 작성하여 교육대장에게 제출한다. 지도관은 관리병과 입소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헌병수사관은 입소자 교육지원과 및 군기 문란자에 대한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군종/법무장교는 입소자의 교육지원 등을 담당하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입소부터 퇴소까지 입소병사에 대한 집중상담 및 심리치유 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관리병이 입소자들을 통제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소자의 생활반 내무생활 및 개인 이동 시 밀착 관리 등을 담당한다(국방부, 2017).

나. 해외 사례

본 장에서는 병사가 군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 군 적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나라 별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후 외국군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 장에 제시하였다.

1) 독일

독일은 군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원수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병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표병사, 지휘계통, 국방옴부즈맨에게 소원수리를 함으로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가) 대표병사

독일에서는 ‘대표병사 제도’를 운영하여 이들을 통해 간부와 병사의 소원수리사항을 접수하도록 한다. 부사관과 병사는 각 중대별로, 장교는 각 대대별로 신분별 대표병사가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병사는 소원수리의사를 중대 대표병사에게 표현하고, 대표병사는 중간계통을 거치지 않고 중대장 또는 대대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나) 지휘계통

독일의 모든 병사는 부당한 대우에 관해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병사는 신병 교육훈련 시 군법교육을 통해 군사적 임무를 위한 정당한 복종 의무 기준에 대하여 숙지하게 되며, 부당한 명령에 대해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병사는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1차 상급자에게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한 달 이내에 취해지지 않으면,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으로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소원수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군사법원에 소원수리를 제출할 수 있다. 군사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타당성을 평가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다) 국방 옴부즈맨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옴부즈맨이 국민의 대리인 입장에서 이를 신속히 조사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국민의 침해 받은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설치되었다. 독일에서는 1959년 독일군이 재건된 직후 설립되었으며, 독일의 옴부즈맨은 의회 소속으로 권력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옴부즈맨이라고 할 수 있

다. 독일은 35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군 감찰관 후보가 될 수 있으며, '꼭 법조인이어야 한다'는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독립성에 걸맞은 권한도 갖추고 있다. 군 감찰관은 국방부에 소속된 모든 기관과 직원에게 정보와 문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방의회나 국방위원회 지시 또는 군 장병의 기본권 침해, 군내 지휘통솔의 원칙 위반에 대한 건의가 접수 되었을 때 군사옴부즈맨 결정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방부는 정보 공개 또는 방문 조사를 거부할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진술해야만 한다. 또한, 독일 군 감찰관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형사, 행정, 군사 재판에 참석하고 기록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매년의 활동 내용을 연례보고서로 만들어 국방부, 의회 그리고 외부에 공개하며, 이는 군인에게도 배포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15; 석정수, 2014; 전해원, 2014). 독일에서는 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병사가 직접 옴부즈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름, 사진, 이메일 및 전화번호 등이 모든 생활관과 사무실 복도에 게시되어 있다. 또한 신병교육훈련 시 중대장은 신병들에게 국방 옴부즈맨 제도의 활용법 및 연락처에 대해 반드시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경우 병사가 전투로 인해 경험하는 각종 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와 복무 중 경험할 수 있는 부적응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복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Mental Health Center를 운영 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이 기관에는 약 100여명의 관련 군의장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육·해·공군 전 장병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단, 연대, 대대별로 센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독립 건물로 인근 부대 장병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신건강센터의 임무는 장병들에 대한 모든 정신적 질환에 대해 전담하여 증세 조기발견에 역점을 두고 증세 치료 후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만, 치유를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군복무부적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퇴역 조치한다. 군복무부적합자 조치는 군의 장교들에 의해 발견된 정신질환 장병이나 개인 및 지휘관의 신청에 의해 접수된 질환에 대하여 전문상담부서에서 상담을 통해 증세를 진단하고 질환의 유형을 판단한 후 해당하는 치료를 실시한다. 이때 퇴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3) 대만

대만은 군 인원을 세분화하여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병사의 부적응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병사 상담지원, 심리 건강교육, 심리평가, 자살방지를 목적으로 총 7개의 「지구심리위생센터」를 설립하고, 국군 심리상담 「3단계 치료체계」 및 지역협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국방대학교, 2008).

가) 대상별 심리위생교육 체계

심리위생관련 교육은 병사, 간부, 심리보도관의 대상별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를 대상으로 「병사심리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신입병사의 입영 및 상비부대로 발령할 때 측량표를 운영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심리위생교육, 전문 강좌 및 순회선교, 심리건강비디오 시청, 단체보도 등의 방식으로 다층적 교육을 실시, 병사의 올바른 심리건강관념을 세우고, 병사의 부대생활 적응을 돕는다.

둘째, 간부를 대상으로 「간부 보도지능훈련」을 실시한다. 장교, 부사관 양성교육 기간에 군사학교는 심리보도과정을 배정하여 간부 보도지능훈련을 실시한다.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를 시작한 후, 계층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분대 급에서부터 사단 급까지 계대수준별 간부 심리지능연수를 시행하여 각급 간부의 지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기처리와 초급예방능력을 강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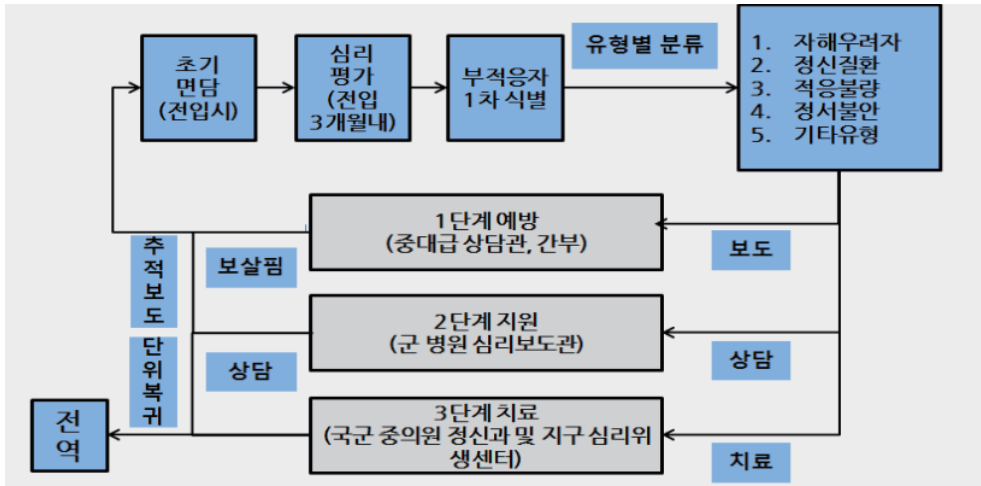
셋째, 심리보도관을 대상으로는 「심리보도인원 전문지능훈련」을 실시한다. 각급 심리보도인원의 전문보도지능의 지속적인 향상과 심신이 불편한 병사의 심신문제의 효과적인 협조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신적응», 「혼인감정», 「스트레스 조절」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교육연구인 「예비심리보도간부 연구», 「심리보도인원 재직훈련», 「심리보도 연구성과 발표회」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각급 심리보도인원의 보도전문지능을 향상시킨다.

나) 심리보도업무 체계

심리보도업무체계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예방, 지원, 치료의 3단계로 진행된다. 평시에는 병사의 정신 건강 및 생활 적응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시에는 전장공포 및 스트레스 해소, 부대전체의 전투력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심리위생센터는 체계적 진단, 상담 및 진료를 통해 병사의 심리건강을 보호하고 군의 전투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군 심리보도업무체계는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운영개념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예방’으로 중대 및 대대급 상담관이 제 일선에 배치되어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정서 불안, 부대적응, 기타 고충해결 등을 담당한다. 이 때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자를 조기 식별하여 신속하게 2차 기관(지역 군 병원)에 의뢰한다. 2단계는 ‘지원’으로 정신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심리보도관이 지역 군 병원에 위치하여 각 부대로부터 식별되어 의뢰된 병사에 대하여 부적응 유형별 평가 및 상담, 교육을 시행한다. 심리보도관들은 정기적으로 예하부대를 방문하고 심리 위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1단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단계는 ‘치료’로써 각급 부대와 지역 군 병원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병사는 해당 지구심리위생센터로 보내진다. 이들은 특별 케이스로 관리되며 심리위생센터의 의학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체제를 통하여

치료 받게 된다. 또한 수시 상담을 통하여 적합한 약물치료와 정신재구조(심리재건), 교정을 함께 진행한다.



[그림 1] 국군 심리보도업무체계

출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8)

4) 미국

미국은 병사의 스트레스 대처 수준을 연속선상에서 구분하여 모든 병사의 적응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을 제공하는 Combat and Operational Stress Continuum Model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소속 전문가, 외부 전문가, 병사, 간부로 이루어진 정신건강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살예방에 관하여 육·해·공군이 군 특성에 부합하는 개별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표준화된 지침서를 제공하여 자살 위험을 유발하는 개인 및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상담으로 연계함으로써 복무 부적응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전직 해병대원이 병사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임무수행 스트레스를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공군의 경우, 지휘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위험에 처한 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가) Combat and Operational Stress Continuum(COSC) Model(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Borden Institute, 2011)

2007년 미 해병대(Marine Corp)와 해군(US Navy)에 의해 Combat and Operational Stress Continuum Model이 제시되었다. 4 color-coded stress zone의 Green(Ready), Yellow(Reacting), Orange(Injured), Red(III)의 4가지 색의 영역으로 적

응 수준을 구별한다. 첫째, Green zone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적응적인 대처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Yellow zone은 경미하고 일시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능 상실을 경험하는 상태로 불안감, 걱정, 수면의 어려움, 식사량 조절의 곤란, 부정적인 사고 등의 준 임상적인 증상을 경험한다. 적절한 심리적 자원과 개입이 이루어지면 Green zone으로 이행할 수 있다. 셋째, Orange zone은 Yellow zone에 비해 심각하고 지속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 상실을 경험하는 상태로 외상 증상, 활력이 회복되지 않는 수면, 사회적 철수,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넷째, Red zone은 우울증, PTSD와 같은 모든 정신 장애 진단을 포함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Orange zone과 Red zone의 경우 정신의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 모델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적응과 부적응의 개념을 이해하며 미 해병대와 해군의 규정, 규칙, 훈련, 교육, 조사, 프로그램 및 심리적 개입의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심리적 개입에 따라 개인의 부적응 정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여기며 COSC 프로그램은 적응을 의미하는 Green zone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휘관과 병사를 포함하는 모든 구성원이 이를 인지하도록 하여 자기 자신, 동료의 스트레스를 모니터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는 모두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리적 서비스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지휘관의 책임을 강조하여 지휘 하에 있는 모든 구성원의 특성(강점, 약점,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상태를 일단위로 모니터링 하고 각 구성원이 stress zone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해 decision matrix에 따라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나) Operation Stress Control and Readiness (OSCAR) program(Rand Corporation, 2015)

군사 문제 연구 기관 Rand Corporation(2015)에 따르면 미 해병대의 '임무수행 스트레스 관리 및 준비태세 확립(OSCAR)프로그램'은 1999년 노스캐롤라이나의 르준캠프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3년 전 해병대로 확대 보급되었다. 현재까지 해병대 사령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병대의 작전 부대 내 일원인 OSCAR 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작전 상황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임상적으로 이해하고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OSCAR 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Provider(소속 전문가)은 부대 내에 속한 정신건강 전문가를 칭한다. 둘째, Extender(외부 전문가)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여타 건강 서비스 제공자와 종교적 프로그램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상주하지는 않지만 군인의 여러 문제로 Extender(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Team member(팀원)은 멘토로 불리기도 하며 부대 내에서 선발된 인력으로 긍정적인 롤 모델 역할을 하거나 군인이 호소하는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 도움이나 조언을 제공한다. 이들은 부대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인원을 빠르게 식별하고 OSCAR 서비스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Trainer(교관)은 master

trainer(주임교관)로부터 5일의 훈련 과정을 끝마친 사람을 뜻하며 소속 부대원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Master Trainer(주임 교관)은 7일의 OSCAR 훈련 과정을 마친 해군을 칭하며 Trainer(교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OSCAR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능한 복무 중 스트레스(전투 스트레스)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종래의 진료에 기반한 심리치료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봉사 및 지원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훈련의 내용은 OSCAR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전투 스트레스를 서로 나누고 토의하면서 예방·식별·관리 방법에 대해 익히는 것이다(Rand Corporation, 2015). 이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은 해병대 장병이 군 복무를 시작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최대한 가까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다(군 심리학, 2016).

5) 영국

영국의 경우 동료병사의 지지에서부터 정신 의학적 치료 기관으로의 연계까지 단계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군대 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가장 먼저 동료 지지체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 전문가팀으로 연계되어 복무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 정신건강 연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 Trauma Risk Management (TRiM) (Greenberg, Lanston, & Jones, 2008)

TRiM은 동료지지 체계(peer support process)로 심리적 외상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비의료인인 군인이 TRiM의 실무자(Practitioner)로서 기능한다. 전투 스트레스를 경험한 동료 병사의 스트레스 수준을 모니터하고 사회적 지지를 해주며,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FMHT로 직접 의뢰해 전문적 심리적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다.

나) Field Mental Health Team(FMHT)(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Borden Institute, 2011)

FMHT는 전투력 유지를 위해 작전 지역 내에 배치되어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식별과 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사와 초빙 정신과 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복 가능한 인원과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한 인원을 식별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DCMH로 의뢰한다.

다) Depart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DCMH)

DCMH²⁾는 정신 의학·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15개가 영국에 소재해 있으며, 5개는 해외 영국 주둔지에 배치되어 있다. DCMH는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정신 의학적 치료를 받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장병이 정신과적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라) The Reservist Mental Health Programme(RMHP)(Pinder, Fear, Wessely, Reid, & Greenberg, 2010)

예비군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전역자도 복무 시와 같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군을 나간 인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King's Centre for Military Health Research(KCMHR)(Pinder et al., 2010)

영국 국방부는 2003년 King's College³⁾(런던 소재)와 협약을 맺고 자금을 투자해 King's Centre for Military Health Research(KCMHR)를 설립하였다. 2004년 King's College와의 협약으로 군 정신건강 연구팀(Academic Centre for Defense Mental Health)(ACDMH)을 구성하였으며, 영국군의 정신건강 연구팀으로서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다. 요약 및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병사의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다루기 전 병사가 군대 내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제도 중 가장 잘 알려진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국방헬프콜,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병영생활상담관과의 상담은 병사가 군 내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구제제도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후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복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으로 육군의 그린캠프와 해군의 블루캠프를 제시하였다. 그린캠프와 블루캠프는 부적응 병사의 심리적 안정 및 적응 유도를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내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비교를 위해 살펴본 해외의 각종 제도 및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병사가 직접 고충을 고발하여 인권을 보호받도록 도와주는 독일의 대표병사, 지휘계통, 국방옴부즈맨 제도가 있다. 두 번째로는 부적응을 초기에 체계적으로 발견하여 복무 적응을 유도하는 이스라엘의

2) Depart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DCHM)
<http://www.army.mod.uk/welfare-support/23246.aspx> 2017.11.
3) King's for Military Health Research(KCMHR).
<https://www.kcl.ac.uk/kcmhr/kcmhr/index.aspx> 2017.11.

Mental Health Center와 대만의 대상별 심리위생교육체계 및 심리보도업무체계가 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정신의학적 접근을 제공하는 미국의 Combat and Operational Stress Continuum Model, 영국의 정신의학적 치료 기관으로의 연계서비스가 있다.

이를 종합하여 해외 군 복무 적응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나라 군복무 적응 유도를 위한 방안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병사 제도는 병사 자신이 경험한 부당한 대우를 상급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표병사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군대의 소원수리 제도는 모두 지휘계통을 통해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계통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병사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이 독자적으로 군 병사의 부당한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사가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휘관을 통하여 군 내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모든 군 관련 문제의 해결 및 결정권이 군 내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뢰로운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군 내 인권문제로 인해 한국 군에서도 군 옴부즈맨(국방 감독관)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상위 소속 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군 10년간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셋째, 미국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OSCAR 제도를 활용하여 병사가 호소하는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 도움과 조언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영생활상담관이 각 부대에 상주하여 병사가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군대 지휘계통의 특성상 병영생활상담관의 독자적인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OSCAR 제도에서 외부전문가의 독립적인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군대 지휘계통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된다.

넷째, 대만의 지구위생심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심리위생 교육은 외부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간부의 교육에 참여하여 전문적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간부가 병사의 정신적 문제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3. 군복무 부적응 관련 인권침해 실태



3. 군복무 부적응 관련 인권침해 실태

가. 문헌조사

군인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군의 인적구성원으로서의 특수신분관계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특수성을 가진다.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당연히 누리며,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군의 구성원으로서 군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이에 부수되는 의무도 동시에 가진다. 즉 일반국민으로서의 모든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추가로 받게 되는 권리도 있으며, 일부는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인권은 천부적으로 보장되는 불가침의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 군의 특성상 병사의 인권은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군 인권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본권이 지향하는 바와 군인 인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인 인권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군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사제도상의 목적달성이라는 공익을 일방적으로 훼손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는 군사적 목적 달성과 군인의 인권보장이 실제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용석(2006)은 군에서는 군 기밀과 관련된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제한, 해외여행 금지, 군무 외의 집단행위 제한 등과 같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대의 임무수행과 기강 확립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으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와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군인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금까지도 인식되고 있으며, 명령에 대한 복종 이행이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병사는 자신들의 고통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소 제한되며, 군 사법권은 일종의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2)에 따르면 병사의 자유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사생활의 미보장, 계급이나 직책의 권위의식에 대한 위압감, 상급자들의 개인적인 일 지시, 분대장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 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파악하였다.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문항 중 부적응 집단과 적응집단으로 구분해서 비교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적응집단에 비해 부적응 집단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적응 병사는 군 내 권위의식에 대한 위압감을 적응병사보다 더 크게 느끼며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상담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행복추구권적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병사 복지 차원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

다. 병사는 개인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이 부족하고 전화기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병사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군 내에서 과도한 징계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항소가 어렵다는 점도 군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통신의 자유와 관련하여 2013년 군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내에서 복무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병사는 2.0%에 불과하였다. 최근 병사가 수신할 수 있는 공용 휴대전화가 2016년 1월 30일부터 일과시간 이외에 사용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병사의 통신권은 일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일과시간이 아닐 때 수신용으로만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한 통신권의 확보로 보기는 어렵다.

양철호 등(2005)의 연구에서는 군 복무자의 기본 인권 중 생존권의 측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병사가 군 복무기간 중 생활하는 주거시설이 매우 열악하며, 병영문화의 경직성과 폐쇄성, 비밀주의와 권위주의적인 특징이 있고, 자유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임태훈, 2013)에서 병사의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8.5%가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구타를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는 병사도 17.7%에 달했다. 또한 가혹행위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병사도 12.5%였으며, 이를 목격한 병사는 22%였다.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도 31.5%의 병사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31.8%의 병사가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를 당한 병사는 대부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았다고 응답했으며, 참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것을 문제시하는 불합리한 병영문화와 군 내에서의 일상적인 일로 치부하고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당한 뒤 탈영 또는 자살생각을 한 병사가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군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사의 부대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부조리한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형래(2016)의 연구에서는 군대 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병사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졌으며, 폭행 경험은 전역 이후 사회생활에 다시 복귀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군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고 및 자살사고는 군대 내의 인권적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 사회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군 내에서 병사가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을 때 소원수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원수리제도의 비밀보장에 대해 43.3%의 병사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나, 2013년 임태훈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23.3%의 병사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원수리 제도의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원수리 제도의 이용에 관한 문항에서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 “비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순으로 두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에서 소원수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문항에서 전체 병사의 50.2%가 소원수리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군에서 병사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원수리 제도의 신뢰성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병사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용하지 않는 병사에게는 신뢰성면에서도 부족한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병사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원수리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효율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복무 시 불편사항 혹은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담당 부서 등으로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임태훈(2013)의 연구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진정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인지도를 확인하였을 때, 각 기관별로 59.3%, 72.5%, 67.5%의 비율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진정 의사를 파악하였을 때 각 기관별로 79.3%, 75.7%, 75.7%의 비율로 진정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진정 의사가 없는 병사는 기관별 56.9%, 71.2%, 67.1%의 비율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개인의 구제요청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원수리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군대 내부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미쳐 병사의 정당한 권리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4)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부의 20.2%, 병사의 29.1%는 군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대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형식적이라는 점과 교육 이후에도 상급자가 변화하는 것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인권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묻는 문항에서 부적응 집단의 경우 73.7%의 병사가 인권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답하는 등 교육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군에서는 부대별로 인권 교관이 선정되어 있고, 집중정신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통해 병사가 필수적으로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병사가 군 생활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나. 방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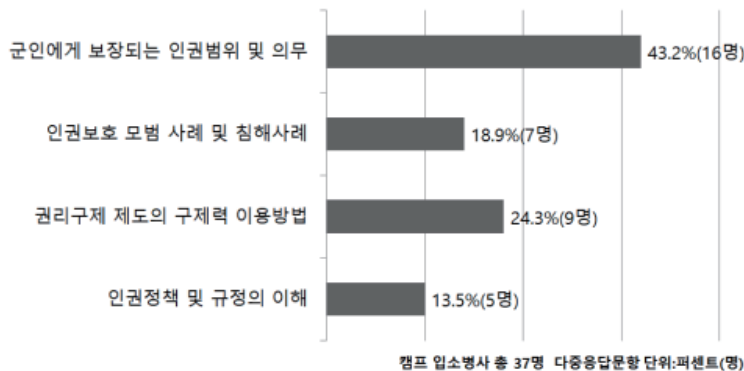
방문조사는 육군 5곳, 해군 3곳, 공군 2곳 총 10개 부대를 방문하여 총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별 인원은 각각 캠프 입소병사 37명(육군 21명/해군 12명/공군 4명), 캠프 도우미병사 36명(육군 28명/해군 4명/공군 4명), 캠프 간부 14명(육군 6명/해군 3명/공군 5명), 일반병사 473명 (육군 251명/해군 112명/공군 110명), 일반간부 48명 (육군 17명/해군 11명/공군 20명), 캠프 복귀병사 3명이었다.

1) 군 인권 실태

가) 대상별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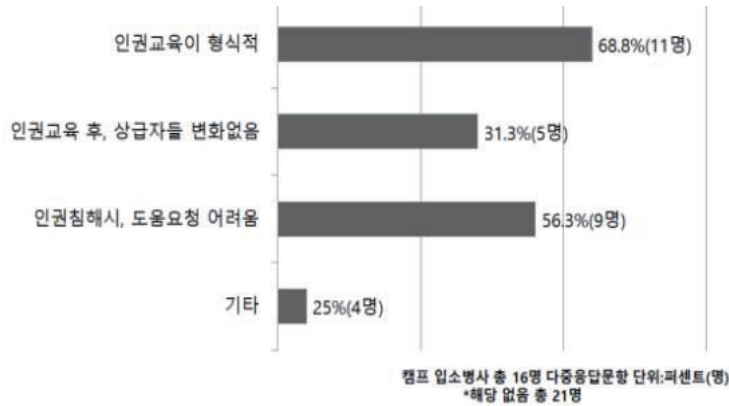
(1) 캠프 입소병사

- 인권교육내용을 살펴본 결과,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범위 및 의무’(43.2%)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장소로는 ‘자대’(43.8%)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그린/힐링캠프’, ‘훈련소’ 순이었다. 입대 후 인권교육 횟수로는 ‘1회’ 및 ‘2-3회’(43.8%)가 가장 많았으며, 인권교육 강사로는 ‘외부강사’(56.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대장’(37.5%)이었다[부록 참고-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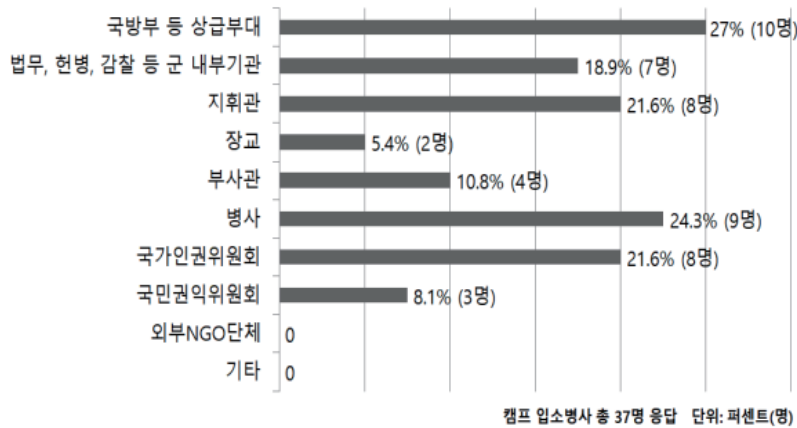
[그림 2] 인권 교육 내용

-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형식적임’(68.8%)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인권침해 시 도움요청이 어려움’(56.3%)이었다. 또한, 면담을 통해 인권교육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1~3점 (10점 기준)으로 ‘효과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형식적임’ 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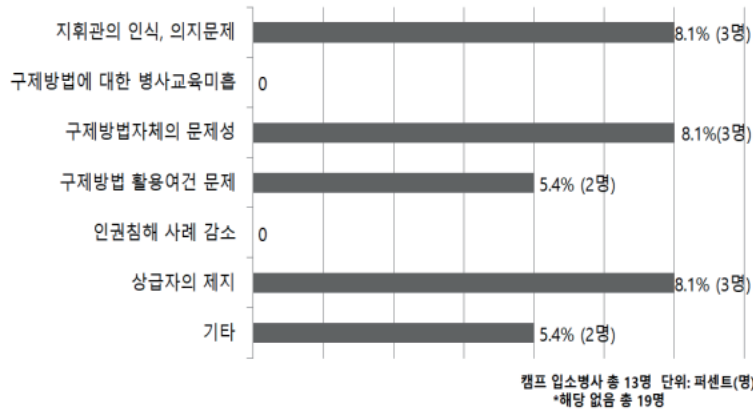
[그림 3]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으로는 ‘국방부 등 상급부대’(27%), ‘병사’(24.3%), 그리고 ‘지휘관’(21.6%), ‘국가인권위원회’(21.6%)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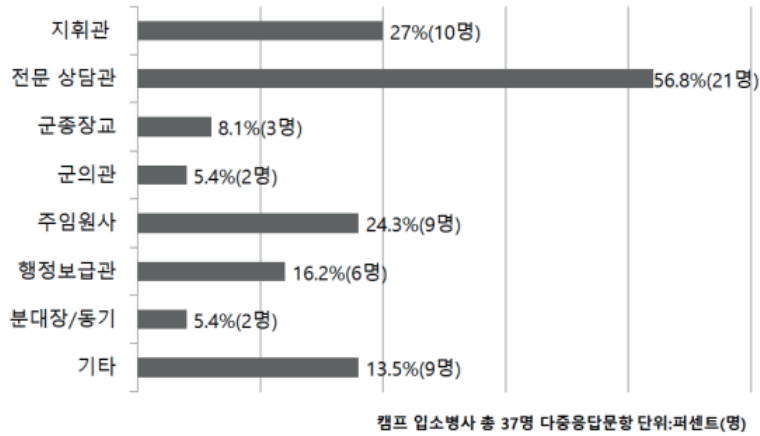
[그림 4] 군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

- 이전에 비해 병사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신고하거나 구제 요청을 하는 것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4점, 4점 척도). 그리고 신고나 구제 요청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휘관의 인식, 의지문제’, ‘구제방법 자체의 문제성’, ‘상급자의 제지’에 (8.1%) 응답한 경우가 높았다.



[그림 5]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구제 요청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 인권침해 구제 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관/부서로는 ‘지휘관 및 주임원사’(43.2%), ‘국가인권위원회’(37.8%)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부록 참고-그림 5]. 그러나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5점, 4점 척도). 또한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징계 등 사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2점, 4점 척도).
- 군대에서 인권침해 시 상담할 대상으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56.8%)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휘관(27%), 주임원사(24.3%) 순이었다. 그러나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소원수리, 상담, 헌병에 요청, 법무참모부에 요청 등 비사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아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2.7, 4점 척도),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1.9, 4점 척도).



[그림 6] 군대에서 인권침해시 상담할 대상

- 알고 있는 인권침해 구제방법으로는 ‘소원수리(마음의 편지)’(89.2%) 및 ‘국방 헬프콜’(89.2%)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지휘관과의 대화’(78.4%),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상담’(73%),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51.4%)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상담’(평균 2.8, 4점 척도), ‘부대 인권상담관과의 상담’(평균 2.7, 4점 척도) 순이었다. 또한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경험으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상담’(54.1%), ‘지휘관과의 대화’(51.4%)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과 이유에 대해서는 ‘지휘관과의 대화’(18.9%)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비밀보장이 안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신고자 신상에 영향미침’이 많았다.

[표 6] 인권침해 구제제도 인지 및 경험 여부와 만족도

구제방법	알고 있음	경험 있음	만족도 평균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89.2% (33명)	24.3% (9명)	2.4
지휘관과의 대화	78.4% (29명)	51.4% (19명)	2.5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51.4% (19명)	29.7% (11명)	2.5
병영생활전문 상담관과의 상담	73% (27명)	54.1% (20명)	2.8
부대 인권 상담관과의 상담	40.5% (15명)	18.9% (7명)	2.7
감찰, 헌병참모에 의한 구제	29.7% (11명)	8.1% (3명)	2.3
국가인권위원회	21.6% (8명)	0% (0명)	0
국민권익위원회	8.1% (3명)	0% (0명)	0
외부 NGO 단체	5.4% (2명)	0% (0명)	0
국방 신문고	24.3%(9명)	2.7%(1명)	2
국방 헬프콜	89.2% (33명)	16.2% (6명)	2.5

캠프 입소병사 총 37명 응답 단위: 퍼센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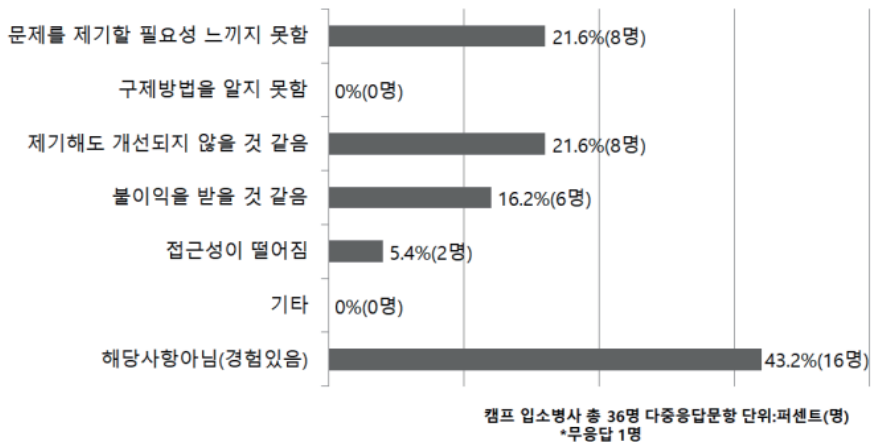
[표 7]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과 이유

구제방법	불만족 응답비율	이유
1.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16.2% (6명)	1순위: ① 2순위: ②,④,⑤
2. 지휘관과의 대화	18.9% (7명)	1순위: ①,②,④
3.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11.2% (4명)	1순위: ①,②,④
4. 병영생활전문 상담관과의 상담	16.2% (6명)	1순위: ②
5. 부대 인권 상담관과의 상담	8.1% (3명)	1순위: ②
6. 감찰, 헌병참모에 의한 구제	5.4% (2명)	1순위: ②
7. 국가인권위원회	0% (0명)	-
8. 국민권익위원회	0% (0명)	-
9. 외부 NGO 단체	0% (0명)	-
10. 국방 신문고	2.7% (1명)	-
11. 국방 헬프콜	8.1% (3명)	1순위: ②,⑤,⑧;도움이 안됨

캠프 입소병사 총 37명 다중응답문항 단위: 퍼센트(명)

*불만족 이유: ①비밀보장이 안됨 ②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불이익을 받음 ④신고자 신상에 영향미침 ⑤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⑥처리결과 통보 안됨 ⑦사건재발 방지 노력미흡 ⑧기타

- 구제방법을 이용해보지 않은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21.6%),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음’(21.6%)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음’(16.2%)이었다. 이 외에 면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익명성 보장이 안 됨’, ‘믿음이 가지 않아서’ 등의 원인으로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철저한 익명성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민간 단체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림 7] 구제방법을 이용해보지 않은 이유

- 구제방법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지휘관의 대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상담’이 가장 잘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8점).

[표 8] 인권침해 구제방법 운영실태

구제방법	운영실태 평균	'잘 모르겠음' 응답 비율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유
1.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2.8	32.4% (12명)	1순위: ②,③ 2순위: ①,⑤
2. 지휘관과의 대화	2.8	29.7% (11명)	1순위: ②,⑤,⑥,⑦
3.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2.4	43.2% (16명)	1순위: ⑥ 2순위: ①,②,⑤
4. 병영생활전문 상담관과의 상담	2.8	27% (10명)	1순위: ②
5. 부대 인권 상담관과의 상담	2.3	45.9% (17명)	1순위: ②
6. 감찰, 헌병참모에 의한 구제	2.2	54.1% (20명)	1순위: ③,⑤ 2순위: ①,②,④
7. 국가인권위원회	1.8	64.9% (24명)	1순위: ③,⑤
8. 국민권익위원회	1.8	64.9% (24명)	1순위: ⑤
9. 외부 NGO 단체	1.6	64.9% (24명)	1순위: ⑤
10. 국방 신문고	1.6	64.9% (24명)	1순위: ⑤
11. 국방 헬프콜	2.4	56.8% (21명)	1순위: ①,②,③,④

캠프 입소병사 총 37명 다중응답문항 단위: 퍼센트(명)

*불만족 이유: ①비밀보장이 안됨 ②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불이익을 받음 ④부대 분위기 및 단결에 영향 줌 ⑤접근성이 떨어짐 ⑥간부들의 인식 부족 ⑦기타

- 인권침해 경험 시 효과적인 구제방법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70.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54.1%), '군 내 사법제도' 및 '국방 헬프콜'(5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군 내 인권침해 경험 시 효과적인 구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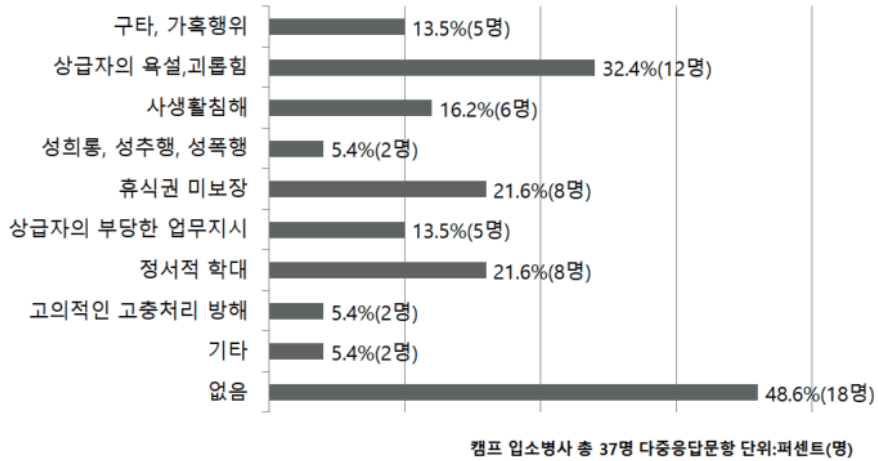
구제방법	알고 있음	몰랐음
1. 군 내 사법제도	51.4% (19명)	45.9% (17명)
2.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40.5% (15명)	59.5% (22명)
3. 지휘관과의 대화	48.6% (18명)	51.4% (19명)
4.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27% (10명)	73% (27명)
5. 지휘관 및 상급자에게 보고	45.9% (17명)	54.1% (20명)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70.3% (26명)	27% (10명)
7.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54.1% (20명)	40.5% (15명)
8. 외부 NGO 단체에 진정	45.9% (17명)	48.6% (18명)
9. 국방 신문고 이용	27% (10명)	70.3% (26명)
10. 국방 헬프콜	51.4% (19명)	45.9% (17명)
11. 부모님, 친지, 친구에게 알림	48.6% (18명)	48.6% (18명)

캠프 입소병사 총 37명 응답 단위: 퍼센트(명)

* 1, 6, 7, 8, 9, 10, 11번: 무응답 제외 값

- 부대 내에서 겪은 인권침해로는 '없음'(48.6%)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32.4%), '휴식권 미보장' 및 '정서적 학대'(21.6%) 순이었다. 이 외에 면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계급 간 업무 차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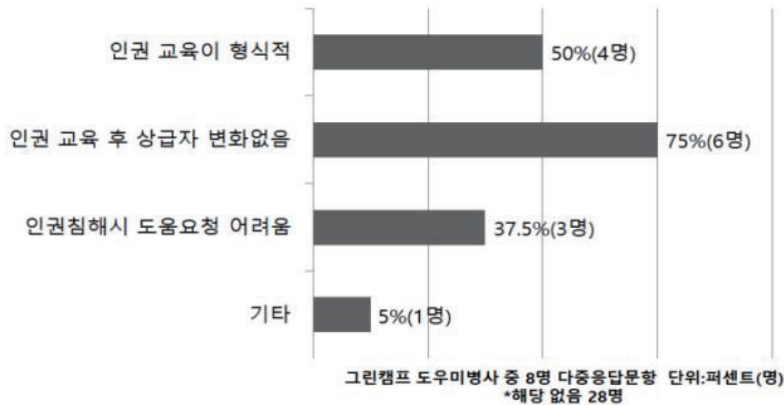
급이 높을수록 관대함), ‘부당한 업무 지시’, ‘직별 변경 신청이 수용되지 않음’, ‘환자에 대한 배려 부족 및 좋지 않은 시선’ 등이 있었다.



[그림 8] 캠프 입소 전 겪은 인권침해

(2) 캠프 도우미병사

- 입대 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있다’에 응답한 병사가 20명, ‘없다’에 응답한 병사가 10명,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병사가 6명이었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내용을 살펴본 결과,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범위 및 의무’(7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권보호 모범 사례 및 침해사례’(65%)에 응답하였다. 또한, 인권교육 장소로는 ‘자대’(75%)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그린/힐링캠프’, ‘훈련소’ 순이었다. 입대 후 인권교육 횟수는 ‘2-3회’(55%)가 절반 이상이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5회’(30%)이었다. 또한, 인권교육 강사는 ‘중대장’(3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사관’(30%)이었다[부록 참고-그림 6~9].
- 인권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본 결과, ‘개선되었다’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변화 없다’에 응답한 병사가 40%였다. 이 중, ‘변화 없다’에 응답한 8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인권교육 후 상급자 변화 없음’(7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권침해 시 도움요청이 어려움’(37.5%)이었다.



[그림 9]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 병사의 인권에 취약한 부분으로는 ‘월급(48.6%)’, ‘휴식권 미보장(48.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34.3%)’이었다[부록 참고-그림 10].
- 현재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군내에서 인권침해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평균 2.3, 4점 척도). 또한,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으로는 ‘지휘관(47.2%)’이 가장 높았으며, ‘병사(30.6%)’, ‘국방부 등 상급부대(22.2%)’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부록 참고-그림 11].
- 이전에 비해 병사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신고하거나 구제 요청을 하는 것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점, 4점 척도). 이에 신고나 구제 요청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병사를 대상으로 이유를 알아본 결과 ‘구제제도 활용 여건문제(30%)’, ‘인권침해 사례 감소(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구제제도에 대한 병사교육 미흡(20%)’에 응답하였다.



[그림 10] 구제 요청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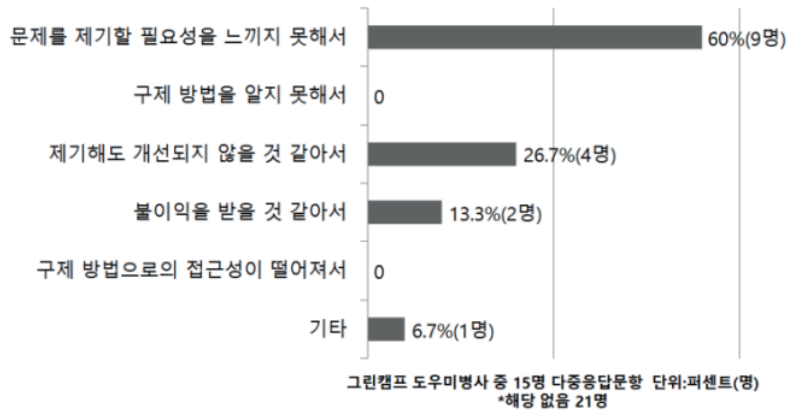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기관/부서로는 ‘국가인권위원회(5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휘관 및 주임원사(38.9%)’, ‘헌병(27.8%)’순으로 응답하였다[부록 참고-그림 12].
-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경험유무를 알아본 결과, 경험을 해본 구제제도로는 ‘지휘관과의 대화(47.2%)’가 가장 높았으며, ‘소원수리(27.8%)’,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25%)’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병영생활전문 상담관과의 상담’(평균 3.8, 4점 척도)이 가장 높았으며, ‘지휘관과의 대화’(평균 3.5, 4점 척도),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평균 3.4, 4점 척도)’ 순이었다.

[표 10]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경험유무와 만족도

구제방법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만족도 평균
1.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27.8% (10명)	72.2% (26명)	2.7
2. 지휘관과의 대화	47.2% (17명)	52.8% (19명)	3.5
3.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25% (9명)	75% (27명)	3.4
4. 병영생활전문 상담관과의 상담	16.7% (6명)	83.3% (30명)	3.8
5. 부대 인권상담관과의 상담	0% (0명)	100% (36명)	-
6. 감찰, 헌병참모에 의한 구제	5.6% (2명)	94.4% (34명)	1
7. 국가인권위원회	0% (0명)	100% (36명)	-
8. 국민권익위원회	2.8% (1명)	97.2% (35명)	3
9. 외부 NGO 단체	0% (0명)	100% (36명)	-
10. 국방 신문고	2.8% (1명)	97.2% (35명)	3
11. 국방 헬프콜	11.1% (4명)	88.9% (32명)	2.8

캠프 도우미병사 총 36명 응답 단위: 퍼센트(명)
* 만족도: 5점 척도

-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60%)’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26.7%)’,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13.3%)’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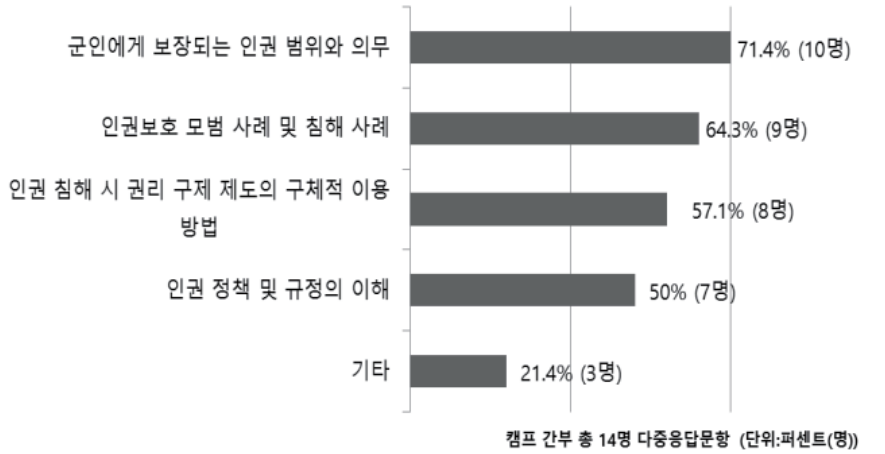


[그림 11]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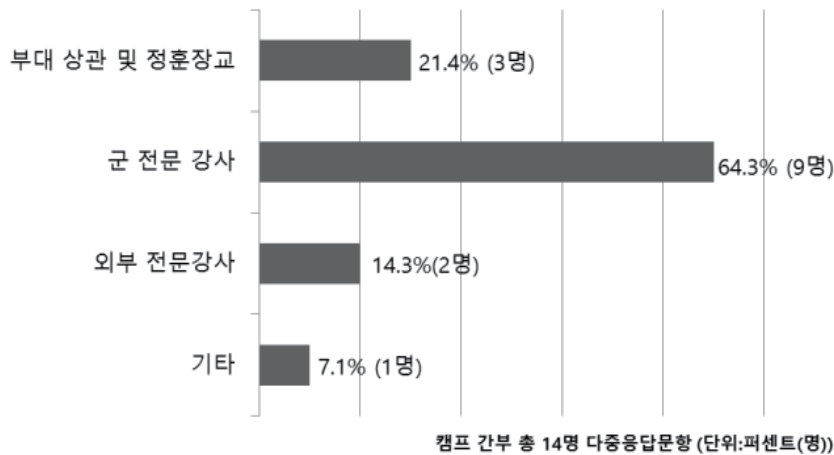
- 또한,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과 이유에 대해서는 ‘소원수리(마음의 편지)(11.1%)’, ‘지휘관과의 대화(11.2%)’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사건재발 방지 노력이 미흡’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을 불만족 이유로 꼽고 있었다[부록 참고-표 1].
- 인권침해 구제방법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소원수리(마음의 편지)(평균 2.8)’가 가장 잘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지휘관의 대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상담’, ‘국방 헬프콜’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평균 2.7). 또한,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병사를 대상으로 이유를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된 구제방법(소원수리, 지휘관과의 대화, 국방 헬프콜 등)에서 불만족을 느낀 경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운영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구제방법(외부NGO,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접근성이 떨어짐’을 불만족의 이유로 보고하고 있었다[부록 참고-표 2].

(3) 캠프 운영 간부

- 지난 1년간 간부가 받은 인권교육 횟수는 ‘2~3회’(7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회’(28.6%)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교육 내용을 알아본 결과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범위와 의무’(71.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권보호 모범 사례 및 침해사례’(64.3%)의 응답이 높았다. 인권교육 장소로는 ‘차대’(85.7%)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기관’(14.3%)에 응답하였다. 인권교육 강사로는 ‘군 전문 강사’(64.3%)로 가장 높았으며, ‘부대 상관 및 정훈장교’(21.4%), ‘외부전문 강사’(14.3%) 순으로 응답하였다[부록 참고-그림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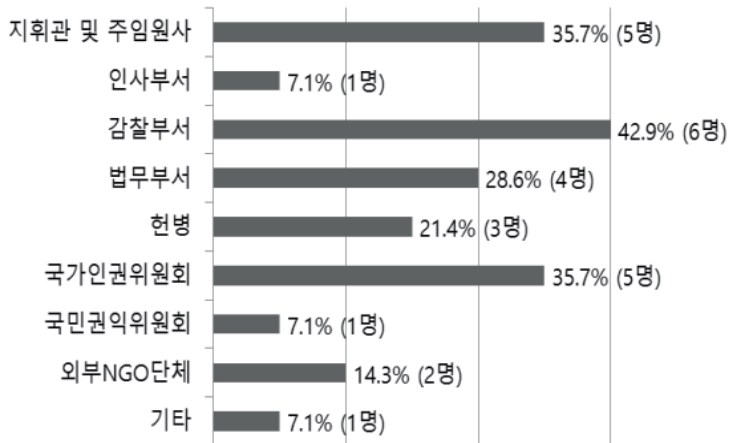
[그림 12] 인권교육 내용



[그림 13] 인권교육 강사

- 인권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개선되었다'로 응답한 비율은 91.7%였으며,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였다. 인식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인권교육이 형식적', '인권교육 후 상급자 변화 없음'으로 보고했다.[부록 참고-그림 15].
- 추가적으로 인권교육이 효과적이었는지를 면담을 통해 알아본 바, 간부의 63.5%가 인권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주입식 교육이었음',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음' 등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인권교육자의 군 특성 이해', '홍보부족 개선', '주제 축소(인권이라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와 닿지 않음)'를 제안하였다. 반면, 인권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36.5%는 '인권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로 작용' 등으로 보고하였다.

-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으로는 ‘지휘관’(5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병사’(28.6%), ‘법무, 헌병, 검찰 등 군 내부기관’(28.6%)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부록 참고-그림 16]
- 인권침해 구제 가장 효율적인 기관/부서로는 ‘감찰부서’(42.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휘관 및 주임원사’, ‘국가인권위원회’로 응답하였다(35.7%). 또한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구제제도 시행에 효율적인 기관/부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결국 부대 내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음’, ‘군 특성상 상급부대와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군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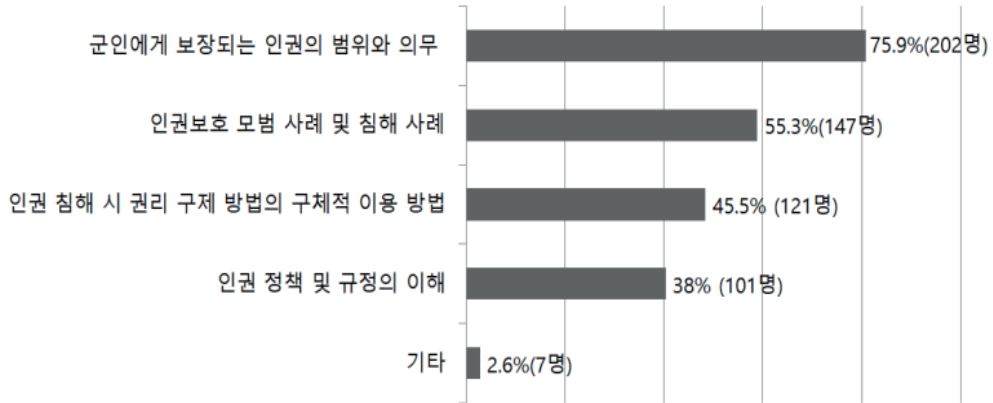
그린캠프 간부 총 14명 다중응답문항 (단위:퍼센트(명))

[그림 14] 인권침해 구제 가장 효율적인 기관/부서

- 복무부적응 병사 문제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평균 3.57, 4점 척도). 또한, 현재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처우는 약간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평균 2.75, 4점 척도).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 또는 구제요청이용의 증가여부를 알아본 결과, 조금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평균 3.21, 4점 척도). 추가적으로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다양한 제도들이 많이 활용됨’, ‘매체를 통해 문제 인식을 함’,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병사의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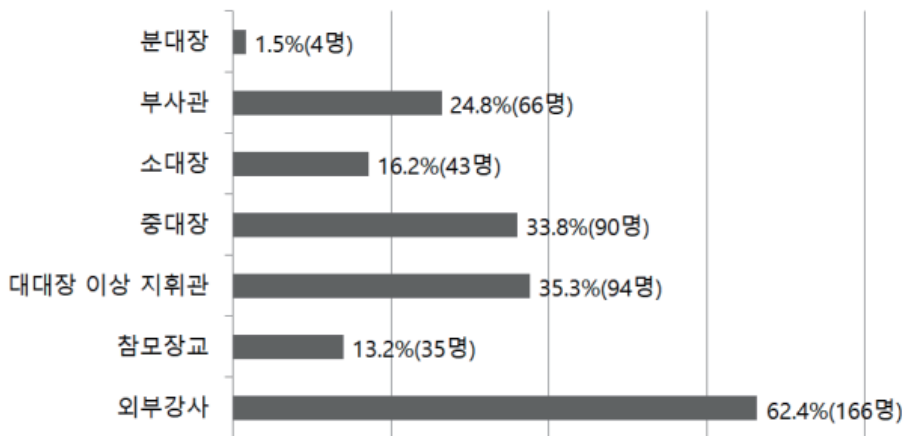
(4) 일반병사

- 인권교육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7.9%(274명)였고,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78명),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5.6%(121명)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병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범위 및 의무’(75.9%)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장소로는 ‘자대’(71.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훈련소’(43.2%)이었다. 입대 후 인권교육 횟수로는 ‘2~3회’(55.1%)로 가장 높았다. 인권교육 강사로는 ‘외부강사’(62.4%)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대장 이상 지휘관’(35.3%)이었다[부록 참고-그림 18,19]



일반부대 일반병사 총 266명 다중응답문항 단위:퍼센트(명)
*해당없음 199명 무응답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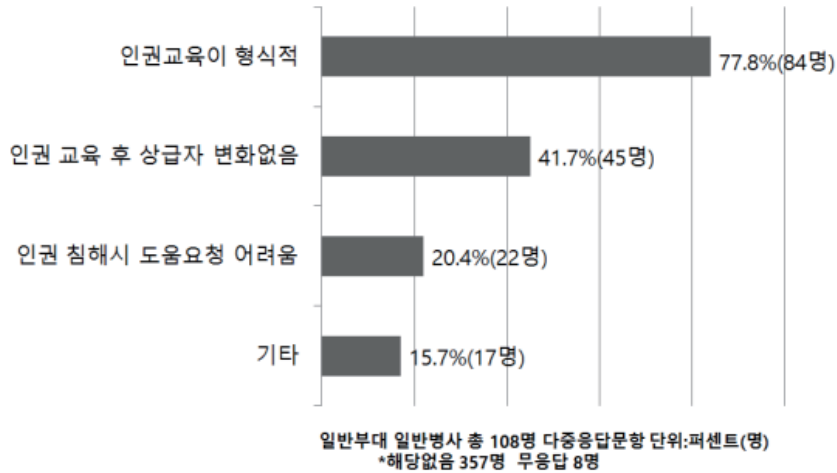
[그림 15] 인권교육 내용



일반부대 일반병사 총 266명 다중응답문항 단위:퍼센트(명)
*해당없음 199명 무응답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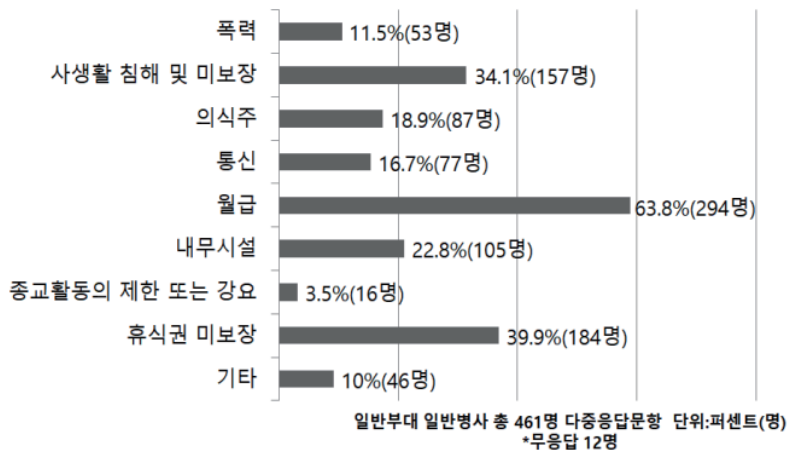
[그림 16] 인권교육 강사

- 인권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4%(158명),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9.1%(104명), ‘저하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4명)이었다. 또한,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형식적임’(77.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권교육 후 상급자의 변화없음’(41.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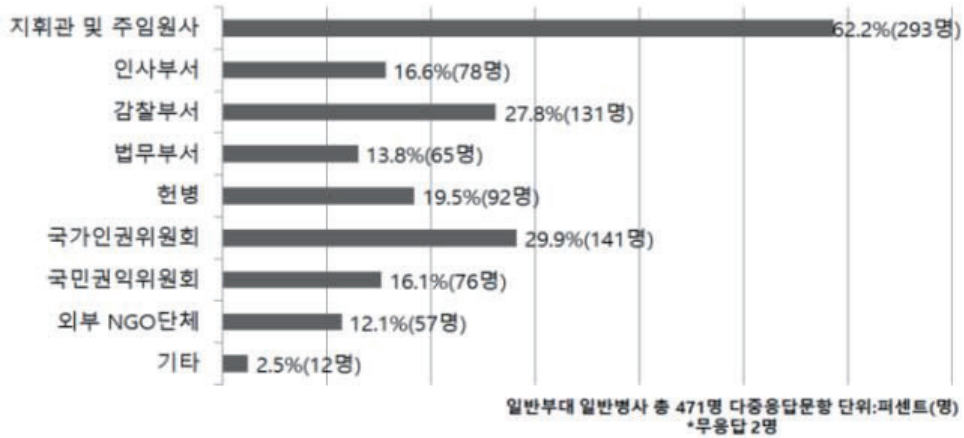
[그림 17]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 병사의 인권에 취약한 부분을 살펴본 결과, ‘월급’(6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휴식권 미보장’(39.9%),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34.1%)로 나타났다. 또한, 군 내 인권침해 정도는 평균 2.03(4점 척도)으로 군 내 인권침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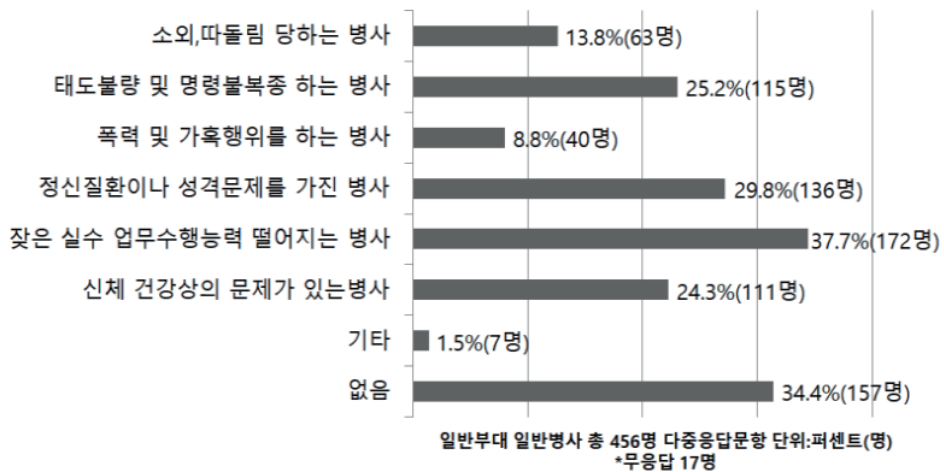
[그림 18] 병사 인권에 취약한 부분

-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경험으로는 ‘지휘관과의 대화’(52.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원수리(마음의 편지)’(36.9%),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28.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된 상위 3개의 구제제도의 만족도는 ‘지휘관과의 대화’(평균 3.9. 5점 척도),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평균 3.77. 5점 척도), ‘소원수리(마음의 편지)’(평균 3.69. 5점 척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수의 병사가 경험한 ‘국가인권위원회’(평균 4.2), ‘국민권익위원회’(평균 5), ‘외부 NGO 단체’(평균 4.67) 등의 군 외부기관의 구제방법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참고-표 3].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26.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음’(17.3%)이었다[부록 참고-그림 20].
-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5%(1명)이었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13.4%(16명), ‘부대 인권상담관’ 13.1%(5명)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응답으로는 공통적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을 1순위로 보고하였다[부록 참고-표 4].
- 인권침해 구제방법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지휘관과의 대화’(평균 3.21, 4점 척도)가 가장 잘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제방법 운영실태에 대해 ‘잘 모르겠음’에 응답한 비율은 ‘외부 NGO단체’(64.5%), ‘국가인권위원회’(64.1%), ‘국민권익위원회’(63.4%)순으로 나타났다.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안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접근성이 떨어짐’ 등으로 응답하였다[부록 참고-표 5].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으로는 ‘지휘관’(39.7%), ‘병사’(26.8%), ‘부사관’(24.9%), ‘국방부 등 상급 부대’(20.7%)순으로 응답이 높았다[부록 참고-그림 21].
- 이전에 비해 병사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신고하거나 구제 요청을 하는 것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다(평균 2.93, 4점 척도). 그리고 신고나 구제 요청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는 ‘인권침해 사례 감소’(22.9%), ‘구제방법 자체의 문제성’(20%), ‘지휘관의 인식, 의지 등의 문제’(18.1%)순으로 나타났다[부록 참고-그림 22].
- 인권침해 구제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관/부서를 알아본 결과, ‘지휘관 및 주임원사’(62.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29.9%), ‘감찰부서’(27.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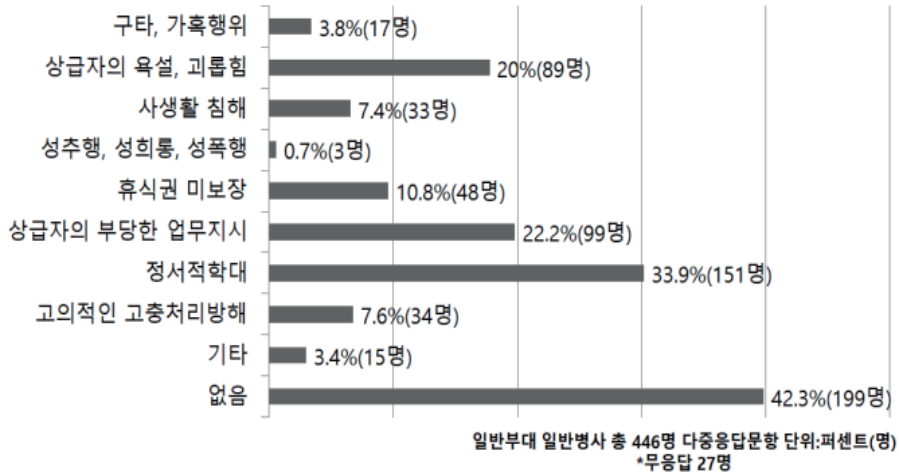
[그림 19] 인권침해 구제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기관/부서

- 해 부대 내에서 경험해 본 복무부적응 병사의 유형으로는 ‘작은 실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37.7%)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29.8%)로 나타났다.



[그림 20] 복무 중 겪어본 복무부적응병사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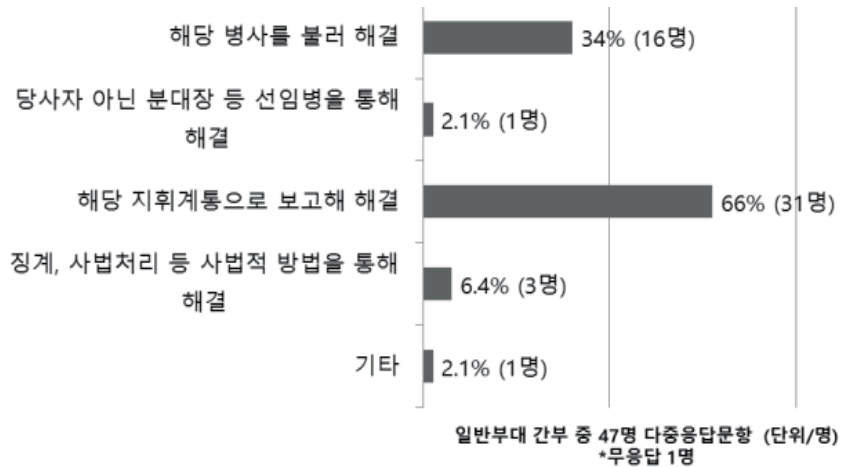
- 복무부적응 병사 문제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평균 3.03, 4점 척도). 그리고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처우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약간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7, 4점 척도). 복무부적응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음’(42.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정서적 학대’(33.9%),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22.2%),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복무부적응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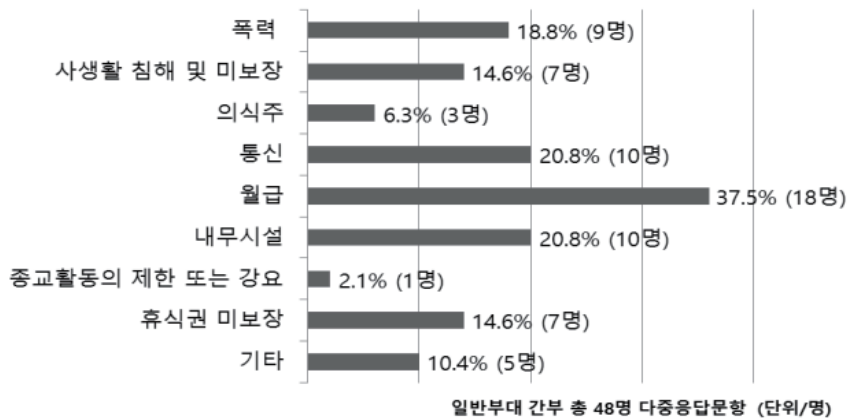
(5) 일반 간부

- 병사의 인권에 대한 처우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35, 4점 척도). 또한 병사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없다’(75%)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7명이 응답한 주된 문제로는 ‘병 상호간 문제가 있다’(3명)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권 법령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2명)이었다[부록 참고-그림 23].
- 병사 인권이 개선될 경우 군 기강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54, 3점 척도).
- 병사에게 인권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해당 지휘계통으로 보고해 해결’(66%)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당 병사를 불러 해결’(3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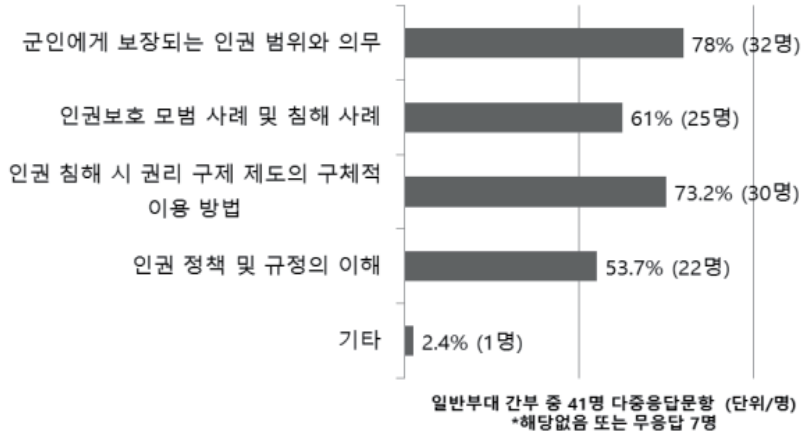
[그림 22] 병사에게 인권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 방법

- 병사의 인권에 취약하다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월급'(37.5%)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신' 및 '내무시설'(20.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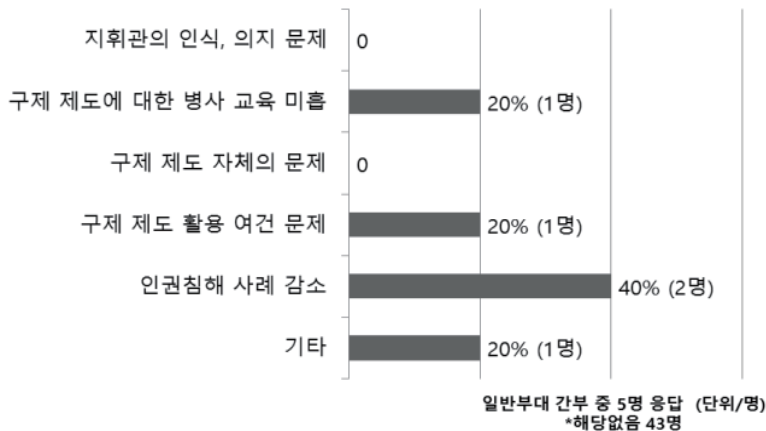
[그림 23] 병사 인권에 취약한 부분

-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있다'(87.2%)가 가장 높았다. 인권교육내용을 살펴본 결과,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범위 및 의무'(78%)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권 침해 시 권리 구제 제도의 구체적 이용 방법'(73.2%)이었다. 그리고 장소로는 '자대'(88.1%)가 가장 높았다.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로는 '2~3회'(52.4%)가 가장 높았으며, 인권교육 강사로는 '부대 상관 및 정훈장교'(47.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외부 전문 강사'(40.5%), '군 전문 강사'(38.1%) 순이었다[부록 참고-그림 2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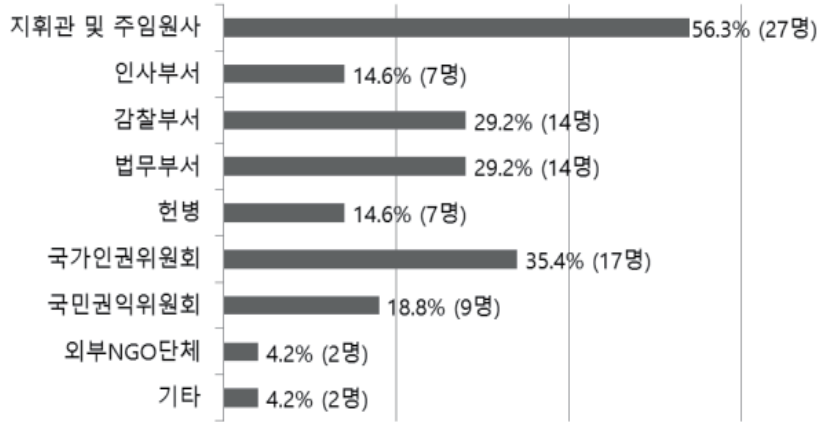
[그림 24] 인권교육 내용

- 인권 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개선되었다’(88%)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인권 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인권 교육이 형식적’(10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권 교육 후 상급자 변화 없음’(40%)이었다[부록 참고-그림 27].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으로는 ‘지휘관’(56.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방부 등 상급부대’(25%)이었다[부록 참고-그림 28].
- 이전에 비해 병사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신고하거나 구제 요청을 하는 것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1, 4점 척도). 그리고 신고나 구제 요청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는 ‘인권 침해 사례 감소’(40%)에 응답한 경우가 높았다.



[그림 25] 구제 요청이 증가하였다 생각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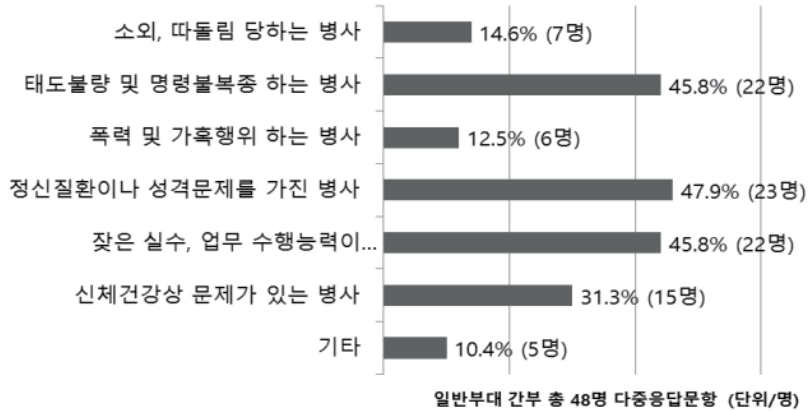
- 인권침해 구제 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관/부서로는 ‘지휘관 및 주임원사’(56.3%)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35.4%), ‘감찰부서’ 및 ‘법무부서’ (29.2%) 순이었다.



일반부대 간부 총 48명 다중응답문항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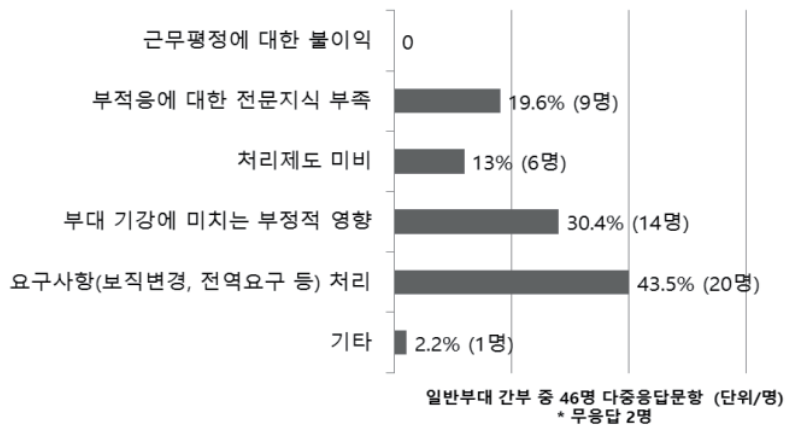
[그림 26] 인권침해 구제 가장 효율적인 기관/부서

- 병사의 인권 보호 및 구제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인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을 개선시켜야한다는 의견 및 권리의 보장만큼 책임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구제 요청 및 신고 이후에 사후 처리에서 익명성 보장 및 비밀 보장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현재 부대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는, 약간 있거나 전혀 없다는 응답이 대체로 많았다(평균 1.51, 4점 척도). 병사가 군 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주된 이유로는, ‘비자발적 입대’(35.4%), ‘선임 병과의 갈등’(33.3%), ‘성격 문제’(31.3%) 등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부록 참고-그림 29].
- 복무부적응 병사 문제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3.25, 4점 척도),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약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21, 4점 척도). 주로 접한 부적응 병사의 유형으로는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47.9%), ‘잘은 실수,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병사’ 및 ‘태도불량 및 명령불복종 하는 병사’(45.8%)에 많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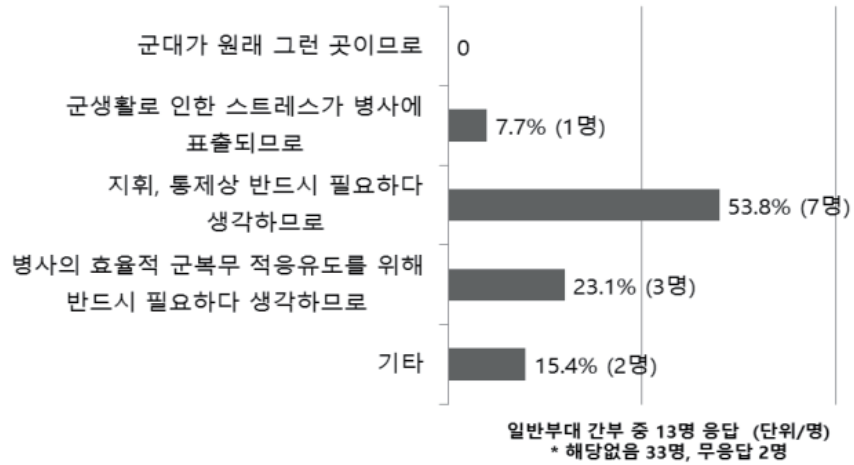
[그림 27] 주로 접한 부적응 병사의 유형

- 복무부적응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으로는 ‘없음’(44.4%)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35.6%)이었다[부록 참고-그림 30].
- 복무부적응 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로는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처우개선’(65.2%)이 가장 높았으며[부록 참고- 그림 31] 복무부적응 병사 피해사항 처리시 어려운 점으로는 ‘요구사항(보직변경, 전역요구 등) 처리’(43.5%)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대 기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30.4%)이었다.



[그림 28] 복무부적응 병사 피해사항 처리시 어려운 점

-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무부적응 병사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체로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15, 4점 척도), 침해된다 생각하는 이유에는 ‘지휘, 통제상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므로’(53.8%)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림 29]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부적응 병사 인권이 침해된다 생각하는 이유

나) 대상 간 비교분석

[표 11] 군 인권 실태 문항별 응답 대상

범주	세부질문문항	캠프 간부	캠프 도우미	캠프 입소	일반 간부	일반 병사
인권침해 예방교육	인권교육의 내용	■	■	■	■	■
	인권교육의 장소	■	■	■	■	■
	인권교육의 횟수	■	■	■	■	■
	인권교육 강사	■	■	■	■	■
	인권교육 후 인식변화	■	■	■	■	■
	인권교육 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	■	■	■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 및 집단	■	■	■	■	■
인권침해 실태	병사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	■			■	
	병사의 인권 처우				■	
	병사의 취약한 인권	■			■	
	현재 군 내 인권침해 정도		■			■
	경험해 본 복무부적응 병사 유형	■			■	■
	군 조직 특수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여부					■
	도움/배려 병사 관리 제도			■		
	병사의 복무부적응이 군에 미치는 영향	■			■	■
	복무부적응 병사 처우	■			■	■
	복무부적응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	■	■
인권침해 구제제도 (대책)	인권침해 구제 신고 및 요청 이용 증가	■	■	■	■	■
	신고 및 요청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	■	■	■	■
	인권침해 구제 방법에 효율적인 기관/부서	■	■	■	■	■
	병사 인권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	
	병사 피해사항 처리 시 어려운 점				■	
	인권침해 시 도움 받을 수단/방법 인지 여부			■		
	인권침해 시 사법적 도움요청방법 인지 여부			■		
	인권침해 시 비사법적 도움요청방법 인지 여부			■		
	인권침해 시 외부기관 도움요청방법 인지 여부			■		
	입소 전 알고 있던 구제방법			■		
	인권침해 시 구제방법 경험유무		■	■		■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	■		■
	구제제도 운영실태		■	■		■
	인권침해 시 상담할 대상			■		
인권보호/구제를 위한 보완/추가도입 사항	■	■	■	■	■	

(1) 인권침해 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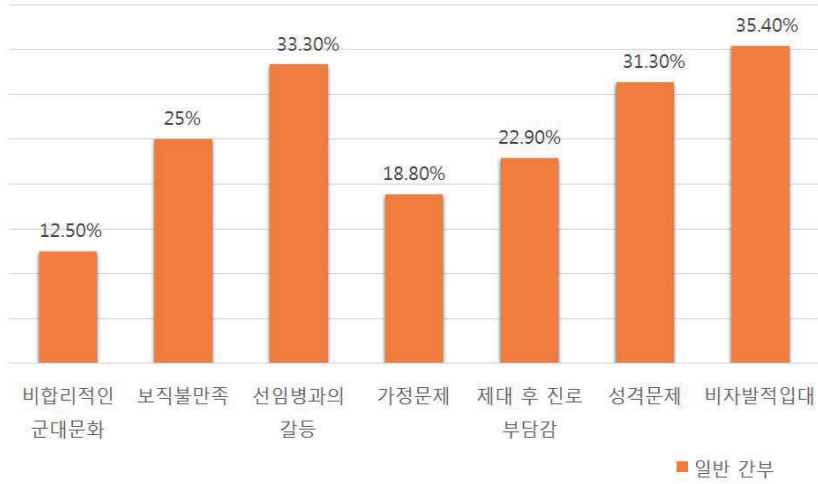
- 인권교육의 내용은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범위 및 의무’(병사 76.8%, 간부 76.4%),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로는 ‘자대’(병사 79.7%, 간부 89.1%), 인권교육의 횟수는 ‘2-3회’(병사 61.7%, 간부 58.2%)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인권교육 강사로는 병사의 경우 ‘외부강사’(73.3%)가 가장 높았다. 간부의 경우에는 ‘군 전문 강사’(45.5%), ‘부대 상관 및 정훈 장교’(41.8%) 순으로 응답하였다.
- 인권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본 결과,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대부분 ‘변화 없다’(87.5%)에 응답한 반면, 일반병사와 간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선되었다’(일반병사 60.5%, 간부 87.3%)에 응답하였다. 또한 ‘변화 없다’ 또는 ‘저하되었다’로 보고한 응답자 중 인식이 변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권교육이 형식적임’(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 78.6%, 일반병사 71%, 간부 100%)으로 응답하였다.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 및 집단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국방부 등 상급부대’가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일반병사 및 간부의 경우에는 ‘지휘관’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12] 인권침해 방지 시 주도적 역할

	캠프 입소병사	캠프 도우미	캠프 간부	일반 병사	일반 간부
국방부 등 상급부대	27%	22.2%	14.3%	20.7%	25%
법무, 헌병, 검찰 등 군 내부기관	18.9%	19.4%	28.6%	12.3%	10.4%
지휘관	21.6%	47.2%	50%	39.7%	56.3%
장교	5.4%	8.3%	14.3%	16.7%	10.4%
부사관	10.8%	16.7%	14.3%	24.9%	8.3%
병사	24.3%	30.6%	28.6%	26.8%	12.5%
국가인권위원회	21.6%	16.7%	14.3%	7.2%	12.5%
국민권익위원회	5.1%	8.3%	7.1%	3.2%	8.3%
외부 NGO단체	-	11.1%	-	2.3%	2.1%
기타	-	16.7%	14.3%	1.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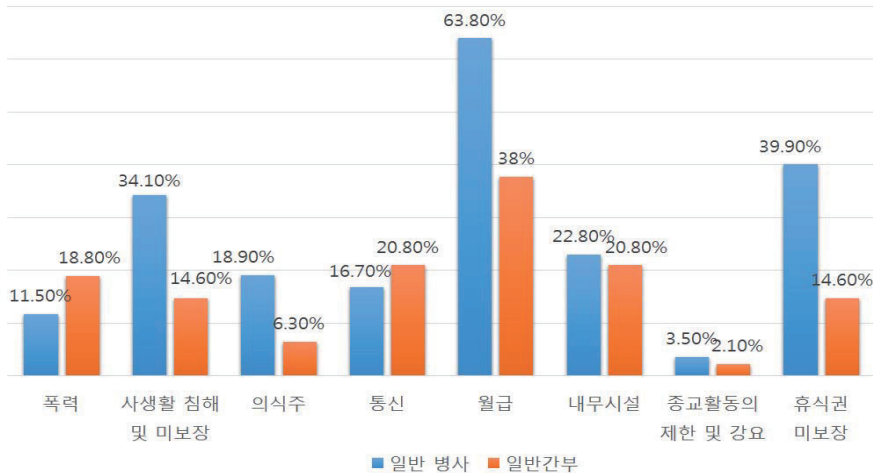
(2) 인권침해 실태

- 군에서 병사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 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자발적 입대’, ‘선임과의 갈등’, ‘성격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0] 군 내 심리적 어려움의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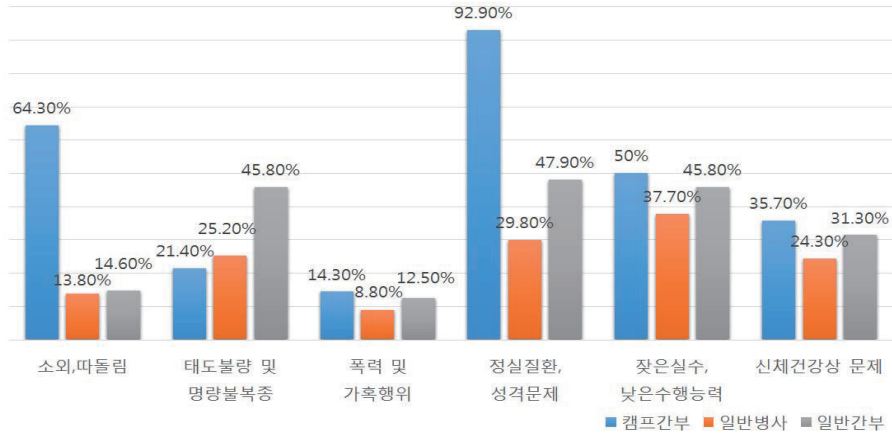
- 병사의 인권 처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부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대체로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35점, 4점 척도).
- 병사의 취약한 인권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병사의 경우 ‘월급’, ‘휴식권 미보장’,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간부의 경우에는 ‘월급’, ‘내무시설’ 및 ‘통신’, ‘폭력’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그림 31] 병사의 취약한 인권

- 현재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병사의 경우 군 내에서 인권침해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평균 2.04, 4점 척도). 또한,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내용을 알아본 결과, ‘계급 간 업무 차별(계급이 높을수록 관대함)’, ‘부당한 업무 지시’, ‘직별 변경 신청이 수용되지 않음’, ‘환자에 대한 배려 부족 및 좋지 않은 시선’ 등이 있었다.

- 복무부적응병사 유형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간부는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에 병사는 '잦은 실수 및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에 높게 응답하였다.



[그림 32] 경험한 복무부적응병사 유형

-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무부적응 병사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일반 간부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15, 4점 척도). 또한 인권이 '약간 침해된다' 또는 '매우 침해된다' 라고 보고한 응답자 중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휘, 통제상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므로'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53.8%).
- 복무부적응 병사의 군대 적응을 위해 '도움/배려 병사 관리 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2점, 5점 척도).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후임들의 무시·편견·안 좋은 시선, 낙인,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됨 (부적응이 환경보다는 병사 개인의 문제임, 바뀌는 것이 없음 등), 부담감 등이 있었다.
- 병사의 복무부적응이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병사의 경우 약간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03, 4점 척도). 간부의 경우에는 꽤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27, 4점 척도). 또한,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병사(평균 2.75)와 간부(평균 2.97) 모두 약간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점 척도).
- 복무부적응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병사와 간부 모두 '없음'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상급자

의 욕설, 괴롭힘’, 일반병사와 일반간부의 경우 ‘정서적 학대’로 응답하였다.

[표 13] 입소 전 인권침해/복무 부적응 병사 피해사항

	캠프 입소 병사	일반 간부	일반 병사
1순위	없음 (48.8%)	없음 (44.4%)	없음 (42.3%)
2순위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32.4%)	정서적 학대 (35.6%)	정서적 학대 (33.9%)
3순위	휴식권미보장 정서적 학대 (각 21.6%)	기타 (13.3%)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22.2%)

(3) 인권침해 구제제도(대책)

- 병사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 또는 구제 요청 이용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일반병사와 간부 모두 조금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캠프 입소 병사의 경우 그린캠프 입소병사는 ‘변화 없다’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42.9%), 그 이유로는 주로 ‘지휘관의 인식, 의지 문제’, ‘구제방법 자체의 문제성’, ‘상급자의 제지’로 나타났다. 반면에, 블루캠프 입소병사는 ‘조금 증가하였다’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50%).
- 인권침해 구제 방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 일반병사 및 일반간부의 경우 ‘지휘관 및 주임원사’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그린/블루캠프 간부의 경우에는 ‘감찰부서’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14] 인권침해 구제 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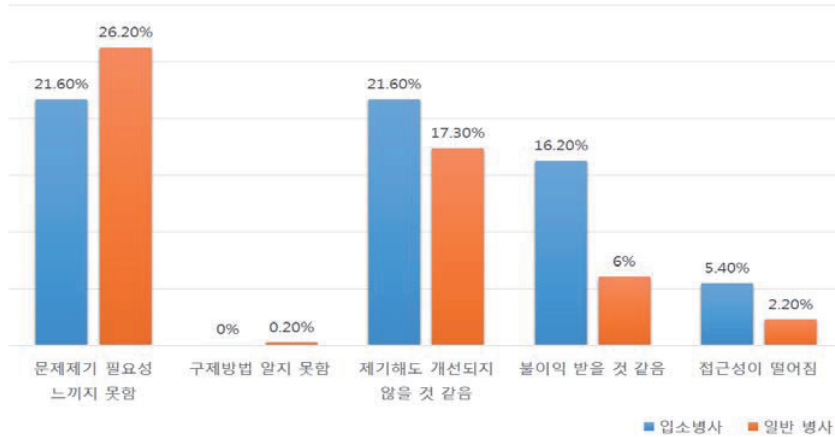
	캠프 입소병사	캠프 도우미	캠프 간부	일반 병사	일반 간부
지휘관 및 주임원사	43.2%	38.9%	35.7%	62.2%	56.3%
인사부서	13.5%	5.6%	7.1%	16.6%	14.6%
감찰부서	18.9%	11.1%	42.9%	27.8%	29.2%
법무부서	27%	19.4%	28.6%	13.8%	29.2%
헌병	27%	27.8%	21.4%	19.5%	14.6%
국가인권위원회	37.8%	55.6%	35.7%	29.9%	35.4%
국민권익위원회	29.7%	11.1%	7.1%	16.1%	18.8%
외부NGO단체	13.5%	16.7%	14.3%	12.1%	4.2%
기타	-	-	7.1%	2.5%	4.2%

- 병사에게 인권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일반간부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해당 지휘계통으로 보고해 해결’(66%)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당 병사를 불러 해결’(34%)이었다. 또한, 복무부적응 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로는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처우개선’(65.2%)이 가장 많았으며, 복무부적응 병사 피해사항 처리시 어려운 점으로는 ‘요구사항(보직변경, 전역요구 등) 처리’(43.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대 기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30.4%)이었다.
-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5점, 4점 척도). 또한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징계 등 사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2점, 4점 척도).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소원수리, 상담, 헌병에 요청, 법무참모부에 요청 등 비사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아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2.7, 4점 척도),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1.9, 4점 척도). 알고 있는 인권침해 구제방법으로는 ‘소원수리(마음의 편지)’(89.2%) 및 ‘국방 헬프콜’(89.2%)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지휘관과의 대화’(78.4%),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상담’(73%),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51.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 인권침해 시 구제방법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이용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일반병사의 경우 ‘지휘관과의 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5] 인권침해 구제방법 경험유무

	캠프 입소병사	캠프 도우미	일반 병사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24.3%	27.8%	36.9%
지휘관과의대화	51.4%	47.2%	52.4%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29.7%	25%	28.6%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54.1%	16.7%	25.6%
부대인권상담관 상담	18.9%	-	8.5%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8.1%	5.6%	4.3%
국가인권위원회	-	-	1%
국민권익위원회	-	2.8%	0.4%
외부 NGO 단체	-	-	0.6%
국방신문고	2.7%	2.8%	0.6%
국방 헬프콜	16.2%	11.1%	1.9%

- 인권침해 시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병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문제제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및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에서 높게 응답하였다.



[그림 33] 구제방법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인권침해 구제방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병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지휘관과의 대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이 잘 운영된다고 인식하였다. 일반병사는 ‘지휘관과의 대화’가 잘 운영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외부 NGO 단체’, ‘국방신문고’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6] 인권침해 구제방법 운영실태

구제방법	운영실태 평균	
	일반병사	입소병사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3.1	2.8
지휘관과의 대화	3.2	2.8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2.9	2.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3.0	2.8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2.9	2.3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2.8	2.2
국가인권위원회	2.5	1.8
국민권익위원회	2.5	1.8
외부 NGO단체	2.5	1.6
국방신문고	2.7	1.6
국방헬프콜	2.9	2.4

-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누구와 상담할 것인지에 대해 캠프 입소병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육군의 경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66.7%), 해군의 경우 '주임원사'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41.7%).

[표 17] 인권침해 구제방법 불만족 이유

구제방법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유	
	일반병사	입소병사
1.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1순위: ① 2순위: ⑥	1순위: ②,③ 2순위: ①,⑤
2. 지휘관과의 대화	1순위: ⑤ 2순위: ①	1순위: ②,⑤,⑥,⑦
3.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1순위: ① 2순위: ②	1순위: ⑥ 2순위: ①,②,⑤
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1순위: ① 2순위: ②	1순위: ②
5.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1순위: ⑤ 2순위: ②	1순위: ②
6.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1순위: ⑤ 2순위: ①	1순위: ③,⑤ 2순위: ①,②,④
7. 국가인권위원회	1순위: ⑤ 2순위: ②	1순위: ③,⑤
8. 국민권익위원회	1순위: ⑤ 2순위: ②	1순위: ⑤
9. 외부 NGO단체	1순위: ⑤ 2순위: ②	1순위: ⑤
10. 국방신문고	1순위: ⑤ 2순위: ①②	1순위: ⑤
11. 국방헬프콜	1순위: ⑤ 2순위: ②	1순위: ①,②,③,④

*불만족 이유: ①비밀보장이 안됨 ②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불이익을 받음 ④부대 분위기 및 단결에 영향 줌 ⑤접근성이 떨어짐 ⑥간부들의 인식 부족 ⑦기타

- 병사의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중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도입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병사의 경우 ‘입대 전 병무청 심사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조사 필요’, ‘상급자의 태도 개선’, ‘병사의 고충 요구에 대한 수용’, ‘지휘관 및 간부를 통한 병영생활 언어문화에 대한 개선’, ‘자유 시간의 철저한 보장’, ‘병사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인권신고 시스템 구축’, ‘모병제 시행’, ‘구제방법 이용 시의 병사의 신원 보호 및 비밀보장 철저’, ‘인권교육 확대’, ‘병사와 간부 간 대화통로 확보’, ‘주기적인 상담제도’, ‘구제제도 접근성 향상’, ‘외부 인권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주기적인 개입’ 등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간부의 경우 ‘주기적인 인권교육’, ‘형식적인 교육 탈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기적 방문’, ‘구제방법에 대한 홍보’, ‘인권교육 확대’, ‘철저한 비밀보장’, ‘제도 악용 방지’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 인권을 핑계로 전출, 보직 변경, 전역 등을 요구하거나 인사조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사건 처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 결과 요약

(1) 대상별 결과 분석 요약

- 입소병사의 경우, 캠프 입소 전 겪은 인권침해로는 ‘없음’이 가장 높았고,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과 ‘휴식권’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는 인권침해로 인한 입소비율이 높긴 하지만, 설문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서적 취약성(수면장애, 우울, 분노조절 등)’이 입소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구제 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관/부서로는 ‘지휘관 및 주임원사’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장 높았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할 대상으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지휘관’, ‘주임원사’ 순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입소병사의 경우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지휘관 및 주임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구제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외부기관을 이용한 구제 경험은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구제제도에 비해 ‘낮은 접근성’을 이유로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즉, 입소병사는 외부기관이 인권침해 구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낮은 인식’과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일반병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도우미 병사의 경우, 병사의 인권에 취약한 부분으로는 ‘월급’, ‘휴식권 미보장’이 높았으며, 인권침해 구제 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관/부서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지휘관 및 주임원사’로 보고하였다. 또한, 경험해 본 구제제도로는 ‘지휘관과의 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상담’, ‘지휘관과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캠프 운영 간부의 경우,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개선되었다’로 거의 대부분이 응답하였지만, 면담에서는 ‘인권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하며 인식변화와 효과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더 나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를 ‘주입식 교육이었음’,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캠프운영 간부는 복무부적응 병사문제가 부대에 꽤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일반 병사의 경우, 인권에 취약한 부분을 알아본 결과 ‘월급’, ‘휴식권 미보장’,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병사는 복무부적응 병사 문제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복무부적응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순으로 높았다.
- 일반 간부의 경우, 병사의 인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없다’에 대다수가 응답하였다. 또한, 간부가 생각하는 인권의 취약한 부분으로는 ‘월급’, ‘통신’, ‘내무시설’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부와 일반병사 모두 월급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동일하게 보고하였다. 또한, 병사가 군 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주된 이유로는 ‘비자발적 입대’, ‘선임병과의 갈등’, ‘성격 문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병사에게 이러한 인권문제가 생길 경우에 간부는 대부분 ‘해당 지휘계통으로 보고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접한 복무부적응 병사 유형으로는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 ‘잘은 실수,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병사’ 및 ‘태도불량 및 명령 불복종 하는 병사’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복무부적응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으로는 대부분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가 높았다.

(2) 대상간 비교 분석 요약

-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조사한 결과, 인권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여부에서 캠프 입소병사는 ‘변화없다’, 일반 병사 및 간부는 ‘개선되었다’고 가장 높게 보고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으로는 캠프 입소병사는 ‘국방부 등 상급부대’에, 일반병사 및 간부는 ‘지휘관’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병사의 취약한 인권에 대해서, 병사는 ‘월급’, ‘휴식권 미보장’,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 순으로, 간부는 ‘월급’, ‘내무시설’ 및 ‘통신’, ‘폭력’ 순으로 높게 보고하였다.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처우는 병사와 간부 모두 약간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무부적응 병사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병사와 간부 모두 ‘없음’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이외에 캠프 입소병사는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등 직접적 피해를, 일반병사 및 간부의 경우 ‘정서적 학대’ 등의 간접적 피해를 주로 보고하였다.

-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구제 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지휘관 및 주임원사’, ‘국가인권위원회’에 높게 응답하였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인권침해 구제 시 군 내/외부 기관의 적절한 균형과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권침해 구제방법 경험은 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이, 일반병사의 경우 ‘지휘관과의 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병사는 ‘문제제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다음으로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에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문제 제기 이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건전한 문제 제기에 뒤따르는 적절한 처리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2)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 실태

가) 대상별 결과분석

(1) 캠프 입소병사

- 그린캠프/블루캠프/병역심사관리대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으로는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의 어려움’(51.4%), ‘실 공간이 부족함’ 및 ‘전화기 등과 같은 편의시설 부족’(45.9%)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이 부족함’(37.8%), ‘고민이나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한 경험이 있음’ 및 ‘계급과 직책의 권위의식으로 인해 위압감을 느낌’(35.1%) 순이었다. 면담에서는 ‘전우조 활동의 불편함’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병사가 있었다. 이 외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 ‘강제적인 참여(선택 불가, 주말 진행)’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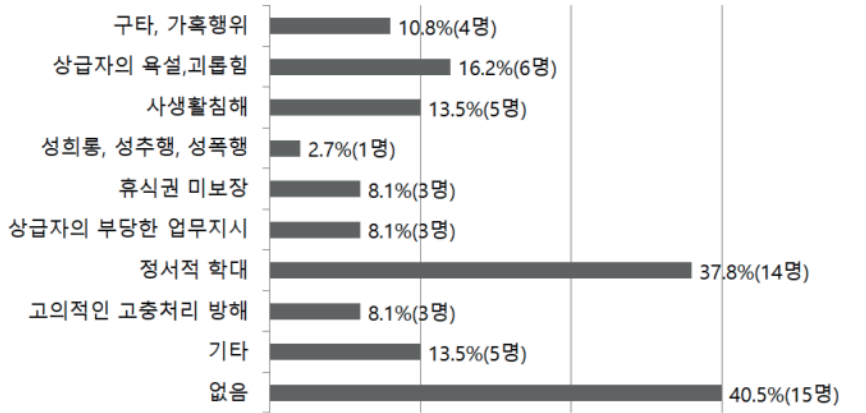
[표 18] 캠프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

인권침해 내용	그렇다
1. 원하지 않은 입소	2.7% (1명)
2. 입소이유, 캠프에 대한 설명 없이 입소	18.9% (7명)
3. 구타,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음	0 (0명)
4.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음	18.9% (7명)
5. 상급자의 괴롭힘과 질책을 당한 경험이 있음	10.8% (4명)
6. 상급자들의 개인적인 일을 지시 받은 적 있음	5.4% (2명)
7.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 지시, 간섭을 함	5.4% (2명)
8. 사생활(자유시간, 정비시간 등)이 보장되지 않음	18.9% (7명)
9. 생필품 보급이 부족함	13.5% (5명)
10.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이 어려움	51.4% (19명)
11. 실 공간이 부족함	45.9% (17명)

12. 개인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이 부족함	37.8% (14명)
13. 편의시설(화장실, 세면장 등) 부족함	18.9% (7명)
14. 의료시설이나 의료도구 지원이 부족함	16.2% (6명)
15. 입소병사에 대한 보호 관리가 잘 되지 않음	10.8% (4명)
16. 전화기 등과 같은 편의 시설이 부족함	45.9% (17명)
17. 구타, 가혹행위 및 폭언을 목격하거나 당해도 보고하지 않음.	8.1% (3명)
18. 고민이나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한 경험이 있음	35.1% (13명)
19. 계급과 직책의 권위의식으로 인해 위압감 느낌	35.1% (13명)

캠프 입소병사 총 37명 응답 단위: 퍼센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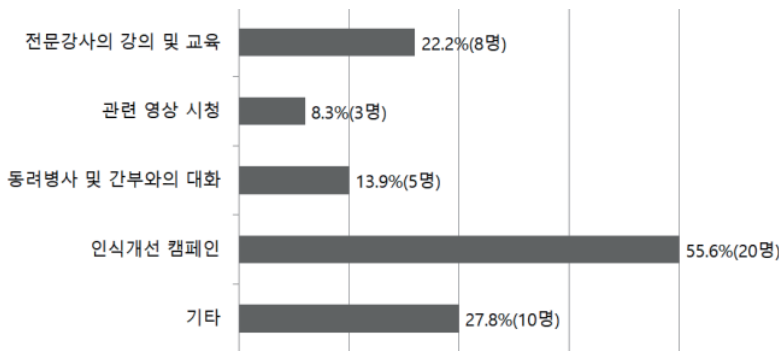
- 복무부적응 병사의 군대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도움/배려 병사 관리 제도’에 대해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2점, 5점 척도). 면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후임들의 무시·편견·안 좋은 시선, 낙인,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됨(부적응이 환경보다는 병사 개인의 문제임, 바뀌는 것이 없음 등), 부담감 등이 있었다.
- 그린캠프/블루캠프 제도에 대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6점, 5점 척도).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면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음’, ‘개인이 처한 문제를 이해해주지 못함’, ‘입소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전우조 생활의 불편함’, ‘미비한 치료 효과(개인의 의지 문제, 군 환경은 바뀌지 않음 등)’ 등이 있었다. 또한,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심신의 안정 및 고찰의 기회’, ‘휴식 보장’, ‘잘 갖춰진 상담 시스템’ 등이 있었다. 그린캠프/블루캠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면담을 통해 캠프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캠프에 대한 인식개선’, ‘캠프 내 개인상담 활성화’, ‘캠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입소 사유별 분리 운영’, ‘프로그램 변경’ 등으로 보고하였다.
- 그린/블루캠프, 병역심사관리대 복귀병사가 겪는 인권침해로는 ‘없음’ (40.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37.8%)였다.
 - 복귀병사의 경우에는 타 병사의 선입견이 심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나 아무런 인권침해를 겪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어 부대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캠프 입소병사 총 37명 다중응답문항 단위:퍼센트(명)

[그림 34] 캠프 복귀병사가 겪는 인권침해

- 복귀병사에 대한 해 부대에서의 처우가 어떠한지에 대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점, 4점 척도).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자대복귀 후 낙인’, ‘그린캠프에 대한 선입견 및 안 좋은 인식(예. 그린캠프는 전역 하러 가는 곳, 정신이상자들이 가는 곳 등)’ 등으로 면담에서 보고하였다.
- 복귀병사에 대한 차별, 편견, 낙인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인식개선 캠페인’(55.6%)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 외의 해소방법으로 ‘캠프에 대한 교육’, ‘비밀 보장’, ‘인권교육에 포함’, ‘타 부대로의 전출’ 등을 면담을 통해 보고하였다.



캠프 입소병사 총 36명 다중응답문항 단위:퍼센트(명)
 *무응답: 1명

[그림 35]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 해소를 위한 방법

(2) 캠프 도우미병사

- 그린, 블루캠프/병역심사관리대 내에서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험을 알아본 결과 ‘개인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이 부족함(44.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상급자들의 개인적인 일을 지시받은 적 있음(19.4%)’, ‘과도한 징계를 받더라도 항소하기 쉽지 않음(19.4%)’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 추가적으로 면담을 통해 그린캠프 내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평균 8.6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일반부대에 비해 뚜렷한 인권침해 없음’, ‘인권보장 노력’, ‘쾌적한 생활환경’ 등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5점 미만의 점수를 준 병사는 그 이유로 ‘전우조 활동’, ‘간부의 통제’, ‘편의시설 이용제한’ 등으로 응답하였다.

[표 19] 캠프 내에서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험

인권침해 내용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구타,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음	11.1% (4명)	88.9% (32명)
2.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음	-	100% (36명)
3. 상급자의 괴롭힘과 질책을 당한 경험이 있음	5.6% (2명)	94.4% (34명)
4. 상급자들의 개인적인 일을 지시 받은 적 있음	25% (9명)	75% (27명)
5.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 지시, 간섭을 함	19.4% (7명)	80.6% (29명)
6. 사생활(자유시간, 정비시간 등)이 보장되지 않음	25% (9명)	75% (27명)
7.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이 어려움	25% (9명)	75% (27명)
8. 마땅히 쉬 만한 곳이 없음	8.3% (3명)	91.7% (33명)
9. 개인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이 부족함	44.4% (16명)	55.6% (20명)
10. 편의시설(화장실, 세면장 등) 부족함	5.6% (2명)	94.4% (34명)
11. 의료시설이나 의료도구 지원이 부족함	5.6% (2명)	94.4% (34명)
12. 입소병사에 대한 보호 관리가 잘 되지 않음	5.6% (2명)	94.4% (34명)
13. 전화기 등과 같은 편의 시설이 부족함	13.9% (5명)	86.1% (31명)
14. 구타, 가혹행위, 폭언을 목격해도 보고하지 않은 적 있음	2.8% (1명)	97.2% (35명)
15. 과도한 징계를 받더라도 항소하기 쉽지 않음	19.4% (7명)	80.6% (29명)

캠프 도우미병사 총 36명 응답 단위: 퍼센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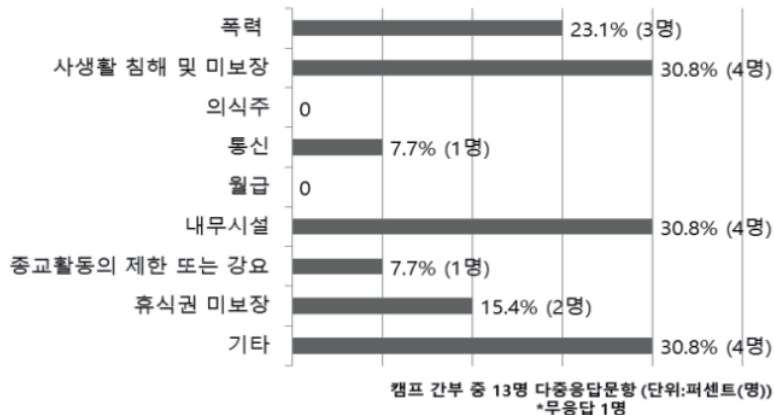
- 입소병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던 경험유무를 총 12명의 도우미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83.3%가 사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우미병사가 사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른 이유로는 ‘입소병사에 대한 지식부족’,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또한, 그린캠프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편의시설 확충’, ‘사생활 보장필요’, ‘휴식권 보장’ 등을 보고하였다.

(3) 캠프 운영 간부

- 현재 캠프 입소 병사의 인권에 대한 처우를 알아본 결과, 처우는 대체로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평균 3.57, 4점 척도). 또한, 캠프 입소병사에게 인권의 문제가 ‘없다’에 91.7%가 응답하였고 ‘있다’에 8.3%가 응답하였다. 또한, 캠프 입소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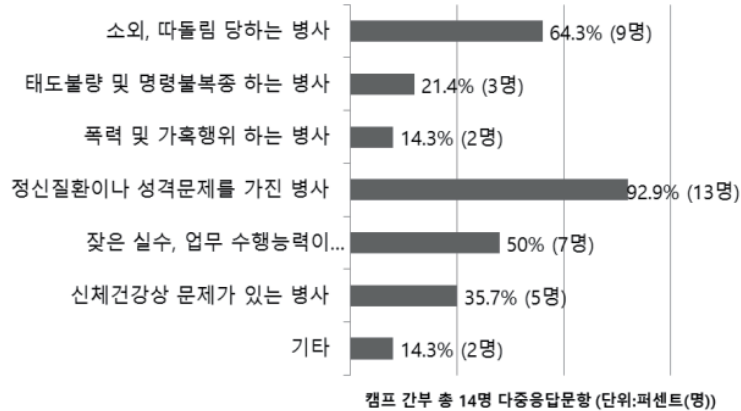
에 대한 처우에 대해 면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평균 7점(10점 만점)으로 보고했다. 4점 미만으로 응답한 간부의 의견으로는 ‘전우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무분별한 입소권유’ 등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간부가 인권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던 것과는 달리,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캠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로 ‘낙인효과’, ‘전우조 활동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입소병사에 대한 비밀보장의 어려움(명찰, 유니폼, 분리되지 않은 건물)’ 등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간부가 받는 인권침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캠프 간부로서 타 부대들보다 통제가 있음’, ‘더 높은 직급의 간부의 욕설’ 등으로 나타났다.

- 입소병사에게 인권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해당 지휘계통으로 보고해 해결’(7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당 병사를 불러 해결’(21.4%)이었다[부록 참고-그림 32].
- 입소병사의 인권 중 취약하다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30.8%), ‘내무시설’(3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폭력(23.1%)’, ‘휴식권 미보장’(20.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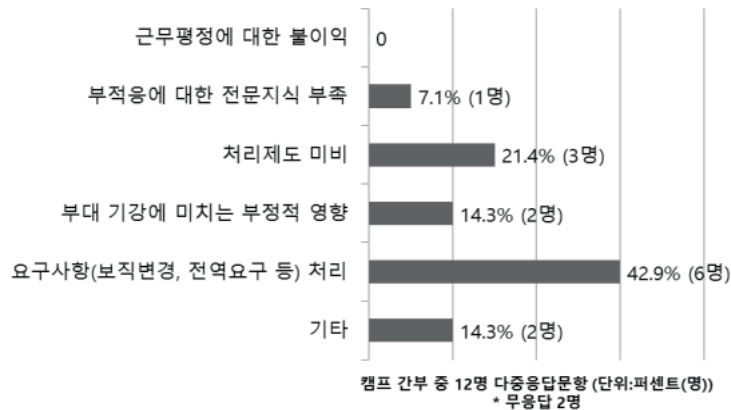
[그림 36] 입소 병사 인권에 취약하다 생각하는 부분

- 입소병사가 캠프에 오게 되는 주된 이유로는 ‘선임병과의 갈등’, ‘가정문제’, ‘성격 문제가 가장 높았으며(76.9%), 그 다음으로는 ‘비자발적 입대’(38.5%)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부록 참고-그림 33].
- 주로 접한 캠프 입소 병사의 유형으로는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92.9%)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외, 따돌림 당하는 병사’(64.3%), ‘잘은 실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50%)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7] 주로 접한 캠프 입소 병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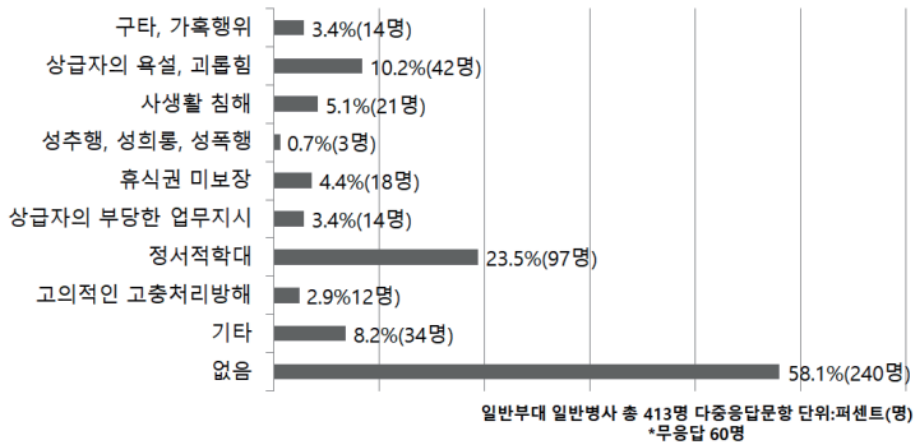
- 캠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소병사 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별로 그렇지 않다’ (평균 1.92, 4점 척도)고 보고하였다.
- 캠프 입소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으로는 ‘구타, 가혹행위’(28.6%)가 가장 높았으며,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사생활침해’, ‘성추행’, ‘휴식권미보장’, ‘정서적 학대’가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하였다(21.4%)[부록 참고-그림 34].
- 입소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식으로는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처우개선’(35.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황 파악 후 가해자 처벌’(28.6%)이 높았다[부록 참고-그림 35].
- 피해사항 처리 시 어려운 점은 ‘요구사항(보직변경, 전역요구 등)처리’(42.9%)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처리제도 미비’(21.4%), ‘부대기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림 38] 피해사항 처리 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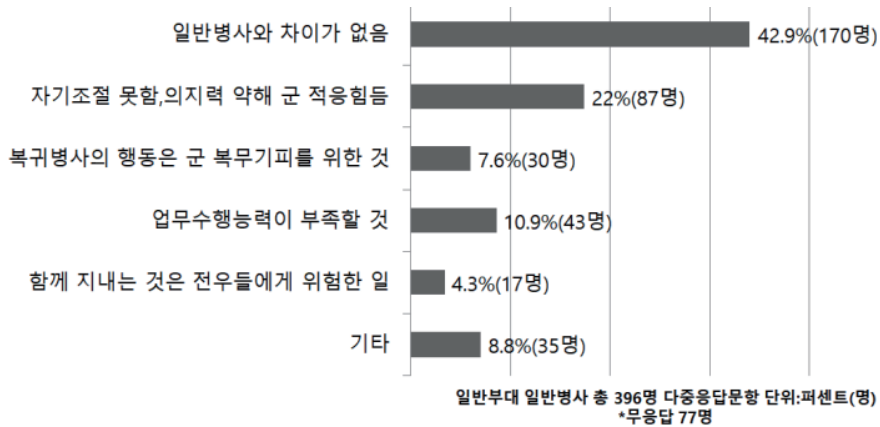
(4) 일반병사

- 그린/블루캠프/병역심사관리대 복귀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음’(58.1%)이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23.5%),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10.2%)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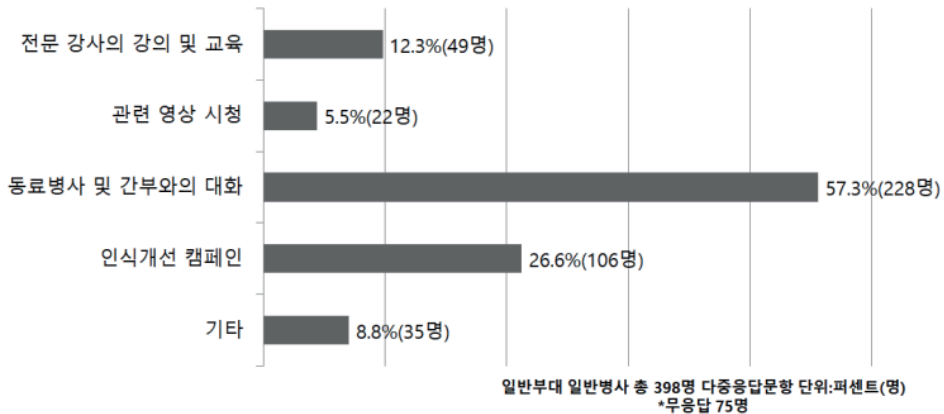
[그림 39] 캠프 복귀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 그린/블루캠프/병역심사관리대 복귀병사의 처우에 대해 어떠한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약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4, 4점 척도). 또한, 면담을 통해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를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좋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복귀 후 부적응’, ‘타 병사의 무시’, ‘안 좋은 인식’, ‘캠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조직분위기 저하’ 등이 있었다. 반면에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배려를 받음’, ‘복귀병사에 대해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함’, ‘복귀병사에 맞는 조치를 잘 취함’ 등이 있었다.
- 그린/블루캠프/병역심사관리대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복귀병사는 일반병사와 차이가 없음’(42.9%)이 가장 많았고, ‘복귀병사는 자기조절을 못하고 의지력이 약해서 군 적응이 힘들 것’(22%), ‘복귀병사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것’(10.9%)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0] 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

-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동료병사 및 간부와의 대화’(57.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또한 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를 물은 개방형 질문에서, ‘인식이 좋지 않다’, ‘복귀병사는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병사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만 주며, 업무 능력이 떨어져도 간부가 더욱 배려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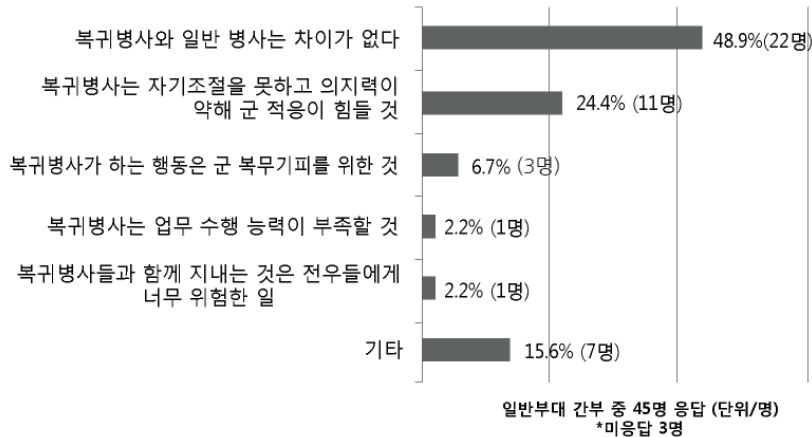


[그림 41] 캠프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해소 위한 방법

- 병사의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해 현재 시행 방법 중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로 도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구제방법 이용 시의 병사의 신원 보호 및 비밀보장 철저’, ‘인권교육 확대’, ‘병사와 간부 간 대화통로 확보’, ‘주기적인 상담제도’, ‘구제제도 접근성 향상’, ‘외부 인권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주기적인 개입’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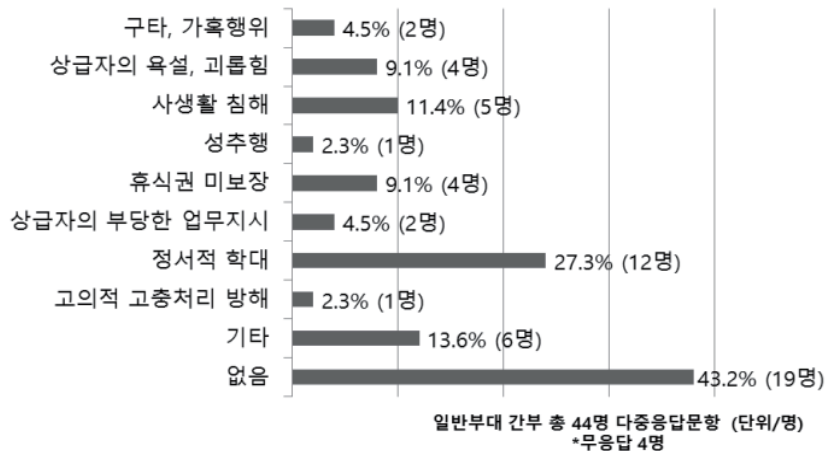
(5) 일반 간부

- 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으로는 ‘복귀병사와 일반병사는 차이가 없다’(48.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복귀병사는 자기조절을 못하고 의지력이 약해 군 적응이 힘들 것’(24.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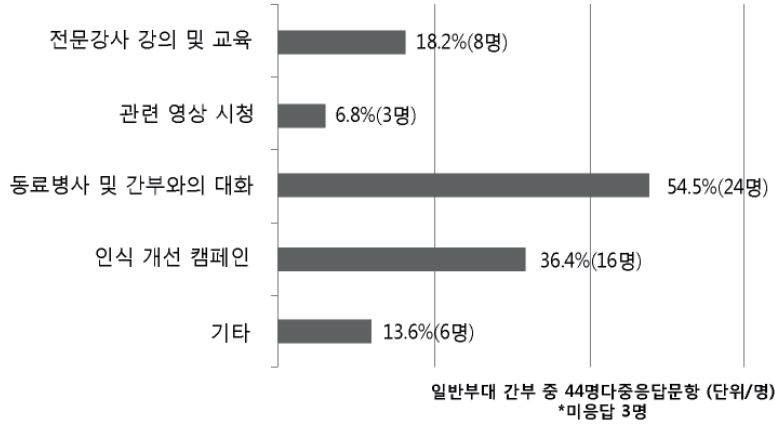
[그림 42] 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

- 또한 복귀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으로는 ‘없음’(43.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27.3%)이었다



[그림 43] 복귀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동료병사 및 간부와의 대화’(54.5%)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36.4%)이었다.



[그림 44] 캠프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 해소를 위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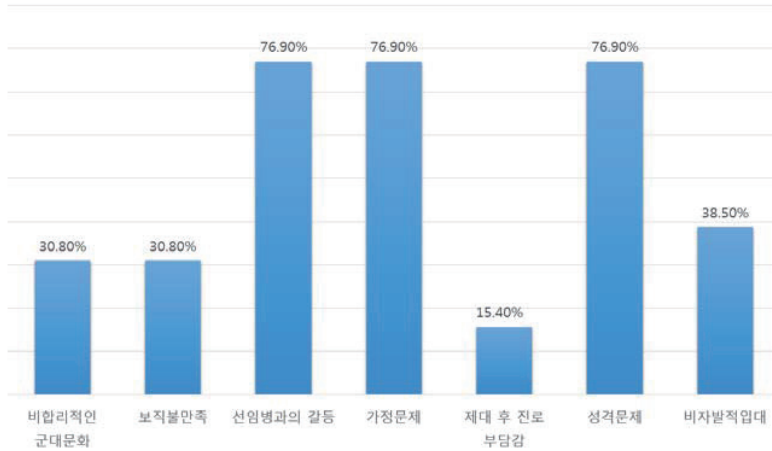
나) 대상 간 비교분석

[표 20] 캠프 내 인권 실태 문항별 응답 대상

범주	세부질문문항	캠프 간부	캠프 도우미	캠프 입소	일반 간부	일반 일반
인권침해 실태	캠프에 입소하는 주된 이유	■				
	입소병사의 취약한 인권	■				
	캠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입소병사의 인권침해 불가피 여부	■				
	입소병사의 인권에 대한 처우	■				
	입소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				
	캠프 내 인적 인권침해 경험/목적		■	■		
	캠프 내 비 인적 인권침해 경험/목적		■	■		
	복귀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	■	■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				■	■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			■		■
인권침해 구제 (대책)	인권침해 시 효과적인 구제 방법			■		
	병사에게 피해사항 발생 시 대처방법	■			■	
	병사의 피해사항 처리 시 어려움	■			■	
	병사 인권관련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			■	
	편견해소 방법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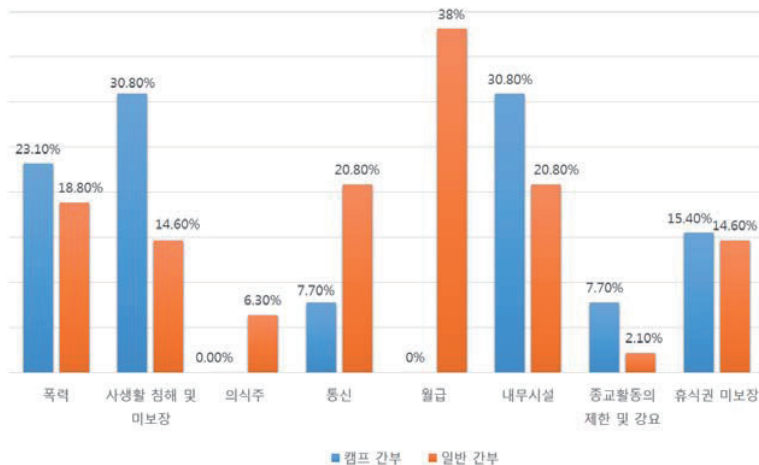
(1) 인권침해 실태

- 캠프입소의 주된 이유에 대해 그린/블루캠프 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임병과의 갈등’, ‘가정문제’, ‘성격문제’에 높게 응답하였다. 그린/블루캠프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그린캠프 간부의 경우 ‘선임병과의 갈등’(83.8%), ‘성격문제’(66.7%) 및 ‘가정문제’(66.7%)가 높게 나타났다. 블루캠프 간부의 경우에는 ‘선임병과의 갈등’(100%) 및 ‘가정문제’(100%), ‘성격문제’(66.7%) 및 ‘보직 불만족’(66.7%)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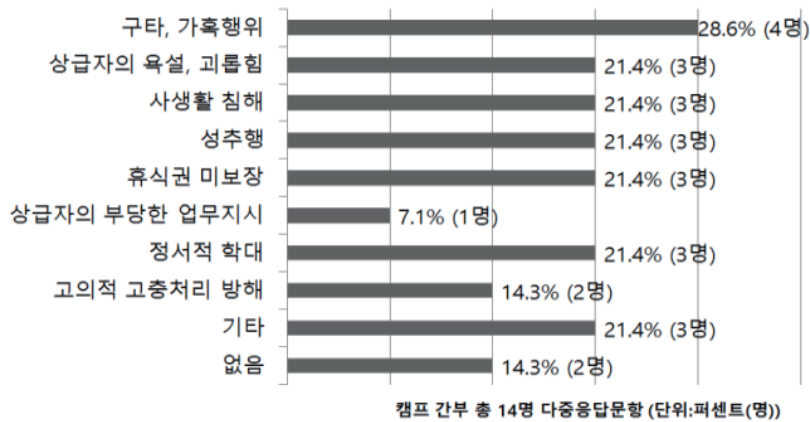
[그림 45] 캠프 입소의 주된 이유

- 캠프 입소병사의 취약한 인권에 대해 캠프 간부에게 알아본 결과,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과 ‘내무시설’에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에 일반병사의 취약한 인권에 대해 일반간부에게 알아본 결과, ‘월급’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내무 시설’ 및 ‘통신’에 높게 응답하였다.



[그림 46] 캠프 입소병사와 일반병사의 취약한 인권

- 그린/블루캠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소병사의 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캠프 간부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1.92, 4점 척도).
- 현재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의 인권에 대한 처우를 캠프 간부에게 알아본 결과 처우가 꽤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57, 4점 척도).
- 그린/블루캠프 입소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에 대해 캠프 간부에게 알아본 결과, ‘구타, 가혹행위’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린/블루캠프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그린캠프 간부의 경우 ‘휴식권 미보장’(50%), ‘구타, 가혹행위’(33.3%) 및 ‘성추행’(33.3%)가 높게 나타났다. 블루캠프 간부의 경우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66.7%) 및 ‘정서적 학대’(66.7%), ‘구타, 가혹행위’(33.3%) 및 ‘고의적인 고충처리 방해’(33.3%)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 캠프 입소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 그린/블루캠프 내 인적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 캠프 입소병사에게 알아본 결과, 그린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고민이나 건의사항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 상담을 포기’(42.9%), ‘계급과 직책의 권위의식으로 인해 위압감을 느낌’(33.3%)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에, 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캠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입소하게 됨’(41.7%) 및 ‘계급과 직책의 권위의식으로 인해 위압감을 느낌’(41.7%)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면담에서는 ‘전우조 활동의 불편함’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입소병사가 전우조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 ‘강제적인 참여(선택 불가, 주말 진행)’ 등이 있었다. 그린/블루캠프 내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험에 대해 캠프 도우미병사에게 알아본 결과, ‘상급자들이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지시’, ‘자유시간, 정비시간, 자기계발 시간 등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음’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21] 캠프 내 인권침해 경험(목적)_인적 침해요인

	내용	캠프 입소병사	캠프 도우미 병사	
인 적 침 해 요 인	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소	2.7%	해당 없음	
	제대로 된 설명 듣지 못하고 입소	18.9%		
	구타 및 가혹행위 하는 사람 있음	0%	※ 좌측의 내용을 목격한 경험이 있음	11.1%
	욕설 많이 하는 사람 있음	18.9%		0%
	상급자에 고충보고 시 괴롭힘, 질책	10.8%		5.6%
	상급자가 개인적일 지시	5.4%		25%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 지시, 간섭	5.4%		19.4%
	자유시간, 자기계발 등 사생활 미보장	18.9%		25%
	입소병사 보호관리 잘 되지 않음	10.8%		5.6%
	구타, 가혹행위, 폭언 당해도 미보고	8.1%		2.8%
	고민, 건의 듣지 않을 것 같아 상담 포기	35.1%		해당 없음
	계급, 직책 권위식으로 위압감 느낌	35.1%		
	과도한 징계 받아도 항소 어려움			19.4%

- 그린/블루캠프 내 비인적 인권침해 경험을 캠프 입소병사에게 알아본 결과, 그린 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38.5%), ‘그린 캠프 내에 마땅히 쉴 곳이 없음(휴식시설 부족)’(33.3%)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에, 블루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전화기 등과 같은 편의시설의 부족(통신 시설 부족)’(83.3%),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66.7%)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그린/블루캠프 내 인권침해 목적을 캠프 도우미병사에게 알아본 결과, ‘개인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 시설의 부족(운동시설 부족)’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에 높게 응답하였다.

[표 22] 캠프 내 인권침해 경험(목적)_비인적 침해요인

	내용	캠프 입소병사	캠프 도우미 병사
비 인 적 침 해 요 인	생필품(보급품) 보급이 부족함	13.5%	해당없음
	여가, 취미 활동 하기에 어려움	51.4%	25%
	캠프 내 휴식 시설 부족	45.9%	8.3%
	캠프 내 운동 시설 부족	37.8%	44.4%
	캠프 내 편의 시설(화장실, 세면장 등) 부족	18.9%	5.6%
	캠프 내 의료 시설, 도구 부족	16.2%	5.6%
	캠프 내 통신 시설(전화기) 부족	45.9%	13.9%

- 그린/블루캠프 복귀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캠프 입소병사, 일반병사, 일반간부 모두 ‘없음’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로 응답하였다.

[표 23] 캠프 복귀병사가 겪는 인권침해(피해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
캠프 입소병사	없음 (40.5%)	정서적 학대 (37.8%)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16.2%)
일반 병사	없음 (58.1%)	정서적 학대 (23.5%)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10.2%)
일반 간부	없음 (43.2%)	정서적 학대 (27.3%)	기타 (13.6%)

- 그린/블루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병사와 간부 모두 ‘복귀병사와 일반병사는 차이가 없다’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복귀병사는 자기조절을 못하고 의지력이 약해 군 적응이 힘들 것이다’에 높게 응답하였다. 복귀병사의 경우 면담에서 타 병사의 선입견이 심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나 아무런 인권침해를 겪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어 부대마다 분위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

	1순위	2순위
일반 병사	복귀병사와 일반병사는 차이가 없다 (42.9%)	복귀병사는 자기조절을 못하고 의지력이 약해 군 적응이 힘들 것이다 (22%)
일반 간부	복귀병사와 일반병사는 차이가 없다 (48.9%)	복귀병사는 자기조절을 못하고 의지력이 약해 군 적응이 힘들 것이다 (24.4%)

- 그린/블루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 캠프 입소병사는 별로 좋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평균 2, 4점 척도). 반면에, 일반병사는 약간 좋은 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64, 4점 척도).

(2) 인권침해 구제(대책)

- 군 내에서 인권침해 경험 시 어떤 구제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캠프 입소병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군 내 사법제도’, ‘국방 헬프콜’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5] 군 내 인권침해 경험 시 효과적인 구제방법

구제방법	효과적이다
1. 군 내 사법제도	51.4% (19명)
2.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40.5% (15명)
3. 지휘관과의 대화	48.6% (18명)
4.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27% (10명)
5. 지휘관 및 상급자에게 보고	45.9% (17명)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70.3% (26명)
7.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54.1% (20명)
8. 외부 NGO 단체에 진정	45.9% (17명)
9. 국방 신문고 이용	27% (10명)
10. 국방 헬프콜	51.4% (19명)
1. 부모님, 친지, 친구에게 알림	48.6% (18명)

그린캠프 입소병사 총 37명 응답 단위: 퍼센트(명)
 * 1,6,7,8,9,10,11번: 무응답 제외 값

- 자신이 지휘하는 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간부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처우개선’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황 파악 후 가해자 처벌’에 높게 응답하였다. 병사의 피해사항 처리 시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병사 요구 사항(보직변경, 전역요구 등)처리’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26] 입소병사/ 복무부적응 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

	1순위	2순위
캠프 간부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처우개선 (35.7%)	피해자의 피해상황 파악 후 가해자 처벌 (28.6%)
일반 간부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처우개선 (65.2%)	피해자의 피해상황 파악 후 가해자 처벌 (21.7%)

[표 27] 입소병사/ 복무부적응 병사 피해사항 처리 시의 어려움

	1순위	2순위
캠프 간부	요구사항 (보직변경, 전역 요구 등) 처리 (42.9%)	처리제도 미비 (21.4%)
일반 간부	요구사항 (보직변경, 전역 요구 등) 처리 (43.5%)	부대 기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0.4%)

- 자신이 지휘하는 병사에게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간부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해당 지휘계통으로 보고해 해결’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해당 병사를 불러 해결’에 높게 응답하였다.

[표 28] 입소병사 (지휘병사)에게 인권 관련 문제가 생길 시 해결 방법

	1순위	2순위
캠프 간부	해당 지휘계통으로 보고해 해결 (78.6%)	해당 병사를 불러 해결 (21.4%)
일반 간부	해당 지휘계통으로 보고해 해결 (66%)	해당 병사를 불러 해결 (34%)

- 그린/블루캠프 복귀병사가 받고 있는 차별, 편견,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인식개선 캠페인’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에, 일반병사와 일반간부의 경우 ‘동료병사 및 간부와의 대화’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29] 캠프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 해소를 위한 방법

	1순위	2순위
캠프 입소병사	인식 개선 캠페인 (55.6%)	기타 (27.8%)
일반 병사	동료병사 및 간부와의 대화 (57.3%)	인식 개선 캠페인 (26.6%)
일반 간부	동료병사 및 간부와의 대화 (54.5%)	인식 개선 캠페인 (36.4%)

다) 결과 요약

(1) 대상별 결과 분석 요약

- 입소병사의 경우 그린/블루 캠프에서 겪은 인적 인권침해 경험으로는 ‘고민, 건의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상담 포기’, ‘계급, 직책 권위의식으로 위압감을 느낌’이 높게 나타났다. 비인적 인권침해 경험으로는 ‘여가, 취미 활동하기에 어려움’, ‘캠프 내 휴식시설 및 통신시설 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면담에서 ‘전우조 활동의 불편함’과 ‘프로그램에의 강제적인 참여’ 등도 보고하였다.
- 그린/블루캠프 제도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음’, ‘개인이 처한 문제를 이해해주지 못함’, ‘입소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전우조 생활의 불편함’, ‘미비한 치료효과’ 등으로 나타났다.
- 캠프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캠프에 대한 인식개선’, ‘캠프 내 개인상담 활성화’, ‘캠프 홍보 및 교육’, ‘입소 사유별 분리 운영’, ‘프로그램 변경’ 등을 보고하였다. 복귀병사가 겪는 인권침해로는 ‘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인권침해가 ‘있다’는 응답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면담에서 복귀병사 인권침해에 대해 ‘타 병사의 선입견이 심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으나 ‘아무런 침해도 겪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어 각 부대 분위기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 별로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는 ‘자대복귀 후 낙인’, ‘그린캠프에 대한 선입견 및 안 좋은 인식’ 등을 보고하였다.
- 도우미 병사의 경우 그린/블루캠프에서 겪은 인적 인권침해 목격 경험으로는 ‘상급자가 개인적 일 지시’, ‘자유시간, 자기계발 등 사생활 미보장’이 높게 나타났다. 비인적 인권침해 목격 경험으로는 ‘캠프 내 운동시설 부족’, ‘여가, 취미활동하기에 어려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면담을 통해 캠프 내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평균 8.6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5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준 병사는 그 이유로 ‘전우조 활동’, ‘간부의 통제’, ‘편의시설 이용제한’ 등을 보고하였다.
- 캠프 운영 간부는 입소병사의 인권에 대한 처우에 대해 ‘대체로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낮은 점수를 준 간부에게 면담을 통해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낙인효과’, ‘전우조 활동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입소병사에 대한 비밀보장의 어려움’ 등으로 보고하였다. 입소병사의 인권 중 취약하다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 ‘내무시설’, ‘폭력’, ‘휴식권 미보장’으로 나타났다. 입소병사가 캠프에 오게 되는 주된 이유로는 ‘선임병과의 갈등’, ‘가정문제’, ‘성격문제’가 가장 많았고 주로 접한 캠프 입소병사의 유형으로는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가 가장 높았다.

- 일반병사가 생각하는 복귀병사의 피해사항으로는 ‘없음’이 가장 많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복귀병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약간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처우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면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복귀 후 부적응’, ‘타 병사의 무시’, ‘안 좋은 인식’, ‘캠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조직 분위기 저하’ 등이 있었다. 복귀병사에 대하여 ‘복귀병사는 일반병사와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인식)를 물어본 개방형 질문에서는 ‘인식이 좋지 않다’, ‘복귀병사는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병사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만 주며, 업무 능력이 떨어져도 간부가 더욱 배려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 일반 간부의 경우 ‘복귀병사와 일반병사는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귀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으로는 ‘없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로 높게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일반 간부는 캠프에서 복귀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히 인권침해를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대상간 비교 분석 요약

-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소병사의 취약한 인권에 대해 캠프 간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에, 일반병사의 취약한 인권에 대해 일반 간부의 경우 ‘월급’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즉 본인이 지휘하는 병사의 특성에 따라 캠프 간부는 병사의 개인적 측면에, 일반 간부는 제도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보고하였다. 입소병사가 캠프에서 겪은 인적 인권침해 경험으로는 그린캠프의 경우 ‘고민, 건의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상담 포기’, ‘계급, 직책의 권위의식으로 인해 위압감을 느낌’ 순으로, 블루캠프의 경우 ‘캠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입소하게 됨’, ‘계급, 직책의 권위의식으로 인해 위압감을 느낌’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일반병사와 간부 모두 ‘복귀병사는 일반병사와 차이가 없다’에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에서 입소병사는 처우가 별로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일반병사는 약간 좋은 편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복귀병사가 겪는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입소병사, 일반병사 및 간부 모두 ‘없음’에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에 응답하였다.
- 인권침해 구제에 대해 조사한 바로는 지휘하는 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에 대해 간부는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처우개선’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상황 파악 후 가해자 처벌’에 응답하였다. 캠프 복귀병사가 받고 있는 차별, 편견,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캠프 입소병사의 경우 ‘인식개선 캠페인’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일반병사와 일반간부의 경우 ‘동료병사 및 간부와의 대화’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라) 입소사유별 유형화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2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 인성교육, 치료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미술치료, 대인관계치료, 웃음치료, 스피치 교육 등 부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준 프로그램이 2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대사정, 입소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그 이상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병사가 존재한다. 한재원(2016)은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및 편성의 가장 큰 문제점을 어떤 유형의 대상자라도 통합적으로 그룹이 편성되어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구분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입소하는 인원의 입소 사유를 정서적 문제를 가진 병사, 성격 문제를 가진 병사, 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병사, 정신과적 문제는 없지만 사회성이 저하되어 있는 병사 등으로 유형화하여 그들의 적응력 향상에 초점을 둔 그룹별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병사는 각자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부적응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부적응을 다루는 심리치료에서는 표면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보이더라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치료계획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입소자의 개별 입소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군 부적응’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재원(2016)의 연구에서는 그린캠프 입소자의 입소사유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그룹을 편성하여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집단분류, 융통성이 보장된 교육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입소자 유형을 기준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살우려자 집단프로그램 표준모델, 복무 부적응자 집단 프로그램 표준모델,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자 집단 프로그램 표준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육군본부정책보고서(그린캠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2017)에서도 병사의 입소유형을 구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의 입소인원, 운영간부, 전문 인력 등의 규모와 시설, 환경 및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병사의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입소병사의 만족도를 파악했을 때, 약 16%(N=12)의 병사가 입소 사유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외의 인원들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야외활동, 연극 관람 등의 프로그램에 만족하였다. 육군본부정책보고서(그린캠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2017)에서는 개별 병사의 부적응 수준을 고려하여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병사의 경우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벼운 부적응을 보이는 병사의 경우에는 군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치유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은 병사가 치유 후 자대로 복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대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반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개선방안



4.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개선방안

육군의 그린캠프나 해군의 블루캠프와 같은 군복무 부적응 병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운영주체나 형식이 변모하긴 했으나 그 시작은 2003년 11월 육군에서 비전캠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부터이다. 이는 군 인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에는 군복무 부적응을 의지가 부족한 취약한 개인의 문제로 낙인찍거나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군기강 문란으로 보고 처벌적으로 강압하던 폭력적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개인의 적응기능 및 능력의 차이를 수용하고 통제적, 강압적, 폭력적, 권위적인 군문화의 특수성이 병사의 군 복무 부적응의 원인일 수 있음을 고려한 인도적 방식으로 발전되어 감을 의미한다. 복무 부적응은 인권침해적 요소로 인해 직접 발생하기도 하고 병사의 개인내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그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병사의 복무 부적응을 군환경의 특수성에만 기인한 문제로 보는 편향된 시각을 지양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징병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유입된 심리적 취약성이 심한 병사나 정신질환이 있는 병사의 치료적 서비스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과도기에 있는 병사에게 군조직에서의 경험은 일반사회의 적응으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복무 전 심리적 취약성을 갖고 있었던 병사라도 인권중심적인 군문화에서 배려와 존중을 경험한다면 전역 후 사회구성원으로 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부적응자로 무시되고 낙인되고 고립되고 배제된다면 일반사회에서의 적응에서도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군문화에서 인권적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적, 국가적 측면에서도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군 복무 부적응병사를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인 그린캠프나 블루캠프의 주된 운영목적은 교육과 치유를 통한 복무적응기능 향상으로 병사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목표추구 모두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캠프 입소병사와 도우미병사, 캠프 운영자에게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캠프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은 상이하였지만, 현존하는 형태로 복무 부적응병사를 위한 캠프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캠프의 무용론을 주장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아래에 기술한 인권개선방안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술한 것이다.

가. 입소전 인권침해경험 및 개선방안

입소병사의 설문을 토대로 입소전 인권침해 경험을 살펴보면 상급자의 욕설이나 괴롭힘이 32.4%로 가장 많았고 휴식권 미보장이나 정서적 학대도 21.6%에 이른다. 응답자의 48.8%는 인권침해 없음으로 응답하여 캠프 입소자의 경우 외적 환경보다는 개인 내적 어려움이 입소원인인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인격모독이나 자존감에 손상을

주는 비인권적인 대우는 여전히 만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권교육과 지휘관의 모범적인 역할 및 병사의 상호존중적인 행동에 대한 강화와 비인격적인 행동에 대한 적절한 처벌 등이 필요할 것이다.

입소병사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입소전 인권침해 경험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40%에서 허리통증 등의 신체적인 불편감이 부적응 심화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때문에 캠프에 입소한 병사는 신체적 통증으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부대원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부대원에게 외면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단계를 경험하였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리적 고통이 심화되면서 지휘관 면담 등을 통해 캠프에 입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요구(담배를 계속 달라고 하거나 불 때 마다 인사강요, 장난을 빙자한 사소한 언어폭력의 반복 등),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질책, 하루 16시간씩 이어지는 과중한 노동에 따른 체력소진으로 인한 적응력 약화 등이 캠프 입소의 원인으로 응답되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신체적인 구타나 욕설, 괴롭힘 등 심각한 인권침해 양상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접적인 상해의 증거나 질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휘관이 병사의 신체적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병사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병사의 건강상의 호소에 보다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미삼아 하는 사소한 말장난이나 업무질책이 한 개인에게는 군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행동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병사의 인권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을 경험한 병사의 반응을 보면 “형식적인 교육이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정도였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인권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인권침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라는 응답도 많았고, 일반병사의 60% 이상은 자신의 인권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인 인권교육은 오히려 병사와 지휘관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적 측면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이 구축되고 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너무 포괄적인 인권교육은 병사의 군생활에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군내에서 실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병사가 인권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규모 집단모임 등을 통해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

나. 입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입소전 캠프에 대한 사전정보나 충분한 이해없이 지휘관의 권고를 통해 입소하게 된

병사는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갖고 캠프에 입소할 수 있다. 조사결과 원하지 않는 입소였다고 답한 병사는 2.7%로 매우 낮은 수치였고 캠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입소한 병사도 18.9%로 입소에 대한 강제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발적이기 보다는 지휘관이나 병영생활상담관의 권고에 동의한 입소였고 입소전 캠프의 운영방식이나 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들어온 병사는 없었다. 이는 추천 지휘관이나 병영생활상담관이 그린캠프나 블루캠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병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할 때 그린캠프나 블루캠프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지휘관에게는 캠프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홍보책자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입소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로는 절차 진행에 따른 시간소요로 부적응병사가 어정쩡하게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것이다. 입소절차의 간소화와 수시 입소의 활성화를 통해 즉각적인 휴식이나 부대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한 병사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군기피를 목적으로 한 병사가 일부 존재할 수 있고 캠프가 이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병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캠프의 운영목적과 필요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부대에서 지휘관이나 동료병사가 작은 도움과 배려만 주어도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병사를 무분별하게 캠프에 입소하도록 조치하는 것 또한 입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일 것이다. 신체적으로 병약한 병사가 업무상 과도한 노동에 처해지거나 운동신경이 둔한 병사가 기민한 처리가 필요한 일에 배치되는 것, 사회성이 부족한 병사가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부대에 배치되는 것 등은 업무미숙이나, 잦은 실수로 이어질 수 있고 심리적 위축, 불안, 무력감 등 정신과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휘관과 동료병사가 실수가 잦고 위축되어 있는 병사를 배려, 격려, 지지하여 일차적으로 기능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서도 적응기능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부적응병사를 위한 캠프에 입소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 캠프 입소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전우조로 짝을 지어 입소병사를 관리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로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담 결과 입소병사는 화장실이나 세면장까지 관리병사와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호소가 많았고 도우미병사도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 입소병사에게 자해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자해발생의 경우 관리소홀 등을 포함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자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병사나 정신증적인 상태가 동반된 병사는 관리보호가 확실히 보장되는 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군복무에 대한 강한 저항으로 폭력행동이 우려될 경우는 신속히 전역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입소병사는 프로그램 참여가 강제적인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프로그램 내용 또한 학교 특별활동처럼 유치하다는 의견과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참가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나타내었다. 특히 웃음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는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해소 없이 인위적으로 긍정정서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재활을 위한 작업치료를 연상시키는 종이접기나 만들기 혹은 탬버린이나 캐스터네츠 등을 활용한 음악치료 등은 복무 부적응으로 잔뜩 위축되어 있는 병사의 자존감을 더욱 낮게 하는 유치한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심리교육이나 심리검사를 활용한 자기분석’ 등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이다. 병사 대부분은 집단프로그램 참여보다는 개인상담의 기회를 갖기를 원하였고, 이 점에서 블루캠프 입소병사는 원할 때 수시로 병영생활상담관과 개인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나타내어 그린캠프 입소병사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입소병사의 증상이나 심각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에 대한 권고가 있는데 통상 캠프기간에 5-10명 가량 입소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맞춤형 프로그램이란 결국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전문가와의 1:1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소병사 대다수도 신뢰할 수 있는 상담관과 개별상담을 통해 내적 고통과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많았고, 개별상담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개별상담을 강화하고 입소병사가 거부감을 나타내는 “음악치료, 웃음치료, 만들기” 등의 집단프로그램은 신체활동이나 야외활동 위주로 대체하여 병사가 자연스럽게 서로 친밀감을 쌓아가고 신체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여 긴장감을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증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적응병사의 유형은 크게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를 보이는 병사, 공격성이나 분노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행동통제와 관련한 외현화된 문제를 보이는 병사, 지적 한계로 능력이 부족한 병사, 조현병 등의 정신증적 문제가 있는 병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캠프 입소병사는 정신증적 문제가 있는 병사를 제외한 앞의 세 집단일 수 있는데 이들은 자존감 저하, 입소전 트라우마 경험,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살충동, 자기통제력의 부족, 우울, 불안, 위축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공통된 어려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맞춤형 치료란 대개 “공황장애나 대인공포”등 단일증상에 대한 구조화된 치료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다양한 공존증상을 보이는 병사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은 집단으로 진행하되 개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개인상담 위주의 개별적 치료접근을 통해 치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치료적 역량이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와 같은 상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충하는 방안과 외부전문가를 캠프 기간에만 단기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휴식권과 관련하여 입소병사는 짜여진 다양한 프로그램에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느라 개인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였다. 정해진 일과에 참석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편한 부대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입소병사도 있었다. 개인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사고 유발의 우려를 갖게 할 수 있고, 경직된 군 특성상 형식적이더라도 시간 내에 짜여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일부 프로그램은 효과성에 의문제기가 많은바 캠프에 따라서는 외부강사의 섭외가 어려운 지역도 존재하는바 형식에 치중하는 것은 과감히 탈피할 필요도 있겠다. 개인상담, 대인관계기술향상, 자존감향상 등 병사 개개인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외의 시간은 체육활동 등을 통해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입소병사가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24시간 내내 일대일 밀착관리, 종교활동 강요, 짜여진 프로그램 참석에 따른 휴식권 미보장, 편의시설 및 쉴 수 있는 공간의 부족, 운동시설 부족, 여가 활동 및 취미생활의 어려움, 전화기 등 편의시설의 부족 등이었다. 대다수의 캠프는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차갑고 건조한 느낌의 부대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사생활은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물리적 측면에서 입소병사는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의 개선 또한 그린캠프나 블루캠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는 요인일 수 있으므로 쾌적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캠프 입소병사는 스스로 군복무 부적응자라는 위축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 조사결과 명찰이나 의복 등에 차이를 두어 일반병사와 구분되게 하는 캠프가 있었다. 이는 입소병사 스스로 낙인을 갖게 하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가 있다. 캠프입소는 개인적인 취약성에 따른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군에 부적응하여 잠시 휴식기를 갖는 것이라는 인식의 확대를 입소병사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라. 자대복귀 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낙인효과는 입소병사가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설문에 응답한 입소병사의 50%는 복귀 후의 '무시나 왕따'등의 정서적 학대를 가장 우려하는 인권침해로 예상하고 있었다. 일반병사의 상당수(조사대상자의 37.7%) 또한 캠프 입소병사가 위험할 수 있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군복무 기피자라는 인식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편견적 태도는 입소병사가 복귀하였을 때 직접적인 언행을 통해서서는 아닐지라도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신과 치료를 경험한 사람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개인의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개선되지 않고 평생 지속되는 부적응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문제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다. 정신적인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숙에도 도움이 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군에서의 부적응은 낯설고 통제적인 환경에서 겪게 되는 일시적인 문제로 급성스트레스장애일 수 있고 이는 주변의 배려를 통해 상황에 익숙해지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입소병사도 그린캠프나 블루캠프에 대해 입소 전에는 정신이상자가 가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캠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군은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군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병사가 자발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 입소가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소병사는 자신이 캠프에 입소한 사실이 은밀하게 다루어지길 바라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기대이다. 개방적이며 솔직한 태도가 권장되는 것이 낙인효과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낙인효과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입소병사 스스로가 실제보다 더욱 강하게 의식하는 측면도 있음으로 오히려 자신의 힘든 상황을 개방적으로 얘기하고 캠프 입소를 통해 군적응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는 것이 좋은 행동으로 권장된다면 낙인효과는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마. 군 전반적인 인권 관련 개선방안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된 분포는 캠프 입소병사의 39%, 도우미 병사의 46%, 캠프에 종사하는 간부의 67%, 일반 군부대 병사의 64%, 일반부대 간부의 89%였으며, 인권교육 후 인권의식이 향상되었다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설문에 참여한 병사(입소병사, 도우미병사, 일반병사 포함)는 ‘인권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이어서 자신의 인권의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였고, 인권교육에 따른 ‘지휘관의 태도변화도 적어’ 군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 횟수 또한 0회에서 6회 이상으로 병사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군시스템 안에서 인권교육이 체계화되어 있기 보다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식적인 인권교육이 아닌 군조직의 특수성과 병사의 욕구수준에 맞는 매뉴얼화된 인권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을 때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일반병사 및 입소병사, 그리고 도우미 병사와 복귀병사 모두 소원수리, 국방헬프콜, 국방신문고 등이 구제기관으로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로 이용하는 구제방법은 지휘관과의 대화, 혹은 상담관과의 대화로 지휘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문제를 군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병사는 문제가 외부로 알려져 확대되거나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군간부 또한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군간부나 지휘관이 병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병사는 조직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바 병사의 인권 교육에 우선하여 간부나 지휘관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병사가 겪는 인권침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병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모범적 행동을 수행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병사는 효과적인 구제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NGO와 같은 외부 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같은 옴부즈맨 제도는 군 외부의 기관에서 군의 인권침해나 문제점이 감시되는 것으로 한국군 또한 옴부즈맨 형태의 감시기관 설립을 통해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병사와 지휘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일반병사는 ‘낮은 급여’를 가장 큰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었고 뒤이어 휴식권미보장, 사생활침해, 복지시설 부족’ 등을 인권침해로 인식하였다. 군복무에 대한 병사의 의미부여가 적고 가능한 가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등 사회적인 가치가 낮은 만큼 군복무에 따른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복무 동기가 높아질 수 있고 군 적응에 대한 의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이나 과중한 노동 등이 제공되어야 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복무하는 병사는 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간부는 병사가 군에 부적응하는 요인 중 ‘비자발적인 입대’를 일순위로 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며, 징병제 단계에서라도 병사가 제공하는 노동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적 합의와 이에 따른 실행이 필요해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5. 결론 및 제언

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군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한 결과는 군 적응 교육프로그램이 군의 지휘부담의 감소, 자대복귀로 인한 복무의 연장, 자살 등 위험병사의 선별과 관리 등 병력 관리의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상당히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군에서 병사에 대한 관리를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접근하여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병사에게 돌리기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는 병사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전면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지, 다른 대안을 새롭게 권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사가 중시하는 인권의 측면이 처음 캠프를 시작하였을 때와 상당히 달라졌으므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앞 절의 인권개선방안에서 상세히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설립목적에 맞는 캠프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린(블루)캠프는 그 목적이 자대복귀에 있다. 그러나 각종 자료를 통해 볼 때 캠프 입소병사 중 자대복귀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복귀 비율이 낮은 것은 캠프에 입소하는 병사가 주로 부적응정도가 매우 높은 병사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자대에서 전역이 필요한 병사를 캠프로 보낸 결과일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캠프를 여러 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 설립할 때의 '퇴소 후 자대복귀'라는 운영목표를 운영자가 잊은 결과일 수 있다. 입소병사를 보낸 지휘관이 병사가 자대로 복귀하였을 때 불만스러워 하는 점이라던가 복귀 후 재입소하는 병사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병역심사관리대로 보내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험을 하면서 캠프의 목표가 자대복귀에서 군에서의 퇴출로 서서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그린(블루)캠프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군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입소과정에서의 자발성을 높이고 불안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입소는 당연하나 동료를 떠나 경험하지 못한 캠프에 입소하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장소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은 일반병사가 아닌 복무 부적응 병사라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지휘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해 보낸다는 점에서 그린캠프 입소병사에 대해 지휘관이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입소의 자발성과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그린캠프에 대한 자료를 각 부대에 제공하고 지휘관에게 그린(블루)캠프의 목적과 프로그램, 입소기간과 입소 후의 조치, 캠프 내의 인권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휘관은 이를 모든 병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병사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블루캠프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1년 중 시간을 정하여 우수 병사의 힐링을 위한 곳으로 그린캠프를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린캠프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불편감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해군의 블루캠프는 도우미 병사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한다. 도우미 병사의 역할은 블루캠프의 분대장 등이 대신 한다. 1대 1의 밀착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대장 역할을 하는 병사를 충분히 교육시키고 경험하게 하여 숙련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육군의 그린캠프는 입대동기나 혹은 입소병사가 원하는 부대원이 동행하여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입소병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밀착 관찰함으로써 입소병사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불만을 호소하고 도우미 병사도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대학전공자가 캠프의 분대장이 되어 도우미 병사의 역할을 하며 근무하게 하여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소진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일률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외부활동이나 운동 등을 장려하는 것이 좋겠으며, 개인상담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여 캠프에 입소하였고, 퇴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안과 공포 및 무기력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개인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소병사의 상당수는 캠프에서 입소한 개인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과 입소 이유를 불문하고 고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개인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주의할 점은 이러한 상담은 상당히 전문적인 과정임을 명심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그린캠프마다 한 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상근을 하는 것으로 운영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캠프가 열리는 날부터 모든 입소병사의 진단을 하여야 하고, 끝날 무렵에는 효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중간에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개인상담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캠프 당 일인이 아닌 최소한 1.5인 이상의 상담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캠프의 상근자 일 인에 더하여 필요에 따라 주변 부대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업무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캠프의 프로그램은 진단이 약 41%의 시간을 차지하여 힐링이나 회복 등의 목표보다는 진단과 분류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진단을 위한 활동을 줄이고 회

복과 자대복귀를 위한 준비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진단 업무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가급적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공신력 있는 학회에서 일시적인 집체교육이 아닌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웃음치료, 음악치료나 만들기 등 입소병사가 거부감을 느끼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퇴출할 필요가 있다. 각 캠프가 위치하는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멀리 위치하는 캠프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사에 의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십대 초반의 남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운동과 외부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십대 초반의 병사는 상당한 신체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방출하는 것이 신체적인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은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이나 봉사 등 야외활동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운동을 통해 신체 내부에 방출되는 도파민 수준이 증가하면 우울감이 감소하고 다행감이 증가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자존감이 증대된다면 자살이나 자해와 같은 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입소병사는 자신이 귀대하였을 때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실제 일반병사의 인식을 보면 입소병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겉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위험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암묵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병사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이러한 편견과 낙인은 자대에 복귀한 이후에 자대 생활을 할 때 은연 중에 나타나서 입소 후 복귀한 병사에게 표현될 수 있다. 물론 입소병사 본인도 복귀부대의 선임과 동기 및 후임이 그러한 낙인과 편견을 가지고 자신을 대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는 군 전반에 있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사 간의 간격과 담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권감수성 교육은 특히 이러한 장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군의 인권교육이 가지고 있는 천편일률적이고 개념위주의 교육보다는 실제 인권의 실사례를 주고 이것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지와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를 주고 어떤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게 하고 토론하는 작업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의 연속성 모델에서는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green'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동료의 정신건강 상태도 건강하게 유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과 동료의 정신건강 상태와 위험요인, 최근의 스트레스 경험, 이에 대처하는 병사의 노력과 그 효과 등을 서로 수시로 모니터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부대원의 정신건강은 그 병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부대원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여 자신 뿐 아니라 동료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왕따와 같은 따돌림이 문제가 되고 있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경쟁이 우선하는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 익숙한 병사에게 동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도움행동을 격려하는 것은 특히 낙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 모델과 같이 부대 내 단위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책임을 단위 부대원이 공동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단계에 있는 병사에게는 의무적으로 지휘관의 정기적 방문과 면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료 병사와 함께 하는 시간이나 가족과의 화상통화 등 심리적 지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험수준과 경계수준, 보통수준과 우수수준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를 각 병사 뿐 아니라 부대원 모두에게 적용하고 이를 우수수준으로 잘 유지하는 부대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 유지가 되지 않는 부대원에게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방문하여 부대의 진단과 처방을 하는 방법을 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인권에 대한 교육은 훈련소와 자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병사와 간부는 이러한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크게 인권상황이 높아 지지는 않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이는 군의 인권교육이 형식적이고 다른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결과라 생각된다. 따라서 인권교육 내용을 매뉴얼화하고 일률적인 강의 보다는 참여형 교육, 대화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이 일상 군생활과 밀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과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대만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서는 지구심리위생 센터에서 심리위생교육을 담당한다. 이 기관에서는 군 간부에게 꼭 필요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정규교육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순회교육과 같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특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팀은 간부가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병사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이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우리 군의 일반병사가 인권교육을 받아도 부대의 인권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상급자의 무변화’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해 간부가 조기 식별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인권 문제와 치유의 문제 등에 더욱 민감해지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인권교육은 병사의 경우 다른 교육과 함께 제공되다 보니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집중도를 낮출 수 있으며, 중대장과 같은 지휘관의 강의형 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또한 인권문제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도록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지휘관이 교육을 시키는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간부 역시 인권교육이 주입식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군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교육을 시키고 있음과 교육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모르겠

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병사의 교육을 하여야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자체적인 토의와 질의응답 등이 교육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여 주는 역할과 토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역할 등을 맡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인권침해를 받게 되었을 때 구제기관으로 대부분 국방헬프콜이나 소원수리에 대해 알고 있으나 침해를 고발하여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개선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정정해달라는 구제 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보인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인권을 침해받으면 대표병사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병사는 누구에게서 제보가 들어왔는지를 보고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징병제가 폐지되었고, 대부분 장기근무자이고 전체 군의 20%인 5만 명만이 9개월간 병역을 지는 구조라는 점이 우리의 사정과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는 징병제이어서 대부분의 남성이 군복무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복무기간도 21개월이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을 제외하면 약 20개월 정도 복무한다. 따라서 대부분 장기근무자가 근무하는 독일처럼 대표병사를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국방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군 내부의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처리하고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폐쇄적인 군 문화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OSCAR제도는 군 외부에 있는 사람이 군 내부의 병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등 외부자원을 개방적으로 활용하여 군의 문화를 개선하고 있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직책이 신설되어 군에서의 인권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해결 및 제언하는 역할을 하게 하며, 그 소속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기로 하였다. 이는 매우 의미가 있는 변화로서 군의 인권상황을 상당히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군이라는 특수성 앞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병사는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인권교육을 가장 많이 주관하는 지휘관보다는 그 상급부대에서 해결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지휘관에 대한 불신의 표현일 수도 있고, 상급부대와 같이 힘 있는 곳이 아니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병사가 바로 그 두 기관이 나서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군의 실태를 잘 말해주

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혹은 NGO는 군 내부에서의 인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이지만 병사의 입장에서는 접근이 매우 어려운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외부의 여러 위원회와 NGO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병사가 자신의 어려움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군도 보안을 이유로 군 외부에 있는 각종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문을 잠그기 보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군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기대효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5년 전 군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의 군 복무적응 프로그램으로 육군과 해군에서 실시하는 캠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공군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캠프가 존재하지 않아 병역관리심사대를 방문하고 일반병사와 간부를 중심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일반병사와 간부, 그리고 캠프입소병사와 캠프의 간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군의 현재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군이 부적응 병사의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제고하고 좀 더 현실성 있는 인권 향상반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즉, 군 병사의 인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일반병사나 간부가 생각하지 못한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확인하여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동안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인권교육의 실시형태와 이에 대한 자세, 그리고 진정으로 군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게 되어 부족한 인권교육 내용이나 실시 방법, 교육 실시자의 자격과 교육의 독립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군 전체의 부적응병사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게 되어 차후 가용한 군병력이 부족하게 될 시점에서는 군복무라는 국민의 의무를 안전하고 성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현재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그린(해군의 블루) 캠프의 프로그램을 검토한 자료를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의 형태와 프로그램의 실시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캠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동에 인권침해 요소는 없었는지를 자성하게 하여 부적응 병사에게 친절한 캠프 운영방안이 얻어질 수 있을 것이고, 캠프의 진정한 목표인 힐링 후 자대복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캠프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친 후 자대복귀한 병사에 대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 등 다양한 낙인효과를 상쇄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복무를 할 수 없는 병사가 캠프를 다녀왔다고 과연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료나 상사, 혹은 부하로 대우하여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병사가 암묵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해 복귀병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복귀병사의 적응을 위해 부대 전체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12).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4).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6).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현역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선별 및 조치를 중심으로.
- 국민권익위원회 & 국방대학교 (2008).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 국방부(2012). 군인복무규율 제 3절 25조 고충처리.
- 국방부 (2015).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 국방부 (2017). 해군 블루캠프 운영지침.
-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2007). 국군 인권교육 교재. 교관용 교육지도서
- 국방헬프콜 <http://helpcall.mnd.mil.kr>에서 2017, 11, 3 자료 얻음.
- 김재술 (2016). 군복무 부적응자의 그린캠프교육대 참여에 관한 연구 - A 군단 우울증 감소 프로그램 중심으로. 신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형래 (2016). 메타분석에 의한 병사 자살위험요인 연구, 국방정책연구
- 석정수 (2014). 군사 옴부즈만 정책의 변동요인과 발전방안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양철호, 권순철, 박순희, 서현미, 윤종성, 이용교 (2005). 군복무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통일학술지, 15, 207-225.
- 육군본부 (2017). 육군본부 정책연구보고서: 그린캠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영선 (2017, 5, 24). 소통 혁신 '국방헬프콜' 병영 신뢰 높였다.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 에서 2017, 11, 3 자료 얻음
- 임태훈 (2013).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재원 (2016), 군복무 부적응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육군 그린캠프 운영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해군본부 (2017). 해군 블루캠프 주요 경과.
- Armed Forces Act (2006, 2015). Service Complaints Ombudsman for the Armed Force.
- Carrie H. Kennedy, Eric A. Zilmer(2016). 군 심리학: 임상심리와 작전에의 적용(김형래, 양난미 역). 학지사
- Greenberg, N., Lanston, V., & Jones, N. (2008). Trauma Risk Management (TRiM) in the UK Armed Forces. *Journal of Royal Army Medical Corps*, 154(2), 123-126.
- Jones, D. E., Hawkes, C., Gelles, M., Hourani, L., & Kennedy, K. R. (1999). Department of the Navy suicide incident report (NAVMC 11410)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the Navy.
- Pider, R. J., Fear, N. T., Wessely, S., Reid, G.E., & Greenberg, N. (2010). Mental Health cre provision in the U.K. Armed Forces. *Military Medicine*, 175(10), 805-810.
- Rand Corporation (2015). *Evaluation of the Operational Stress Combat and Readiness(OSCAR) Program*. Santa Monica, Calif.
- 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Borden Institute. (2011). Combat and operational behavioral health. Washington, DC.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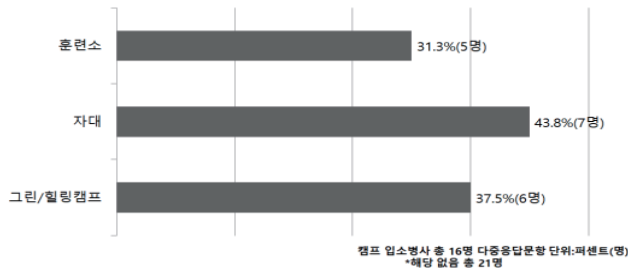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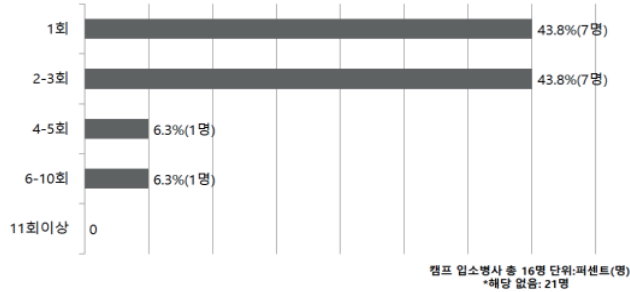
가. 군 인권 실태

캠프 입소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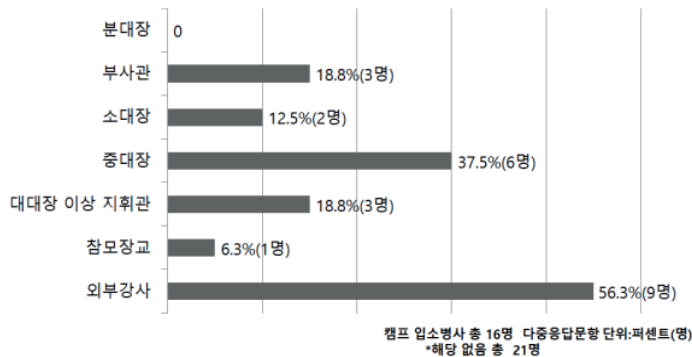
캠프 입소병사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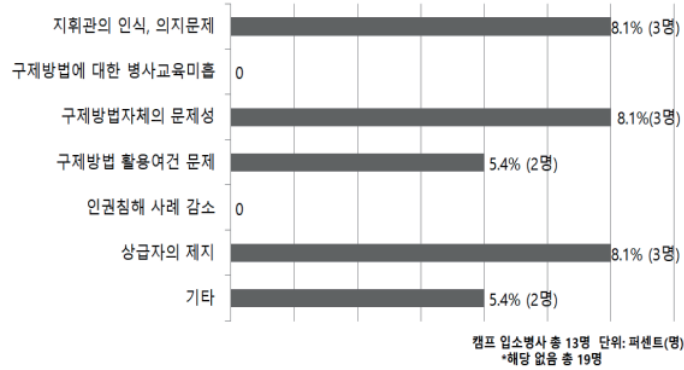
[그림 1] 인권교육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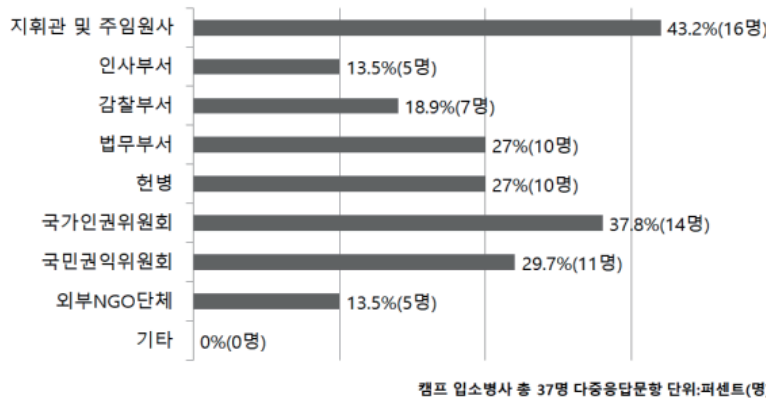
[그림 2] 입대 후 인권교육 횟수



[그림 3] 인권교육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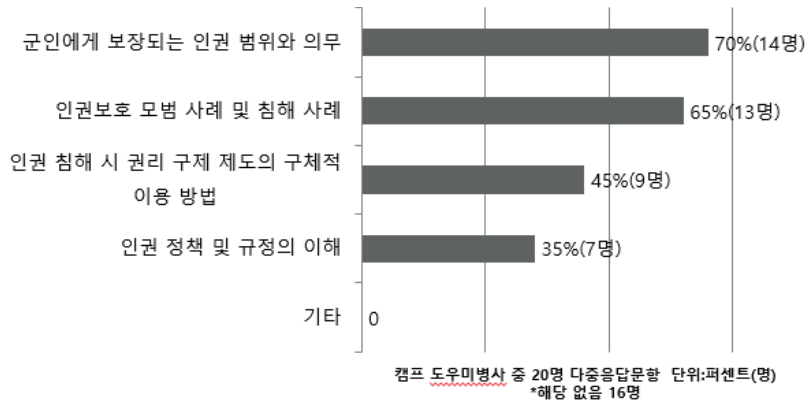
[그림 4]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구제 요청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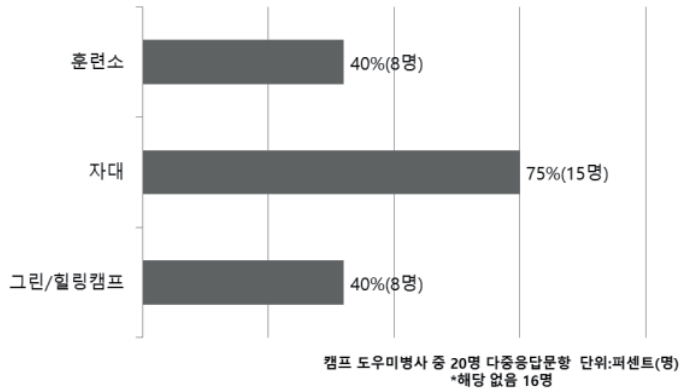
[그림 5] 인권침해 구제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기관/부서

캠프 도우미 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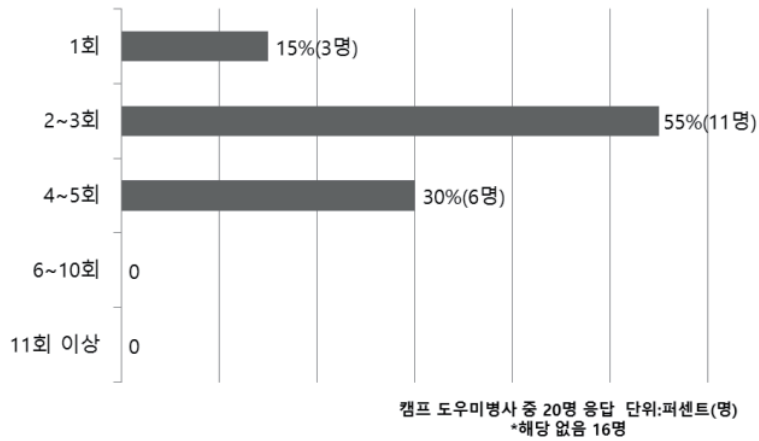
캠프 도우미병사 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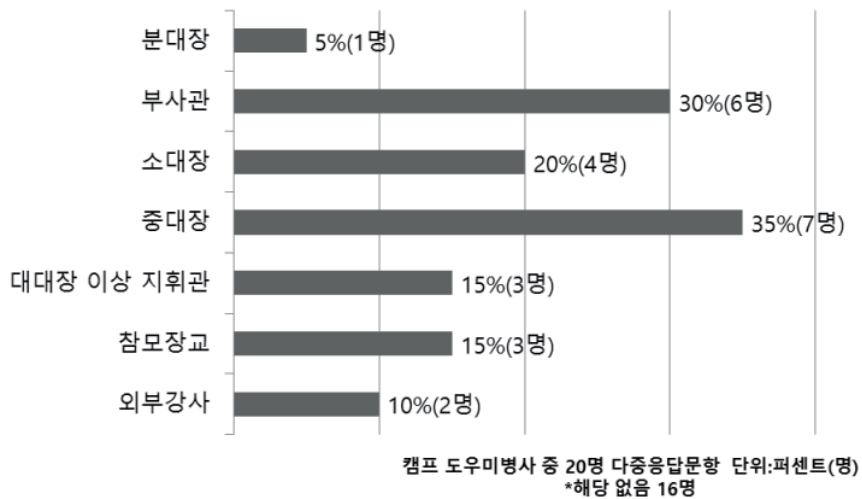
[그림 6] 인권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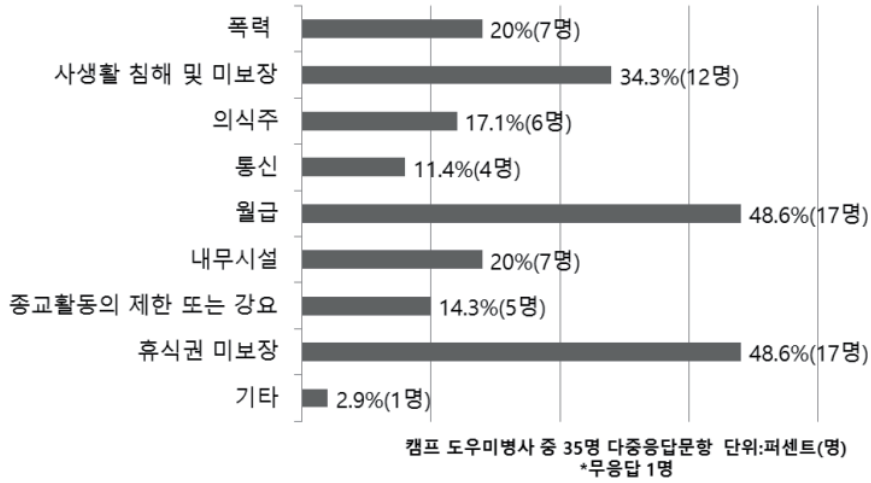
[그림 7] 인권교육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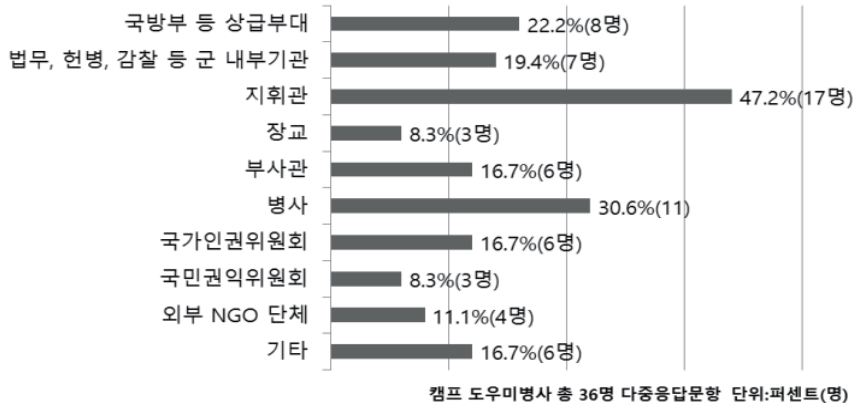
[그림 8] 입대 후 인권교육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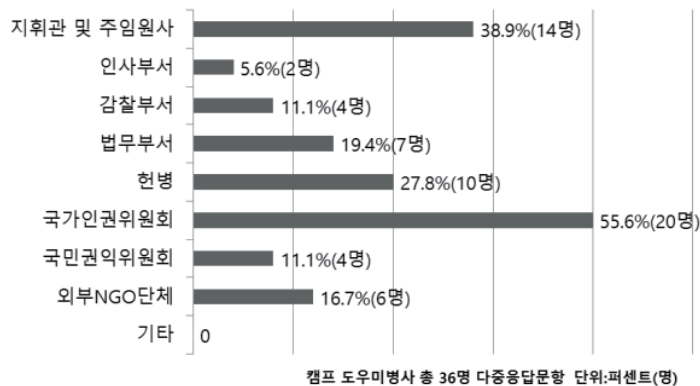
[그림 9] 인권교육 강사



[그림 10] 병사들의 인권에 취약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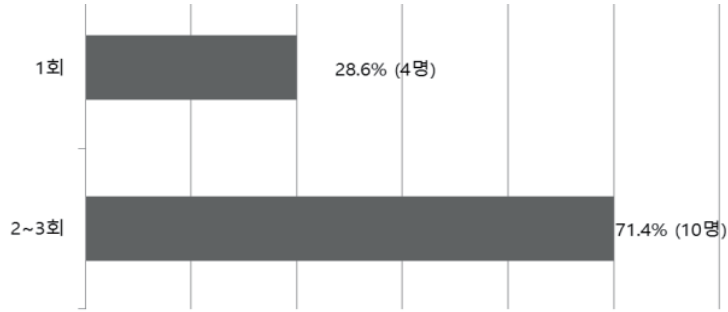
[그림 11]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



[그림 12] 인권침해 구제 가장 효율적인 기관/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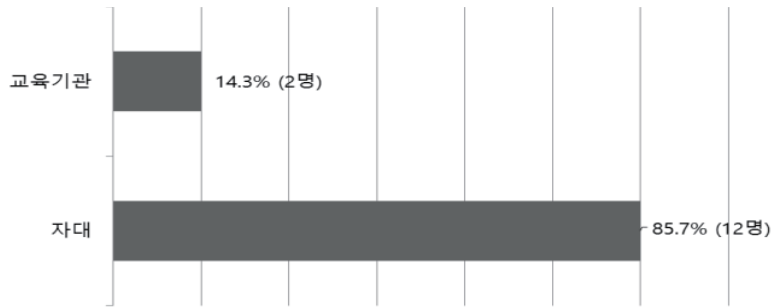
캠프 간부

캠프 간부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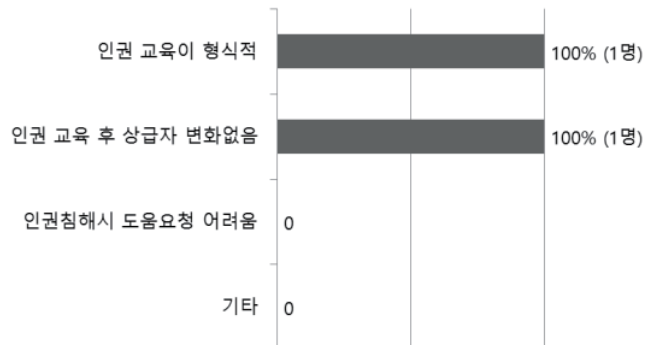
캠프 간부 총 14명 응답 (단위:퍼센트(명))

[그림 13]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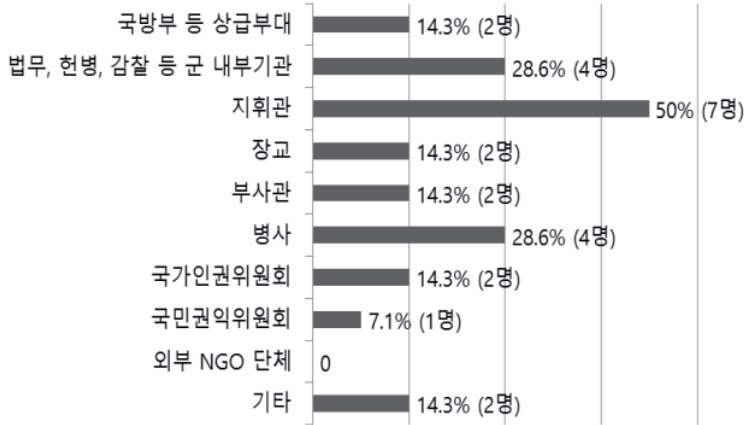
캠프 간부 총 14명 응답 (단위:퍼센트(명))

[그림 14] 인권교육 장소



캠프 간부 중 1명 다중응답문항 (단위:퍼센트(명))
*해당없음 총 13명

[그림 15]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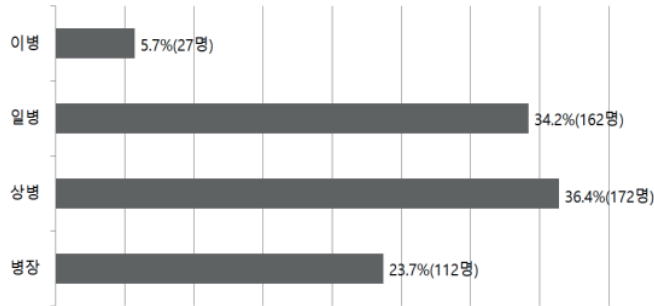


캠프 간부 총 14명 다중응답문항 (단위:퍼센트(명))

[그림 16]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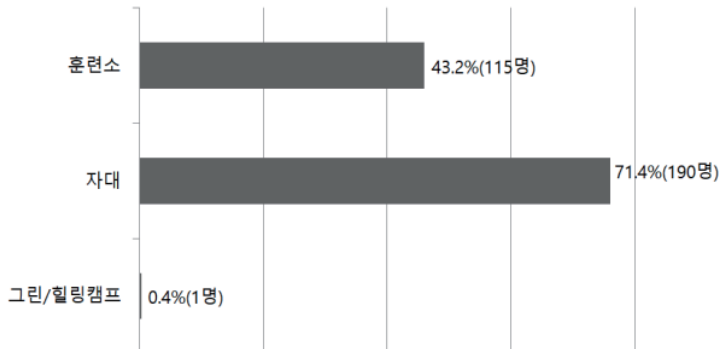
일반부대 일반병사

일반부대 일반병사 총 4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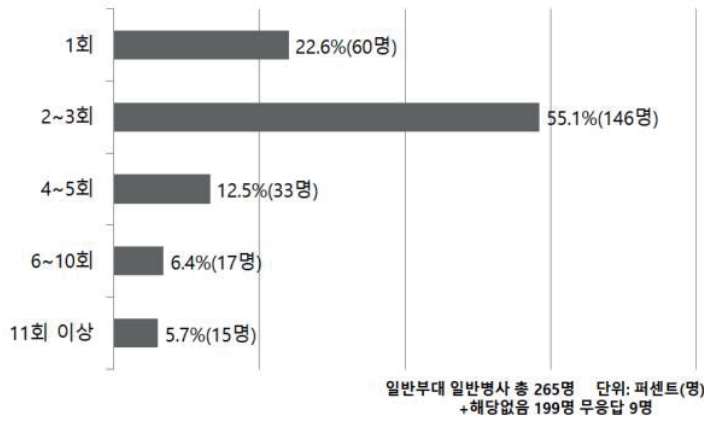
일반부대 일반병사 총 473명 단위:퍼센트(명)

[그림 17] 병사들 계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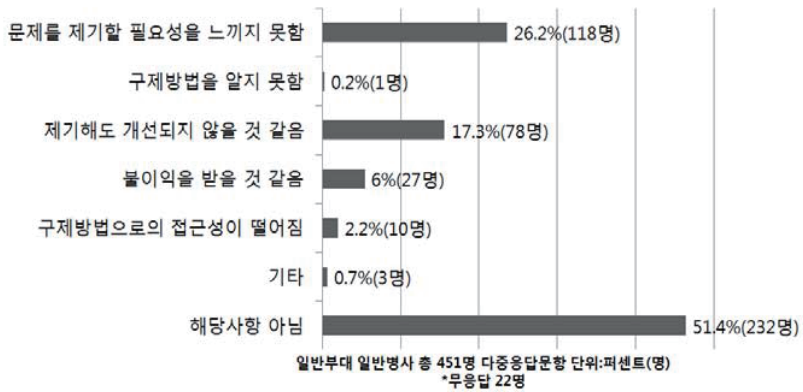


일반부대 일반병사 총 266명 다중응답문항 단위:퍼센트(명)
*해당없음 199명 무응답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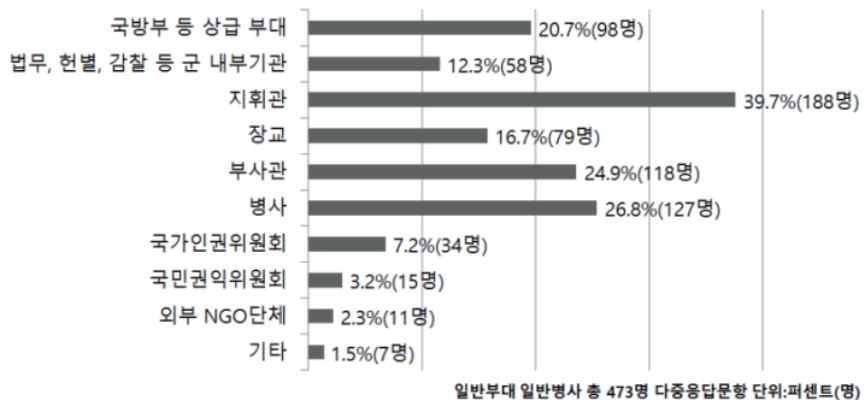
[그림 18] 인권교육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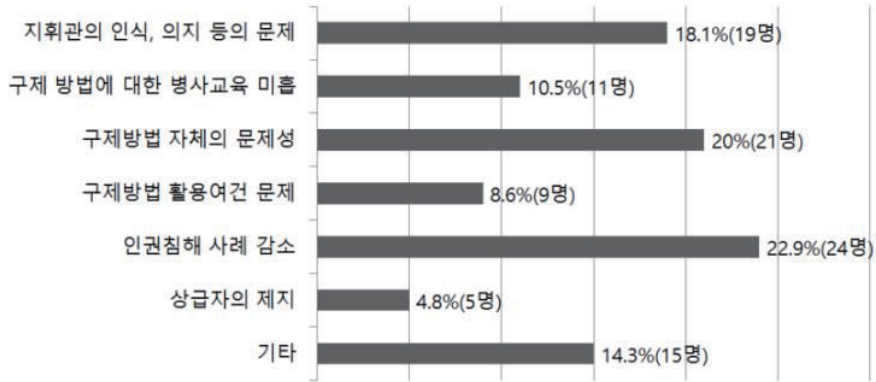
[그림 19] 인권교육 횟수



[그림 20]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그림 21]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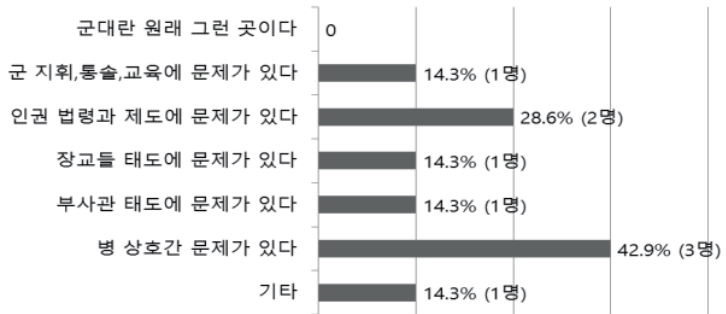


일반부대 일반병사 총 105명 다중응답문항 단위:퍼센트(명)
 *해당없음 363명 무응답 5명

[그림 22]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구제요청 이용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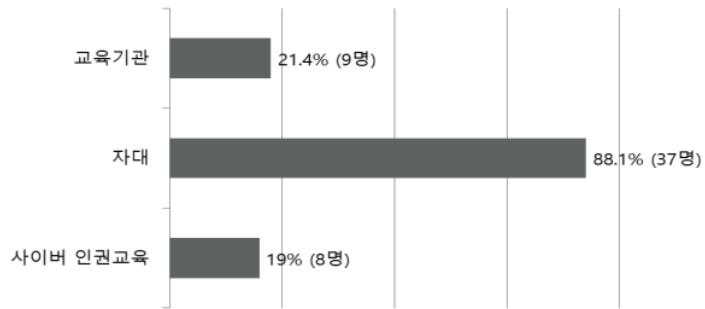
일반부대 간부

일반부대 간부 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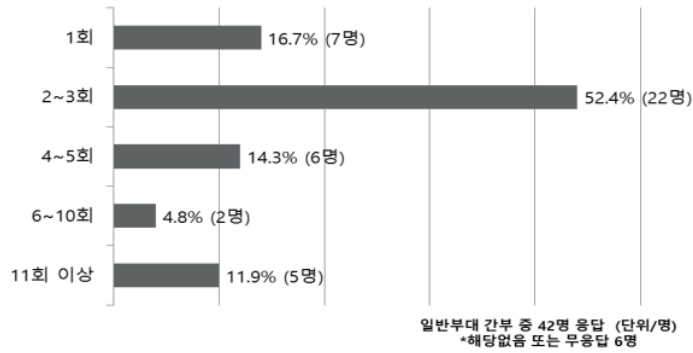
일반부대 간부 중 7명 다중응답문항 (단위/명)
 *해당없음 41명

[그림 23] 병사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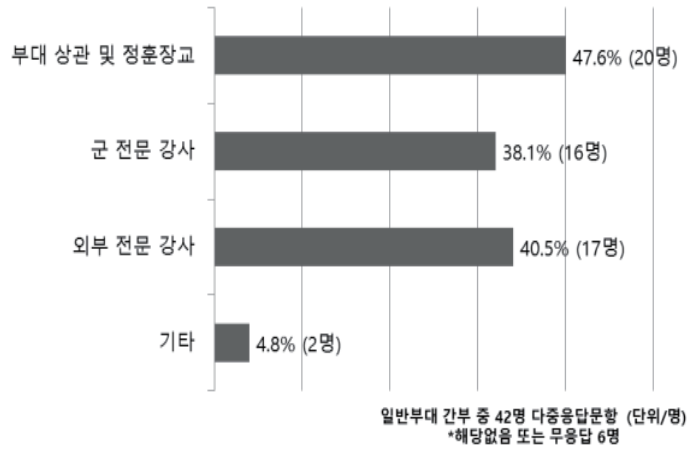


일반부대 간부 중 42명 다중응답문항 (단위/명)
 *해당없음 또는 무응답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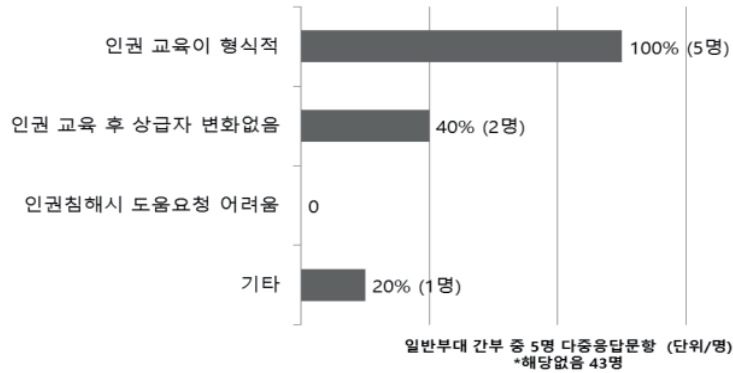
[그림 24] 인권교육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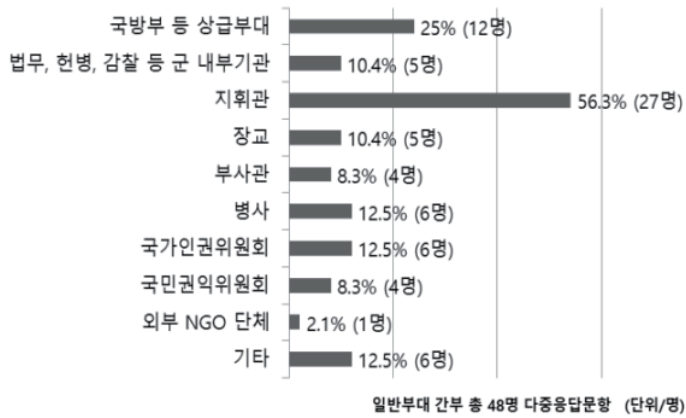
[그림 25]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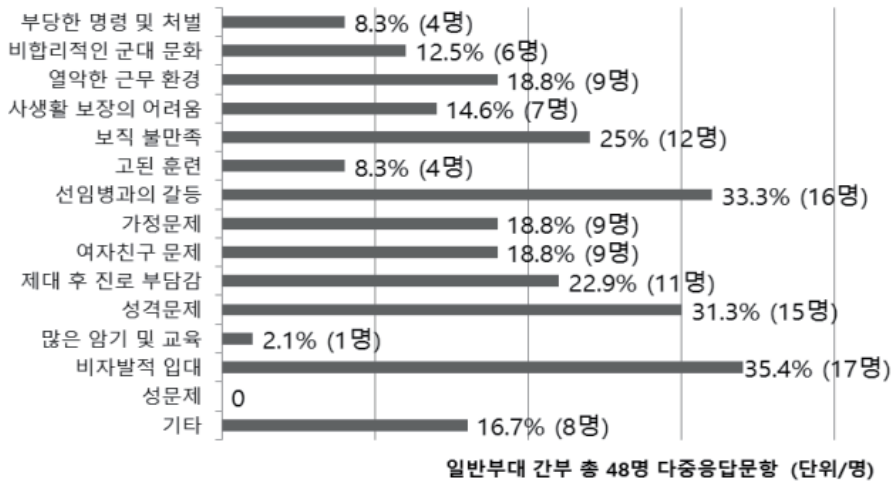
[그림 26] 인권교육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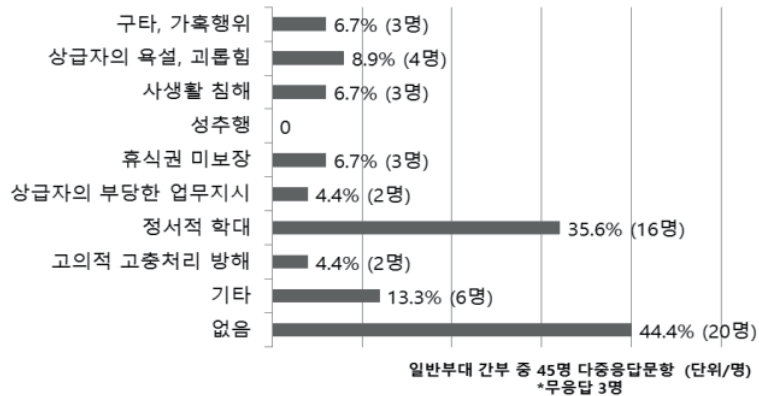
[그림 27]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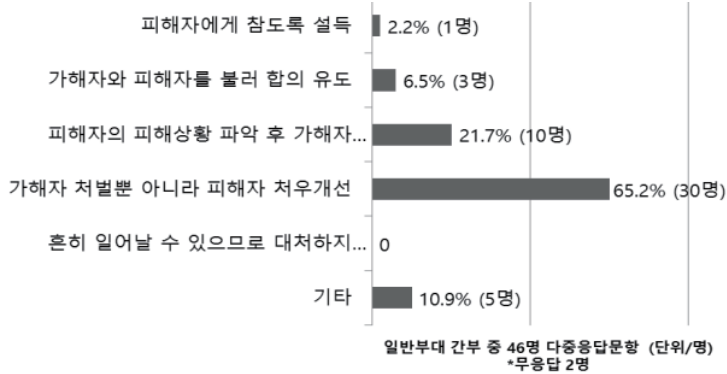
[그림 28] 군내 인권침해 방지 위해 주도적 역할 해야 할 기관/집단



[그림 29] 병사들이 군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주된 이유



[그림 30] 복무부적응 병사들이 겪는 피해사항



[그림 31] 복무부적응 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

캠프 도우미 병사

[표 1]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과 이유

구제방법	불만족 응답비율	이유
1.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11.1% (4명)	1순위: ②,⑦
2. 지휘관과의 대화	11.2% (4명)	1순위: ②
3.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2.8% (1명)	1순위: ②
4. 병영생활전문 상담관과의 상담	2.8% (1명)	1순위: ⑤
5. 부대 인권 상담관과의 상담	-	-
6. 감찰, 헌병참모에 의한 구제	2.8% (1명)	1순위: ②
7. 국가인권위원회	-	-
8. 국민권익위원회	-	-
9. 외부 NGO 단체	-	-
10. 국방 신문고	-	-
11. 국방 헬프콜	2.8% (1명)	1순위: ②

캠프 도우미병사 총 36명 다중응답문항 단위: 퍼센트(명)

*불만족 이유: ①비밀보장이 안됨 ②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불이익을 받음 ④신고자 신상에 영향미침
⑤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⑥처리결과 통보 안됨 ⑦사건재발 방지 노력미흡 ⑧기타

[표 2]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실태

구제방법	운영실태 평균	'잘 모르겠음' 응답 비율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유
1.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2.8	27.8% (10명)	1순위: ②,④,⑥
2. 지휘관과의 대화	2.7	27.8% (10명)	1순위: ② 2순위: ①
3.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2.6	47.2% (17명)	1순위: ②
4. 병영생활전문 상담관과의 상담	2.7	33.3% (12명)	1순위: ⑤,⑦
5. 부대 인권 상담관과의 상담	2.3	50% (18명)	1순위: ⑤
6. 감찰, 헌병참모에 의한 구제	2.3	52.8% (19명)	1순위: ② 2순위: ①,⑤,⑥
7. 국가인권위원회	2.1	58.3% (21명)	1순위: ⑤
8. 국민권익위원회	2	61.1% (22명)	1순위: ⑤
9. 외부 NGO 단체	1.8	63% (23명)	1순위: ⑤
10. 국방 신문고	2.2	58.3% (21명)	1순위: ②,⑤
11. 국방 헬프콜	2.7	36.1% (13명)	1순위: ⑤ 2순위: ②

캠프 도우미병사 총 36명 다중응답문항 단위: 퍼센트(명)

*불만족 이유: ①비밀보장이 안됨 ②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불이익을 받음 ④부대 분위기 및 단결에 영향 줌
⑤접근성이 떨어짐 ⑥간부들의 인식 부족 ⑦기타

일반부대 일반병사

[표 3]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경험 유무와 만족도

구제방법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만족도 평균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36.9%(171명)	63.1%(293명)	3.69
지휘관과의 대화	52.4%(243명)	47.6%(221명)	3.9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28.6%(133명)	71.4%(332명)	3.77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25.6%(119명)	74.4%(345명)	3.49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8.5%(38명)	91.5%(423명)	3.76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4.3%(20명)	95.7%(444명)	3.75
국가인권위원회	1%(5명)	99%(460명)	4.2
국민권익위원회	0.4%(2명)	99.6%(463명)	5
외부 NGO단체	0.6%(3명)	99.4%(462명)	4.67
국방신문고	0.6%(3명)	99.4%(462명)	4.33
국방헬프콜	1.9%(9명)	98.1%(455명)	3.78
기타	0.8%(4명)	99.2%(469명)	2.8

일반부대 일반병사 총 473명 단위:퍼센트(명)
*만족도: 5점 척도, 무응답 제외 값

[표 4]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 및 이유

구제방법	불만족 응답비율	이유
1.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12.9%(22명)	1순위: ②(10명) 2순위: ③,⑤(4명)
2. 지휘관과의 대화	4.5%(11명)	1순위: ②(8명) 2순위: ⑦(5명)
3.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8.2%(11명)	1순위: ②(8명) 2순위: ⑤,⑦(4명)
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13.4%(16명)	1순위: ②(8명) 2순위: ①(4명)
5.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13.1%(5명)	-
6.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15%(3명)	②,⑤,⑥(각 1명)
7. 국가인권위원회	25%(1명)	-
8. 국민권익위원회	0%(0명)	-
9. 외부 NGO단체	0%(0명)	-
10. 국방신문고	0%(0명)	-
11. 국방헬프콜	11.1%(1명)	-

일반부대 일반병사 총 473명 단위:퍼센트(명)

*불만족 이유: ①비밀보장이 안됨 ②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불이익을 받음 ④신고자 신상에 영향미침
⑤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⑥처리결과 통보 안됨 ⑦사건재발 방지 노력미흡 ⑧기타

[표 5] 인권침해 구제방법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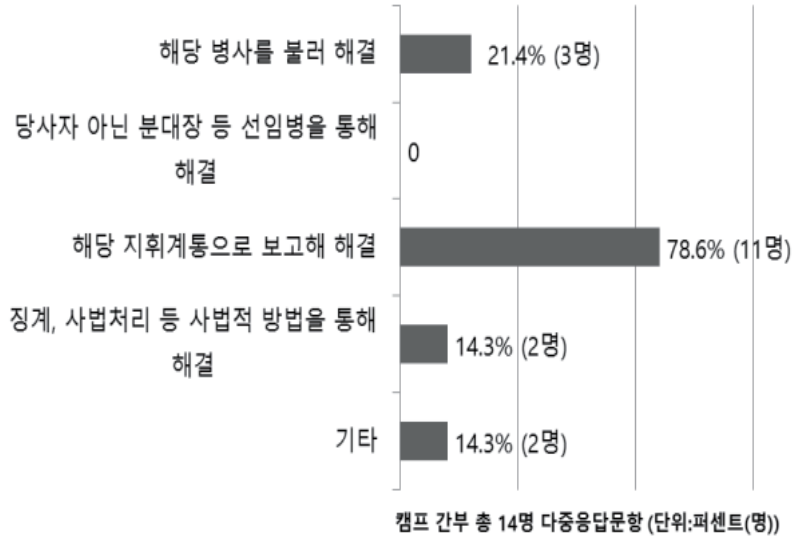
구제방법	운영실태 평균	'잘 모르겠음' 응답 비율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유
1.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3.15	20.7%(97명)	1순위: ① 2순위: ⑥
2. 지휘관과의 대화	3.21	21.1%(99명)	1순위:⑤ 2순위:①
3.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2.92	24.3%(113명)	1순위: ① 2순위: ②
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3.07	36%(168명)	1순위: ① 2순위: ②
5.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2.94	46.2%(215명)	1순위: ⑤ 2순위: ②
6.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2.83	53.1%(248명)	1순위: ⑤ 2순위:①
7. 국가인권위원회	2.56	64.1%(298명)	1순위: ⑤ 2순위: ②
8. 국민권익위원회	2.56	63.4%(300명)	1순위: ⑤ 2순위: ②
9. 외부 NGO단체	2.51	64.5%(297명)	1순위: ⑤ 2순위: ②
10. 국방신문고	2.75	59.6%(277명)	1순위: ⑤ 2순위: ①②
11. 국방헬프콜	2.95	51.2%(238명)	1순위: ⑤ 2순위: ②

일반부대 일반병사 총 473명 다중응답문항 단위:퍼센트(명)
*무응답 제외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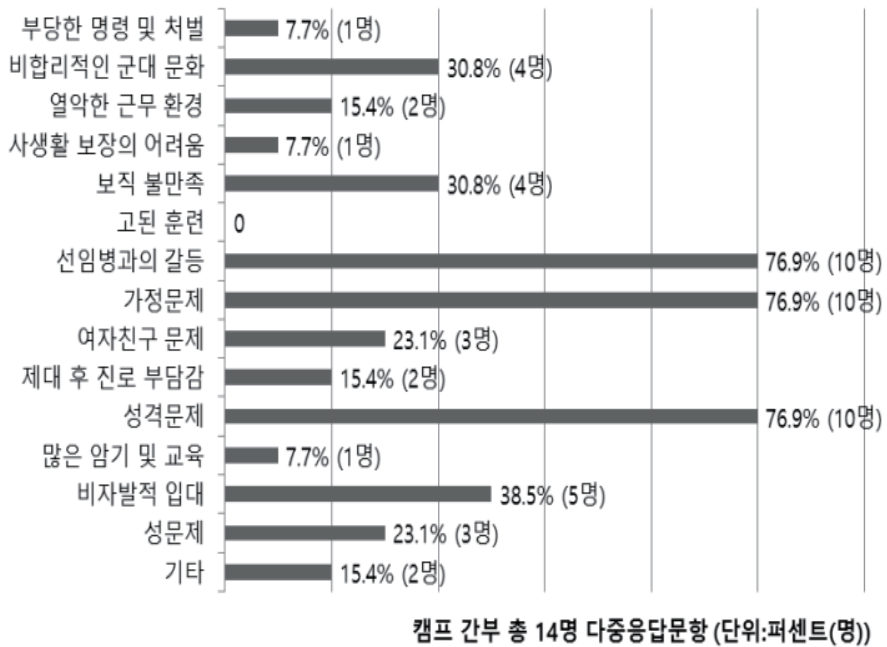
*불만족 이유: ①비밀보장이 안됨 ②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불이익을 받음 ④부대 분위기 및 단결에 영향 줌
⑤접근성이 떨어짐 ⑥간부들의 인식 부족 ⑦기타

나.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그린/블루캠프)에서의 인권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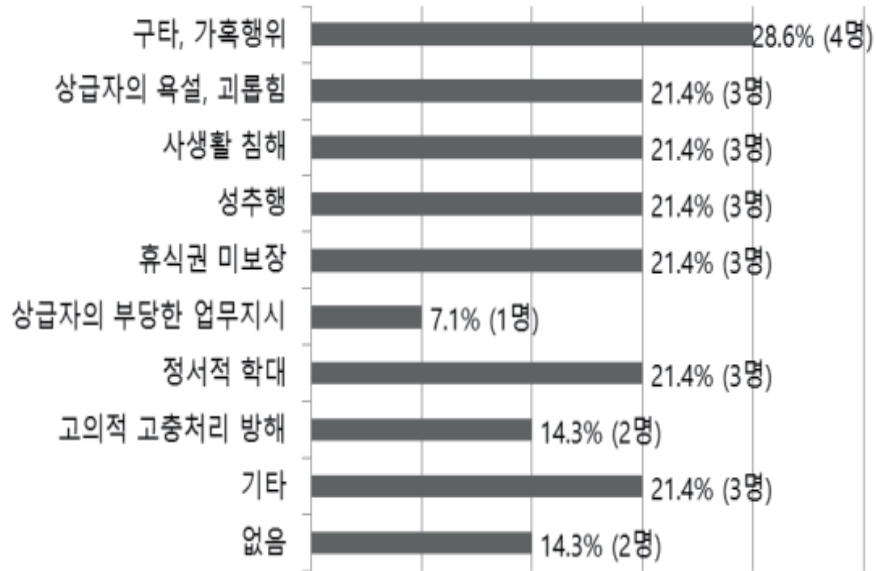
캠프 간부



[그림 32] 입소 병사들에게 인권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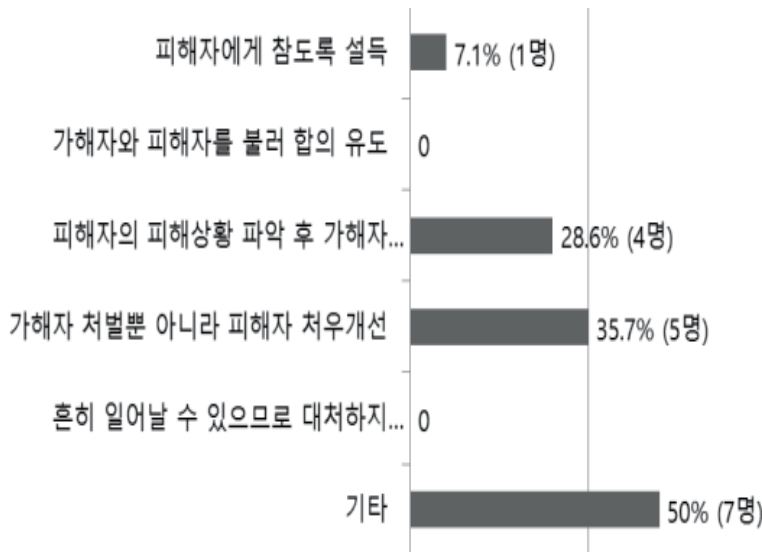


[그림 33] 입소 병사들이 캠프에 오게 되는 주된 이유



캠프 간부 총 14명 다중응답문항 (단위:퍼센트(명))

[그림 34] 캠프 입소 병사들이 겪는 피해사항



캠프 간부 총 14명 다중응답문항 (단위:퍼센트(명))

[그림 35] 입소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

면담지 정리

캠프 입소병사

1. 인권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인권교육의 효과(1-10점)와 그 이유, 인식변화, 인상 깊었던 내용은?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없다 - 병사2: 없다 - 병사3: 없다 - 병사4: 없다 - 병사5: 있다/2점/-/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형식상으로 하는 것. 인식의 변화는 조금 있었음./협박하는 것도 인권침해고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는 행위도 인권침해임을 알게 됨. - 병사6: 있다/3점/-/없음 - 병사7: 있다/1점/-/군인권이 좀 개선되었다고 들음 - 병사8: 7점.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 정말 인권이 중요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구나 생각함. - 병사9: 받아본 적 없음 - 병사10: 잘 모르겠음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있음 /5점/ 딱히 변화 없음/ 미처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인권침해라고 알게 됨(잔심부름 등) - 병사2: 있음 /2-3점/-/원래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었음. - 병사3: 잘기억안남 한 거 같음. 5점/-/군인 기본법이 바뀌었다는 것

2. 그린/블루캠프 내에서 인권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부대 내에서 병사들 간의 룰 같은 것. 들은 건데 옛날에는 이병들은 이병들끼리 충성마트를 이용 못하는 룰이 있었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그때 있던 선임들이 지금 이병들 보면 기분이 딱히 좋지는 않을 것. 언어문화 같은 것도 다나까 사용, 압존법 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병사들 간의 상하관계를 주요하게 여기는 룰이 있음./사는데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 병사2: -/인권은 사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니 그게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성격에 따라 차별대우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 군대는 폐쇄적 집단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과 더 많이 부딪히게 돼서 훨씬 더 중요함. - 병사3: 군대 내에서는 인권이 없고 그냥 복종할 뿐/사람이니까. 아무리 계급
------	---

	<p>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처럼 살겠다는 생각은 들게끔 해줘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4: 현재 군내 인권이 잘 지켜있는지를 점수를 낸다면 F학점을 주고 싶음./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 - 병사5: -/잘 모르겠음. - 병사6: 통제받는 다는 느낌. 자유가 되는 것. 하지만 별로 심하지 않음. - 병사7: 캠프 내에는 문제없음 - 병사8: 캠프 안에서는 크게 없었음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휴식권

3. 인권침해를 받고 구제제도를 이용해보셨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보셨나요? 있다면, 제도에 대한 조치가 만족스러우셨나요? 만족 또는 불만족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다면, 왜 건의하지 않으셨나요?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있음/상담만 받음. 중대장님이랑 행정보급관님께 힘든 사항을 이야기함. 이야기도 해주시고 병원도 같이 가주심. 얘기해서 의무실에서 격리되어 있었음. - 병사2: 있음/중대장님, 대대장님, 주임원사님 모두 성정체감으로 힘든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최대한 조치해주겠다고 하시고 이 현부심 절차를 밟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을 때도 동의를 해주심. 오히려 사회에서보다 더 잘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듦. - 병사3: 있음/ 마음의 편지나 이런 걸 써봤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적응이 어렵고 행동이 더디고 이런 특성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적었는데 따로 달라지는 건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이 됨 - 병사4: 있음/선임이 담배를 빌려갔는데 여러 번 계속되어서 불편사항을 간부에게 전달. 비밀보장이 잘 안 되서 오히려 눈치 보는 신세가 되었던 경험. 더 불편해짐. 구제제도 알고는 있는데 이용을 하면 가해자 처벌보다 목인되는게 더 크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 같음. - 병사5: 없음/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어서..알지못해서 사용하지 못함. 인권교육도 그린캠프에 와서 받음. 대대에서는 13개월 동안 한번도 받지 못함. - 병사6: 있음/소대장님께 이야기. 군대 자체가 원해 답습되어 온거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심. 네가 이해하고 좀 버텨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좌절스러웠음. 신고를 하거나 진상조사를 한다고 신상이 드러나게 됨. 그로 인해 신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간부만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사리게 됨. - 병사7: 있음/ 중대장님, 행정보급관님, 병영생활상담관님과 상담.. 주변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먼저 이야기 하게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8: 침해 받은 적 없고 이용해본 적 없음 - 병사9: 일과를 하는 것이 너무 안 맞고 스트레스 받아서 주임원사에 상담요청한적 있음. 주간설문에 힘들다고 써서 그린캠프에 오게 됨. - 병사10: 이용해 본 적 없음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있음/-소원수리 있고 직별장에게 상의해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예 무서워서 안적는 경우도 있음. 눈치가 엄청 보였음. 배 안에서는 소원수리함. 차라리 직접가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음. 신변보호가 안될 것 같아서 구제제도 이용이 꺼려짐 - 병사2: 있음/-그냥 상담관님께 상담만 받아봄. 소원수리함은 소용이 없다고 여겨짐. 부대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국방헬프콜을 하면 일이 커질까봐 주저되는 부분이 있음. - 병사3: 없음/-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으면 개선될 거 같은데 시선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많음. 짜르레기다 뭐 이런식으로 부정적으로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음. 조직내에서 환영받지 못함.

4. 만약 어떠한 제도도 이용해보지 못했다면 앞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구제제도를 이용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구제제도가 있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익명성 보장도 잘 안되고 - 병사2: 직접 중대장님께 말씀 드림. 콜센터 - 병사3: 앞으로 이용해본다면 민간단체를 이용할 것. 철저한 익명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 병사4: 다 신고할 예정. 몰라서 못했을 뿐이지만 앞으로는 다 신고할 예정 - 병사5: 국방헬프콜. 군대 내에서의 제도는 사실 별로 신용이 가지 않음.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 병사6: 마음의 편지. 1303. 인트라넷 비밀상담 신청도 좋을 듯 - 병사7: 마음의 편지 - 병사8: 마음의 편지. 1303. 소속 간부님과 상담 등
블루캠프	-

5. 그린/블루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블루캠프 프로그램 중 좋았던 것과 좋지 않았던 것? 그린/블루캠프 내에 프로그램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요청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온 사람들도 다 이유가 다를텐데,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고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빨리 바뀌는 게 좋겠다고 생각, 다같이 어울려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하고..자기가 필요한 걸 맞춰서 했으면 좋겠음./야외활동 프로그램(허브아일랜드) 좋았음./ 웃음치료는 불
-------------	---

편했음./-

- 병사2: 프로그램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 할만한 것 같음. 하지만 처음엔 다 어색하니까 함께 하는게 불편하고 그런 사람도 많고 스스로도 그랬음. 그래도 그 프로그램 통해서 친해지기도 하니 나쁘진 않음/토피어리(이끼공예품)는 왜 만드는지 모르겠음. 만드는 의미가 이해가 안됨./-
- 병사3: 너무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보니 몸만 편한 자대라는 인식이 강함. 오히려 개인정비시간이나 자유시간면이 자대보다 훨씬 부족하다고 느낌. 매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다수가 프로그램 만족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음./영화상담/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별로였음. 많이 거부감이 들었던 건 음악치료. 탬버린, 캐스터넷츠 이런 걸 활용하다보니 유치하다고 느낌./-
- 병사4: 오기 전에는 치료가 된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 보니 좀 많이 다름. 너무 갇혀있다는 느낌. 야외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음./야외활동 프로그램. 얼마 전에 허브아일랜드 다녀왔는데 거기서 꽃보고 마음치유하고 이런 것도 좋았음. /교육이나 강의 위주 프로그램 보다는 야외에 나가서 같이 체험하면서 같이 느끼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미술치료는 조금 더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주었으면 좋겠음
- 병사5: 부대보다는 괜찮음. 근데 입소병사들 모두 오게 된 이유가 다른데 조치가 적절하지 못함. 집단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병원에 갔다 오느라 프로그램을 많이 못 들었음/-
- 병사6: 생각과는 차이가 있음 개인 상담이 아닌 집단 상담으로 진행되다보니 뭔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 기분. 개인 상담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자발적으로 말을 해야 상담할 수 있고 상담관들도 많지가 않음/이것저것 위로를 많이 받으니 좀 나아짐/좋지 않았던 것은 없었음/-
- 병사7: 좋기는 한데, 사람이 많으면 얘기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럿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힘들 수 있음. 지루한 것도 있고, 하기 싫는데 해야 하는 것도 있음.(단체 심리치료 등). 개인 치료위주로 했으면 좋겠음. 그림 그리고 이런 것 보다는 대화하고 싶음. 더 정신병자가 된 것 같고, 유치하다고 느낌. 영화보기, 봉사활동/ 그림 그리고 자기소개하고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음/-
- 병사8: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괜찮은 것 같고 자대보다는 편한 분위기 있기에 좋음. px이용이 제한되거나 이동 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점. 현재에서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충분히 좋음. 완전 놀기만 하는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에 치유의 프로그램을 가진 곳이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음
- 병사9: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성검사 좋았음. 그린캠프 프로그램은 치유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도움이 됨. 입소 전 어려움을 가지던 부분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잘 맞음. 그린캠프는 힘들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 있을 것임
- 병사10: 치료 목적이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잠깐 쉬다 간다는 생각으로 온다면 괜찮을 것임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밖에서 하는 것과 똑같고 비싼 건데 만족하고 있음./상담, 미술심리가 가장 좋음./ 다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건의는 하지 않음) 개인적으로 연극관람, 뮤지컬 관람같은 것. 심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연극이나 뮤지컬로 힐링 되고 이런거. - 병사2: -좋다고 생각. 고민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해주고 휴식도 충분히 보장해줌./-치유프로그램, 숲 체험 이런 외부활동, 트라우마, 영화치료/ 딱히 없었음/-
-------------	--

6. 그린/ 블루캠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인식개선, 선임들만 하더라도 그린캠프 간다고 했을 때 거기는 전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했음. 그런 것만 봐도 그린캠프가 뜻하고 있는 바와는 조금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음. - 병사2: 개인상담을 많이 해야할 것 같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음. 앞으로 퇴소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	---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는게 가장 좋은 방법.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힐링할 수 있는 곳. 힘들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 병사2: 팀이 꾸려져서 각 배마다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블루캠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필요할 것 같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면담이나 면접을 통해 데려와서 블루캠프로 데려오는 것. 블루캠프를 자기 혼자 찾아서 오기는 힘든 상황. 기간이 좀 짧고 규모가 더 커졌으면 좋겠음. 지금 입소인원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블루캠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블루캠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음. 본인도 몰랐었음. 그리고 입소까지의 복잡한 절차랑 오게 될 때 시선과 그 과정을 버티기가 어려워서 오기 힘들 - 병사3: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많이 왔으면 좋겠고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음(2주는 너무 짧음) 상담관님이 혼자여서 상담관을 늘려주든지 해서 개인상담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	--

7. 그린/블루캠프 입소 전 인권침해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없음 - 병사2: 있음: 선임들 눈치를 많이 봤음. 많이 혼남. 시도 때도 없이 인사시키기 - 병사3: 병영부조리. 동일한 작업을 해도 일병 이병은 몸살이 날 정도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함. 상병 병장은 쉬어도 묵인해주고. 언어적으로 좀 심하게 교육하고 이런거 굳기잡는거. 보고없이 타장소에 집합시켜서 욕하면서 잘못지적이고 이병의 잘못을 일병의 관리책임으로 돌리는 거. 일병 때 많이 힘들었음. 선임들한테 인사치레같은거 잘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실수를 해도 좋
-------------	--

	<p>게 넘어가는데 소심하고 적응이 더딘 친구들은 엄청 혼냄. 극단의 상황까지 많이 몰아감. 익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익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4: 다쳐서 다른 병사보다 못하는 게 많아서 차별 받음. 부당한 업무지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병사 5: 있음/ 환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부족함.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시술을 두 번 받았는데 1년정도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 직접하는 훈련열외 외에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제설작업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참여. 제설작업중에 허리를 또 다침 - 병사 6: 있음/최근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활동제한에 대한 주변의 눈치. 배려보다는 오히려 눈치를 줌. - 병사 7: 없음 - 병사 8: 자대생활 하면서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선임들한테 혼남. 욕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맞는 말을 들으니깐 반박은 못하겠고 어디다 풀 수 없어서 점점 쌓였던 것 같음. - 병사 9: 진짜인지 장난인지 구분할 수 없게 언어폭력은 있었음. 신체폭행은 경험한 적 없음. - 병사 10: 직접 당한 것은 없음. 목격한 바로는 장난 식으로 한다면, 싸워서 하는 경우는 있었음
<p>블루캠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있음/해군 함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자유시간 보장이 너무 안되었음. 휴식권보장도 안됨. 주말도 없고 쉬는시간도 없고 계속 근무함. 휴가도 미뤄져서 결국 없어진 적도 있음. 출항 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 많음. 허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쉬지 못함. 하루 16시간을 취사장에 있기도 함. 종교활동이 없는 배가 있음.

8. 그린/블루캠프 기간 내 인권침해 경험이 있었습니까?

<p>그린캠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9명), 무응답(1명) - 하지만 이런 부분 이야기 함: 와서 더 통제받는 듯한 느낌. 어디 갈때도 계속 따라다니고 답답함. 통제받는다느 느낌은 스트레스. 화장실이나 산책이나 전화나 이런것도 다 두명이서 가야하고 밥도 다같이 모여서 움직여야 하고. 좀 심할 때는 미칠 것 같기도 함. /상담관님과 상담할 때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애가 이래서 힘들구나 하고 짐작하는 느낌. 군생활 계속하면 자살할 것 같나 물어보고 그래서 화가 났음./ 도우미 병사와 같이 다니는게 좀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 것은 사실. 나쁜건 아니지만 불편함./ 군인도 주말에는 좀 쉬었으면 하는데 토요일 오전에 교육듣고 이런거 없애 줬으면 좋겠음. 주말 보장/ 전우조 활동이란게 있어서 화장실가거나 담배필 때 무조건 한명이 따라가야함 불편./ 집단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집단으로 무언가 해야함으로써 다른 병사들에게 또다른 강제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관심병사와 분대장이 무조건
--------------------	--

	같이 붙어다녀야하는데 자주 없어져서 불편했음. 분대장들이 병사들에게 다소 무관심./ 동기들이 그린캠프 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비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없음/다만 다른 일반병사들은 잘 오지 않다보니까 애는 정신병이 있는 애구나 하고 편견을 가지는 부분이 취약하다고 느낌. 실제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 병사2: 없음/방에 티비만 있음. 공부, 책읽기, 음악감상, 도서관 이용 등은 잘 보장되지 않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음. - 병사3: 없음

9. 그린,블루캠프 입소계기/ 입소과정/ 그린,블루캠프 분위기나 느낌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군 부적응(몸이 안 좋음, 선임들의 눈치-인사하기, 예민하게 신경써야 함), 정신과(계속 약용 꾸고, 수면어려움, 불안), 군병원에서 정신과 약 진단 받음/ 상담관님이 얘기해주셔서 어떤 곳인지 잘몰라서 고민했는데, 군대같이 않은 군대라고 편하게 쉬다 오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셔서 들어오게 됨./- - 병사2: 현부심 절차를 밟기 위해 옴. 성 정체성 장애를 겪고 있어서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함. 샤워할 때나 탈의나 화장실 같은 부분이 불편하고 수치스러움. 남자들만 하는 농담을 듣기 어려움. 법적으로 남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자체도 고통스러웠음. 현부심으로 나가게 되면 스스로의 성이 여자인 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 - 병사3: 일도 인간관계도 다 지치고. 우울증이 있는데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도 하고 그래서 되게 힘든 상태였음. 그때 소대장님이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심. 이렇게 있는데 가보는 것 어떨겠냐 하셔서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희망의 동아줄 삼아 오게됨../권유를 받고 스스로도 가는데 좋겠다고 생각/- - 병사4: 남들이 스스로에게 지적하는 것을 잘 못 참고 불이익을 주거나 침해당 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좀 강하게 표현하고 분노조절장애 같은 문제로 오게 됨. 남들을 좀 때리려고 하고 욕설이나 소리지르고 이런 문제. 고등학생때부터 심해짐./행정보급관님 중대장님이 거기가면 좀 나아질 수도 있고 변하고 싶지 않느냐 하고 권하여서 처음엔 안간다고 생각 좀 해본다고 했는데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오게됨. /- - 병사5: 힘든 일이 많아서. 군 입대해서 힘들었던 부분은 간부와의 마찰(힘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비밀을 지켜준다고 해놓고 어느순간 다 알려져 있었고 오히려 악의적으로 퍼트림, 아무 이유없이 욕을 많이 먹고 차별도 받음./)병영생활 상담관 상담중에 동의. /되게 편함. 딱히 업무도 없고 불침번도 안서도 되고 자유시간도 많고 쾌적하고 청소도 잘되어 있고 - 병사6: 따돌림. 6-7개월정도 없는 취급하고 무시. 허리 다친 때문에 훈련을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군의원, 상담관님이 권유해주셨고 스스로도 가고 싶었음./자대보다는 편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7: 쉬고 싶고 현부심을 받고 싶어서 자발적 입소. 신경쇠약 항우울제 정신과약 복용중/맨 처음 전입와서 2,3월에 힘들었는데 행정보급관 님이 그린캠프에 대해 알려주셨고 4,5월 즈음에 쉬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입소/생활적인 부분은 만족하고 있음. 자대에 비해서 편해짐.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입대 전에 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힘들었던 것. 군생활 자체가 힘들어서 온게 아니라 밖에서의 트라우마의 연장선으로 우울해서 앞에 두 번 왔고, 누적되고 쌓인 심각한 상황으로 왔음. 우울 문제/ 가봐라 권유를 받아서 오게 됨/처음에는 많이 다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활발하게 지냄. - 병사2: 조리병인데 디스크 때문에 계속 근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게됨. 여기오기도 굉장히 힘들었음. 직별변경을 하고 싶어서 음./ 군의관님이 알려주셨음/ 쉬는 공간으로 안식 취하기가 좋다고 생각. 무엇보다 직별변경이나 문제점 발견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 좋음. 이곳에서는 해결책이라던가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역할을 많이 해준다고 생각 - 병사3: 사람관계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위험한 일이 많은데 본인 때문에 피해보기도하고 겁이나서 배에 있을 때 잠을 거의 못잠. 선임들이 많이 뭐라고하고 일을 못해서 불안하고 위축됨.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무서웠음. 잠을 제대로 못자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음. 전출된 부대에서 선임들과의 문제로 욕을 많이 먹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엄청 혼이 남. 상담관님이 한번 더 가보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오게됨. 두 번째 그러니까 내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오게됨. 불안의 원인을 찾기위해서 / 인성검사가 이상하게 나와서 상담관님이 따로 상담하면서 블루캠프에 대해 말씀해주심.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인식이 안좋아서 뭔가 캠프를 간다는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거절하다가 블루캠프 가면 상담을 많이 한다그래서 상담받고 싶어서 오게됨. /좋다고 생각. 고민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해주고 휴식도 충분히 보장해줌.

10. 그린/블루캠프 복귀병사들에 대한 인식/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일단 갔다오면 안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복귀하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을 거 같음. 다시 그 생활을 또 해야하니까 그것도 막막하고. 시선이 좋지 않을 것. 일상생활도 하고 면회도 하고 그러는데 업무도 안보고 근무도 안서고 그러니까.. - 병사2: 복귀해서 다시 적응할 생각에 걱정이 큼. 군생활에 염증이 많이 나서. 그린캠프가 안좋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런 인식./신병 위주로 홍보를 하면 나중에 선임이 되었을 때 그런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 병사3: 복귀해서 마음이 안좋을 것 같음. 거기 부대가 너무 싫어서 전출가고 싶어서 여기왔는데. 최소 전출이라도 가야할 것 같음. 스스로 너무 잘못을 많이 한 느낌. 너무 화를 많이 냈으니깐 지금 고친다고 해도 부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부분이 있으니 새로운 곳에서 출발하고 싶은 생각이 많

	<p>음./그린캠프에 입소한 내용을 절대 비밀로 부칠수 있도록. 비밀유지(지금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기는 하는데 소문나는경우가 많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4: अच्छ게 생각하는 병사들 비율이 많음. 애가 정신이 अच्छ다 아니면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꾀병아니냐 이렇게 색안경끼고 보는 경우도 있음./적응보다는 전출이 나올 것, 그린캠프를 거의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이 필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 - 병사5: 문제있는 병사, अच्छ게 봄. 입소했다가 돌아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음. /사실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음. 차라리 비밀보장을 확실히 해주는 쪽으로 - 병사6: 복귀하면 अच्छ은 취급 받겠구나 싶었음. - 병사7: 좋지 않은 것 같음. 정신이상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음. 또한 완전 놀기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진 곳이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병사8: 힘들어 하거나 약간 문제 있는 사람이 간다고 अच्छ게 생각. 그린캠프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정확히 홍보되어 있지 않음. - 병사9: 좋은 이미지는 아님. 심한 정신병자들만 있는 곳. 그린캠프에 가면 이상한 애 취급을 받음. 장난이나 놀리는 식으로 그린캠프에 대해서 언급함. 비밀보장이 필요한 현실이지만 조치가 불가능함.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계급이 올라가고 애들하고 말해보니까 애들이 अच्छ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블루캠프는 이상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병사나 간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병사2: 배는 특히 사람이 없어지는게 눈에 띄기 때문에 소문이 अच्छ게 나고 병사들끼리 수군거림./아예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 - 병사3: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선입견이었음. 더 잘 챙겨주고 그랬음. 더 배려해주고있다고 느낌. 본인도 선입견이 있었는데 경험적으로는 아니었음. /인권 교육할 때 강사들이 와서 블루캠프에 대해 언급을 좀 하고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अच्छ은 인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블루캠프에 대한 교육 필요.

11.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음. - 병사2: 간부나 지휘관님들이 나서서 너희들 나한테 요자 써도 된다 이렇게 장난식으로라도 얘기를 한다거나 분위기를 바꿔야 할 것 같음. - 병사3: 지금 방법들이 많이 소극적인 방법들. 개인이 익명으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헬프콜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님. 병사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절차적으로 거처다 보니 속도가 느려서 빨리 대응하지 못하는게 아쉬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4: 외출같은 것을 한달에 한번쯤은 만들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음. - 병사5: 강력한 처벌. 지금은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법을 만들어봤자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서 제대로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음. 신고자는 보호해주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해주고 - 병사6: 마음의 편지가 없어졌으면 좋겠음. 다른 병사들이 마음의 편지에 거짓으로 안좋은 얘기를 써서 내서 모함을 함. 억울한 누명. - 병사7: 잘모르겠음 - 병사8: 사용해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고. 증거를 마련했을 때 해결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폭력은 몸에 남지만 폭언 등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 병사9: 계급별로 다 같이 생활하는 데서 부조리가 생기기 때문에 계급별로 나눠서 생활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음.
블루캠프	-

12. 그린/블루캠프의 필요성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프로그램을 바꾸면 관찮을 것 같음. 잠깐이라도 피해서 있을 수 있으니까 - 병사2: 계속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 - 병사3: 그린캠프는 필요한데 인식은 바뀌어야 함. 정신병자들이 많이 간다는 인식을 대다수가 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강의나 외부단체에서 와서 교육도 좀 할 필요가 있고 병사들 개별적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함. - 병사4: 있는게 낫다고 생각. 2주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 - 병사5: 아예 없애는 것은 동의하지 않음. 조치를 입소이유별로 취해주면 관찮을 거 같음. - 병사6: 군 제도 안에서 있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낌. - 병사7: 있는게 나은거 같음. 자대에서 벗어나서 좀 쉬게 해줌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있으면 좋은 곳. - 병사2: 무조건 있어야 함. 약간은 외곽이나 아예 국방부에서 규모를 키워서 부대처럼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일반부대 복귀병사

1. 그린캠프/블루캠프 입소 전 인권침해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린캠프	- 병사1: 선임들에게 받는 부조리 아닌 부조리가 많았음, 막내라고 해야 하는 일들, 개인적인 것들을 많이 시킴. ex) 열외파악, 티비 틀고 끄는 것, 취침, 선임들의 기분에 따라 화내는 것, 언어폭력(욕설)
블루캠프	- 병사1: 함정생활보다 육상 생활이 힘들어서 배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함. 하지만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런 부분들이 인권침해는 아니지만 힘들었다고 보고함, 이후, 다른 육상에서 근무하던 장병들 몇 명이 함정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병사2: 경계근무를 서지 않아 상급자들의 대우가 나빠짐. 무시하거나, 행사 같은 일정을 이야기 해주지 않고, 미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음.

2. 그린캠프/블루캠프에 입소하게 된 계기는?

그린캠프	- 병사1: 부당한 업무지시, 선임들의 부조리, 군대에 대한 회의감(이런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싫고, 반복되는 일도 싫어서)이 있었음. 설문조사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와 상담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린캠프를 권유를 받음. 이에 응해서 가게 됨.
블루캠프	- 병사1: 지상 생활이 힘들어 함정으로 돌아가길 요청함. 하지만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힘이 들어 자원해서 오게 됨. - 병사2: 현병이었는데 경계근무(풋살로 인한 부상으로)를 들어가지 않다보니 선임들에게 안 좋게 보이게 됨. 간부님께서 블루캠프에 갈 것을 권고함.

3. 입소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습니까?

그린캠프	- 병사1: 입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는 없었음
블루캠프	- 병사1: 자원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과정상엔 문제가 없었음. 긍정적인 과정이었다고 보고함. - 병사2: 입소소장님이 권유를 했는데 갈등을 많이 했지만, 좋다고 해서 들어가게 됨.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님)

4. 그린캠프/블루캠프 기간 내에 인권침해 경험 혹은 요소가 있었습니까?

그린캠프	- 병사1: 근무도 없고, 잠 잘 수 있고 편했음. 터치하는 사람도 없어서 좋았음. 그린캠프 내에서 인권침해라고 생각할 만한 건 전혀 느끼지 못했음. 2인1조로 움직이는 것은 불편하였음. 하지만 인권침해라고 느끼진 않음.
블루캠프	- 병사1: 블루캠프에서는 불편하긴 하지만 인권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도우미 병사가 따라다니는 것, 사지방 이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블루캠프 내에서 좋았던 프로그램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 병사2: 블루캠프 내에서는 없음. 상담하고 쉬어가는 곳이라고 인식하도록 도와줌, 입소병사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많았음.
--	--

5. 부대로 복귀한 후 인권침해 경험이 있습니까?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그런 것은 없었음. 똑같았음. 열외를 시켜주거나 그런 것 없었고. 그린캠프 다녀와도 선임들의 태도변화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함.(더 무시하거나 더 힘들게 하는 건 없었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복귀 후 인권침해를 느낀 경험과 차별경험은 없음. 블루캠프를 다녀온 사람들이 전역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고함. - 병사2: 다른 부대로 옮기게 됨. 전 부대에서는 블루캠프 갔다 왔다는 것에 선입견이 심했음. ‘블루캠프 갔다 온 놈인데 뭐’ 이런식의 놀림을 받았다고 보고함.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 난 이후에는 인권침해 없음.

6. 그린캠프/블루캠프 입소로 인한 차별을 현 부대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그린캠프를 갔다 와서 생활이나 바뀐 것은 없음. 편견은 각자 있겠지만, 티를 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라고 언급함.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딱히 낙인효과나 블루캠프를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차별 없었음 - +) Q 배를 타는 동안 인권침해는 있었나? - 주말에 잠을 자지 말라고 함(이병). 예전부터 이어져온 관습 같은 것. 집합하고 그런 경우 있었음. - Q 블루캠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 좋다고 생각해서 딱히 없음. - 개인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식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간다고 생각해서 입소하는 사함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 - 복귀병사2: 부대를 옮겨와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고 선임도 좋고,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보고함.

캠프 도우미 병사

1. 입소병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경험? (있다면) 교육 효과 1~10점?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사전 교육 X 간단한 정보만 (자해위험 병사 등); 1:1 마크 아님/ 점수 5점 / 사전 정보보다 관찰 얻는 정보, 일지로 파악하는 정보 많음. - 병사2: 사전 교육 X 간단 정보(예) 우울증, 디스크 환자다 이정도)만 들음 / 5점 / 교육 듣는 것보다 직접 알아가는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 병사3: 사전 교육 X / 교육을 해주는 게 낫다고는 생각함(아예 정보를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 --> 사전 정보 주면 8점. 실수 줄일 수 있으니) - 병사4: 교육받은 적 없음. - 병사5: 교육받은 적 없음. - 병사6: 교육받은 적 없음. - 병사7: 4점 (입소병사에 대한 교육 아님). 입소병사에 대해 교육을 받는 건 아니고 군대에서 기간별로 한 번씩 하는 인권교육을 받음. 병사들이 인권침해를 받아도 제도가 100% 활용되는 게 아님. 형식적. - 병사8: 교육받은 적 없음. - 병사9: 어떤 인원들이 교육생으로 오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받음. 공식적인 교육은 없었음.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교육받은 적 없음. 프로그램 참여, 생활 중 알게 됨 - 병사2: 교육받은 적 없음. 생활 중 직접 소통하여 알게 됨. / 교육 없는 것이 나올 것 같음 (선입견으로 다가가기 힘들 듯) - 병사3: 사전 교육 X. 직접 소통하며 알게 됨. 사전 교육 하면 좋을 것 같음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게 될 듯)

2. 현 그린캠프 내 인권 보장 수준 (1~10점) / 이유는?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4점 (이유: 간부가 그린캠프 병사들에게 하는 행동(장난) 때문에.) 교육생 인권은 3~4점 (화장실 이외 흡연, 매점 등 모두 따라다녀야 함) - 병사2: 7~8점 (이유: 2점을 뺀 이유는 항상 같이 다녀야하니 감시 당한다고 생각. 8점은 언제든 상담 받고, 매점 이용, 전화도 잘 보장되고 하니.) - 병사3: 5~6점 (이유: 교육생들이 제기한 문제 처리 시간이 늦음) - 병사4: 9점. (이유: 최대한 보장하려고 다들 노력) - 병사5: 6~7점 (이유: 일반 부대에 비해 크게 문제는 없음) - 병사6: 10점 (이유: 인권에 대해 특별히 불만, 스트레스 없음) - 병사7: 7점 (이유: 병사 혼자 있는 것과 컴퓨터 이용이 제한됨. 입소병사의 경우 자살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부대입장에서 제한) (도우미) 4-6점. (이유: 간부의 통제를 받다보니 스트레스를 받게 됨. 다른 부대에 비하면 훈련은 없기 때문에 4-6점 정도.) - 병사8: 7점 (이유: 자살 경험 등의 입소병사의 개인 기록을 도우미병사가 알
------	---

	<p>고 있는 데 이 부분이 병사들 입장에서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도우미) 4-5점. (입소병사와 도우미병사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차별적 대우를 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9: 7-8점 (이유: 입소병에 대한 부조리가 없음. 교육생을 대할 때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 정신건강에 피해주지 않겠다고 생각) (도우미) 3-4점 (실수나 다른 사유로 휴가 제도를 자르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본질을 벗어나는 데서 이용함)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10점 (이유: 침해될만한 자체가 없다고 봄) - 병사2: 10점 (이유: 생활 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배려를 해줌) - 병사3: 9점 (이유: 군대라 어쩔 수 없는 부분 존재 (예: 밤 10시 이후 통화 불가능))

3. 그린캠프 내 인권침해 목적 / 들은 경험 있다면?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크게는 없는 것 같음. 간부(소대장) 도우미 대상으로 장난 침 (꼬집거나, 개인 물건(장난감) 가져가거나 하는 등) - 병사2: 교육생이 분대장(도우미)이 꼭 인솔(동행) 해야 하는 점 악용.(예)라면 아무 때나 먹고 싶다 해서 못 먹게 하면, 맑은 공기 마시고 싶다 하면서 일부러 나가게 함.) - 병사3: 분대장(도우미)끼리 싸움 생겨 현병 온 적 있음. 교육생끼리도 싸우는 경우 있었음 / 이외 분대장 휴식 보장 되지 않는 것 (항상 인솔) - 병사4: 없음. - 병사5: 없음. - 병사6: 없음. - 병사7: 없음. 지금 군에서는 폭행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상황. - 병사8: 그린캠프로 분대장 파견을 왔는데 사전공지 없이 한 달간 입소병사로 온 것처럼 함께 생활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 병사9: 행정담당관으로부터 사이버 대학 시험문제를 풀어달라는 지시가 있었음. 종교 활동을 교육의 일종이라고 강제로 참여하게 함(인성 교육 차원의 종교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도 참여)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없음 - 병사2: 없음 - 병사3: 없음

4. 그린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 (1-10점) / 좋았던, 나빴던 / 필요한 program / 그린캠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

그린캠프	<p>병사1: 3점 (크게 도움 되지 않음. 참여는 강제로 하나 참여도 낮음) 좋았던: 사회봉사. 도우미는 좋았으나, 교육생들 별로 안좋아했음 나빴던: 딱히 X 의견: 도우미(분대장) 및 교육생들 의견 수렴하여 프로그램 변화 필요.</p>
	<p>병사2: 8점 (프로그램 구성 좋으나, 참여도 너무 낮음.) 좋았던: 사회봉사 (웃음치료, 목욕봉사) 나빴던: 미술치료 등(왜 힘든지 적어라, 그러라 하는게 교육생 싫어함. 개인적 상담 원하는데 단체로 하는 것 싫음) 의견: 분대장 '파견'이 좀 불안정(6개월 파견 후 돌아감.) / 자발적 프로그램 선택 필요(참여도 높이기 위함)</p>
	<p>병사3: 2~3점 (취지와 맞지 않는. 학교 특별활동 같은 느낌) 좋았던: 음악치료 (교육생 평가도 좋음) 나빴던: 미술치료 (우울한 그림 --> 좋지 않은 주제 이야기로 교육생 힘들어함) 필요한: 활동적인 프로그램 / 견학 프로그램 필요.</p>
	<p>병사4: 9.5점. 좋았던: 전체적으로 좋음 (레크리에이션, 보드게임) 나빴던: 토피어리(이끼공예) (이유: 왜 만드는지 설명 없이 목적 모르겠음) 필요한: 전체적으로 팀을 이뤄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홍보 포스터 등 통해, 인식 개선, 홍보 필요. 의견: 프로그램 진행 교육생이 빠지고 도우미(동행병사) 참석이 오히려 더 많음</p>
	<p>병사5: 8점 좋았던: 미술치료 (무의식중에 자신에 대해 알게 됨. 치료 목적 뚜렷) 나빴던: 음악치료 (놀이처럼, 악기로 하는데 별로) 의견: 상담을 외부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조금 더 많이 시행해야 할 것 같음.</p>
	<p>병사6: 7~8점 (본인은 10점이나 교육생들이 하기 싫어하고, 억지로 하는 듯 보이는 인원도 있어서) 좋았던: 보드게임, 풍선아트, 미술치료 (참여도, 재미) 나빴던: 레크리에이션 (낯선 환경에서 서로 얘기시키고, 잘 부탁한다 시키고 등) 필요: 미술치료, 풍선아트 등 (참여도 높음. 교육생들 좋아함) 활성화: 군 신검 단계에서 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미리 걸러주어야.</p>
	<p>병사7: 캠프 자체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 입소병사들이 주로 군 생활 자체가 안 될 것 같은 병사가 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닌 병사들도 일단 오게 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음. 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함 (현재는 입소병사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만</p>

	<p>진행하고 있음)</p> <p>좋았던: 스트레스 처방 (기 처방이라 불림. 강사가 기 처방하면 다른 병사들 씬)</p> <p>나빴던: 스피치 교육, 웃음치료</p> <p>필요: 잘 모르겠음</p> <p>활성화: 교육과 쉬는 시간을 구별해서 제대로 지켜져야 함.</p> <hr/> <p>병사8: 8점. 양호하다고 생각함 (반응이 안좋은 수업을 제거하고 개선해나가는 편)</p> <p>좋았던: 요가 프로그램, 대인관계 프로그램</p> <p>나빴던: 웃음치료, 스피치 교육</p> <p>필요: 프로그램보다는 입소병사가 읽을만 한 책이 보충되었으면 함</p> <p>활성화: 캠프 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간부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함.</p> <hr/> <p>병사9: 잘 모르겠음. 예전에 비해서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함</p> <p>좋았던: 요가 프로그램, 원예 치료</p> <p>나빴던: 웃음치료, 스피치 교육</p> <p>필요: 딱히 없음</p> <p>활성화: 일요일 날 종교가는 것은 없어져야함. 사각지대에 있는 분대장들의 인권이 개선되어야 함(사적지시 등)</p>
블루캠프	<p>병사1: 5점 (지루해 하는 것도, 흥미로워 하는 것도 있어서 반반 정도)</p> <p>좋았던: 트라우마 심리치료 활동 (자연스럽게 내면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게 되는 사람 많음)</p> <p>나빴던: 음악치료 (분위기 산만. 그냥 놀이같은 느낌)</p> <hr/> <p>병사2: 8~9점 (쉬어가고, 심신의 안정 도모하나, 지루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1~2점 뺌.)</p> <p>좋았던: 트라우마 치료 (참여도 높음. 분위기 좋음. 강사 교육생의 이야기 잘 들어주고, 동기부여도 해줌.)</p> <p>필요: 조금 더 동적인 활동, 체육 활동 하면 좋을 것 같음.</p> <p>활성화: 블루캠프에 대해 더 많이 알려야 한다. (선입견 갖지 않도록) 누구나 다 녀울 수 있고, 다녀오면 득이 되는 곳임을 알렸으면 함.</p> <hr/> <p>병사3: 입소장병 입장에서는 10점 / 관리병 입장에서는 8점(지루함. 계속 들음)</p> <p>좋았던: 영화치료 (흥미 유발, 참여도 높음)</p> <p>필요: 체육활동. 문화 탐방 프로그램(영외 활동)</p> <p>활성화: 블루캠프 취지인 치유 목적에 맞게 와야지, 단순히 병심대 넘기기 위한 서류 목적으로는 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p>

5. 도우미 병사로 관찰한 결과 그린캠프 내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p>그린캠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편의시설(운동) 부족. 지나친 동행(CCTV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선 - 병사2: 건물 좁음. 편리상 문제 / 휴가 관련(도우미 병사 입장) - 병사3: 옮긴지 얼마 안되어 체계가 잘 안 잡힘. / 현부심 악용하여 전역하려고 이용하는 문제(입소 인원끼리 이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용하려는 무리도 생김) - 병사4: 개인 사생활 보장. 주말(휴식시간) 보장. 체육 활동시설 보장. - 병사5: (입소 병사들이) 상담 받을 때 불편해보이고, 할말을 다 못한 것 같이 와서 안타까움 - 병사6: 체력단련실, 사이버지식정보방 등 복지시설 미비. - 병사7: 지금은 거의 개선된 상태. 원래는 화장실갈 때도 입소병사 혼자서는 못 갔었는데 스트레스를 덜 주자는 의미에서 개선됨. - 병사8: 간부들의 관심만 있어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음. - 병사9: 개선이 많이 된 상태.
<p>블루캠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체계가 잘 잡혀있어 크게 불편한 점은 모르겠음. - 병사2: 특별히 없는 것 같음. - 병사3: 관리병이 더 필요함. 평균 5~6명 입소할 때는 괜찮으나, 지금처럼 너무 많으면(12명 입소) 실 인원이 없고 한번에 다 같이 일해야 함. 피로가 많이 쌓임 (관리병 1명당 2명정도 입소가 적정)

6. 병사들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제도 및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p>그린캠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실제 비밀보장 필요. (암암리에 병, 간부들 다 알게 됨) - 병사2: 잘 모르겠음. - 병사3: 잘 모르겠음. - 병사4: 잘 모르겠음. - 병사5: 가혹행위 사라져야. - 병사6: 잘 모르겠음 - 병사7: 건의가 된 사항에 있어서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함. - 병사8: 알고 있는 범위는 신고 시스템으로 감찰부에 신고를 하는 것, 1303정도. 다른 도우미병사가 감찰부서에 불편함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조치가 없었음. 신고했을 때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신고하기가 힘들. - 병사9: 처리가 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소원수리제도의 개선이 필요. 문제가 생겼을 시 군대를 견제할 만한 민간단체가 필요.
<p>블루캠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잘 모르겠음 - 병사2: 잘 모르겠음. - 병사3: 최근 공관병 사건처럼, 군 문제를 군 내에서만 처리하려 하기보다 민간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도움된다 생각. 군대는 신고해도 윗선에서 커트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비밀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내용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사생활 미보장 / 휴식권 미보장 개선 필요. 간부 인식변화 필요 - 병사2: 구제제도 접근성 낮음 - 병사3: 선후임간 부조리 개선 필요. (내리갈굼, 따돌림 등)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1: 육군에서처럼 자대에서 동행병사와 함께 두 명 오는 것이 나은 것 같음. (해군도 '모범병사'라 해서 둘 같이 오는 경우 있음) 이유: 같이 온 사람이 더 많이 챙겨주고 하는 모습이 많음. - 병사2: 인권 교육 더욱 확대 필요. 교육의 질도 개선 필요하고, 사병들도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필요. - 병사3: '모범병사'라 해서 자대에서 두 명 오는 것 오히려 더 불편. 똑같이 입소자라서 짐처럼 느껴질 때 있음 (숙련되어 있지 않음)

캠프 간부

1. 입소 병사들의 그린캠프/블루캠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따른 이유는?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6점 (상담이 전문적으로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음, 시설이 아무리 좋고, 상담능력이 좋아도 그 이상으로는 보지 않음) - 간부2: 8점 (환경적인 면에서 잘 되어 있음, 그린캠프에 오면 이해를 많이 해 줌) - 간부3: 5점 (평균적인 점수를 부여, 도우미가 따라다니는 것을 불편해함, 통제받는다고 생각함 반면에 그린캠프 생활의 편의성) - 간부4: 7-8점 (자대보다 편안하다고 느낌. 자대에서는 선임들과의 관계,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편) - 간부5: 7점 (상담이나 교육 후 만족하는 병사들이 많음. 캠프 내에서의 생활도 불편함이 없음)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8점 (사지방,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으로 -2점을 함, 블루캠프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보고) - 간부2: 5점 (만족해서 나가는 경우, 오히려 답답해서 나가는 경우 반반이기 때문) - 간부3: 9점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 딱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높으나,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어 -1점함)

2. 그린캠프/블루캠프 입소병사의 처우에 대한 생각은?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3점 (인권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괴롭힘, 따돌림은 없다고 봄, 하지만 도우미병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쁜 처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2: 7점 (도우미 병사들이 따라다닌다는 점이 불편하게 생각 할 것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함) - 간부3: 8점 (-2점은 전우조라고 생각함. 인권적인 부분이나 불편함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고예방 측면에서는 전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간부4: 8점 (딱히 인권적인 처우에서 힘들어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음. 좋아서 8점이 아니라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8점 부여) - 간부5: 7-8점 (개인 자유 시간을 최대한 보장. 흡연, 빨래건조, 샤워 등 안전상의 통제를 이유로 -2점함)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10점 (아무리 병장이라도 들어오면 인권적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 부당한 대우는 블루캠프 내에서는 목격하지 못했음) - 간부2: 3-4점 (부대에서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부적응 병사들,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있기 힘들니까 블루캠프로 보내버리자 라는 식의 인식이 많음. 따라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좋은 처우/대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음_ 이런 상황을 임을 인식하는 병사들도 있기 때문) - 간부3: 10점 (원하는 바대로 해주고 있음, 블루캠프는 목적자체가 힐링, 선도치유임. 정신적으로 혹은 병리적인 아이들은 블루캠프를 건너뛰고 병심대 쪽으로 보내짐, 블루캠프는 목적과 맞는 아이들을 입소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입소병사에 대한 처우가 좋다고 생각함)

3. 그린캠프/블루캠프 내에서 기간병(도우미병사)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은?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도우미병사에게 안전교육(사고대처)에 대해 교육함. 군무 이탈에는 어떻게, 흥기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등. - 간부2: 도우미들 입소 시, 별도로 교육을 시킴. 얼마나 도우미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 교육.(도우미, 입소병사 모두 다 교육함) - 간부3: 입소인원이 정해지면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술함. 취약성이나 사고 위험성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사전교육을 실시함 - 간부4: 따로 진행하는 교육은 없음. 월 2주 그린캠프 운영기간이 끝나면 상시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분대장(도우미병사) 간담회를 함. 그린캠프를 진행하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 발생 가능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분대장들에게 교육을 함. 개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토론. - 간부5: 공백기를 이용해 일주일정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짐. 그린캠프 존재 목적과 분대장의 자질을 언급하며 분대장이 교육생을 대하는 마음이나 역할 등을 교육함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사전교육이 있음. 기물파손, 상호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입소병사에게 즉각적인 퇴출이 있다고 교육. 사전 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관리병이 항상 직접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간부2: 정형화된 교육은 아니고, 입소자들에 대한 정보 브리핑을 해주고 주의

	<p>해달라는 교육을 함. 관리병에게 계급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3: 입소병사에 대한 정보는 간부들만 알고 있음, 전반적인 내용만 교육, 상담기법교육, 교육시간은 1-2시간동안 진행함.
--	--

4. 인권교육을 받았던 경험, 어디서? 누구에게?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작년 12월경, 육군본부에서 전체 인권 교육을 받음. 인권교육 자체만이 아닌 자살예방교육과 병행해서 진행 - 간부2: 인권교육은 2년 전부터 1년에 2번 실시함. 부대 안에서 한 번 받았음, 전문강사에게 교육받음 - 간부3: 분기별로 하는 교육을 받음, 법무검찰관, 법무 실장에게 받았음 - 간부4: 사단 법무부(법무참모)에서 받음. 몇 달 전 중앙사단평가회의 할 때 여러 간부들을 모아놓고 인권교육을 한 적이 있었음(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인권교육을 간단하게 하고 회의를 진행함) - 간부5: 법무참모에서 받음. 대대에서는 지휘관을 통해 받음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외부강사, 분기별로 한 번 씩. 인권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받은 교육은 한 번 정도인 것 같음. 다양한 프로그램과 병행 - 간부2: 사령부, 정훈장교가 해줌,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았던 것 같음. 인권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받음 - 간부3: 법무실에서 주관 1년에 2번 정도, 부사관이상 동일함.

5. 인권교육은 ①어떤 효과가 있었나? ②인상 깊었던 점? ③개선되어야 할 점은?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①교육 인원이 많고(40명), 너무 주입식 교육이다 보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함. ②너무 주입식 교육이라 인상 깊었던 것 없음. - 간부2: ①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좋았음. ②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좋았음 ③교육하는 사람이 군 안에서 하는 일, 군 특성에 대한 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것으로 인해 생기는 의견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음 - 간부3: ①크게 효과는 없었음.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함. ②인권침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고 와 닿지 않았음. ③너무 주제가 폭 넓음. 인권이라는 것이 너무 넓은 것 같음. - 간부4: ① 효과가 있었다기 보다는, 듣고 이해하는데 괜찮았다고 함. ②인권에 대한 중요성,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시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경각심을 느낌. ③웬만한 내용은 지금 현 교육에서 다루는 것 같음(현재 인권교육에 만족함) - 간부5: ① 효과 있음.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망각했던 부분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음 ② 병사의 자유 시간 보장에 대한 내용 ③ 홍보차원의 부족(인권에 대한 의식이나 예방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함)
-------------	--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①효과가 있었던 것 같음 ②인상깊었던 기억 없음 ③개선방안 잘 모르겠음 - 간부2: ①인권에 대해 인식은 하게 됨,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음. ②인상 깊었던 부분 잘 모르겠음 ③개선방안 잘 모르겠음 - 간부3: ①형식적으로 들어서 잘 모르겠음 ②인상 깊었던 부분 잘모르겠음 ③ 법령교육부분이 어려워서 이 부분 개선
-------------	---

6. 그린캠프/블루캠프 내 인권침해에 대한 생각은?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인권침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분대장도 일반 용사일 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 간부2: 낙인효과가 가장 문제점_돌아가서 적응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음. 그린캠프를 전역을 위한 도구로 혹은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점임. - 간부3: 전우조 활동이 인권침해인가에 대한 의문. 사고예방에 대해서는 전우조 활동이 필요하다고 봄. 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우조 활동이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을 듯 함. - 간부4: 보장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함. 병사들의 사고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군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 - 간부5: 그린캠프 운영 목적상 안전상의 이유로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침해가 발생. 그 외에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지는 않음.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없음 - 간부2: 딱히 없음 - 간부3: 없다고 생각함. 타 부대인 경우, 일반병사와 블루캠프 입소병사를 함께 지내게 함. 건물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한 층을 블루캠프로 사용하고 있음. 이런 부분은 인권침해로 볼 수도 있을 듯함.

7. 일반부대와 달리 그린캠프/블루캠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는?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린캠프 내에서 인권이 침해될 만한 특별한 일 없음 - 간부2: 명찰에 차이가 있음. 식별이 가능함.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는 별로 없음 - 간부3: 전우조 활동(일반부대의 멘토 멘티와 비슷하다고 볼 순 있겠지만, 일반부대에서는 도와주는 역할인 반면에, 그린캠프에서는 좀 많은 통제로 인해 인권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간부4: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병사들이 이동할 때 유동병력현황판을 작성하게 함(이동 시 현황판을 작성해야 하고, 건물 외부로 나갈 때는 분대장이 항상 동행해야 함). 캠프 내 설치되어 있는 방법창에 대해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느끼는 병사가 있었음 - 간부5: 흡연을 할 때, 샤워 시, 세탁 후 빨래 건조장에 갈 때 분대장이 동행
-------------	---

	해야 함. 이동시 유동병력현황판을 작성하여 표시해야 함
블루캠프	- 간부1,2: 인권침해 없음 - 간부3: 전우조 활동(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필요한 것 이라고 생각함)

8. 간부들이 받는 인권침해는?

그린캠프	- 간부1: 크게 그럴 일 없음. 하지만 소속은 1 보충대이고. 업무는, 인사 근무 과에서 하다 보니 이게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음. - 간부2: 그린캠프 간부로서 타 부대들보다 통제가 있음, 훈련이 우선이지 캠프 가 우선이나 이런 식으로 계획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 - 간부3,5: 없음 - 간부4: 크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낀 적 없음.
블루캠프	- 간부1: 더 높은 직급의 간부가 욕을 한다던지 하는 경험을 겪음 - 간부2: 딱히 없음

9. 인권침해 구제제도 이용이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그린캠프	- 간부1: 아직은 별로 없다고 봄. 군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무 쪽인데, 그 곳은 주로 사고 조사 위주로만 하지 인권 위주로는 하지 않음. - 간부2: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함. 주로 국방 헬프콜 이용함. - 간부3: 증가하였다고 생각함. 다양한 제도들이 많이 알려져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 헬프콜, 헌병감찰 설문지. 마음의 편지를 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보고함. - 간부4: 작년이랑 비슷한 것 같음. - 간부5: 변화없음
블루캠프	- 간부1: 조금 증가하였다. 국방 헬프콜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음. - 간부2: 조금 증가함. 요즘들어 매체나 티비로 많이 방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한 걸로 신고하는 것 같기도 함. - 간부3: 매우 증가하였음. 장병들이 거의 헬프콜 번호를 다 알고 있고, 그 외 의 경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10. 현재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어디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린캠프	- 간부1: 응답 없음 - 간부2: [설문지28]번 거의 모든 답에 체크함. 군에 있는 모든 간부나 대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 간부3: 부대 내에서 파악하는 것, 해결은 어차피 부대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	---

	<p>없다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4: 군 내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함. 하지만 현재는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 외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간부5: 군대 특성상 상급부대와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음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부대 내의 지휘관이나 주임원사를 통해 먼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차적인 경로로 지휘관을 통해 먼저 알리고 그 이후에 국방헬프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헌병수사대도 효과적일 것임 - 간부2: 군 기관과 상관없는 시설에서 시행, NGO같은. 군 내에서 일어난 일을 군인들이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 간부3: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휘관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함. 고충을 듣고 난 후에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1.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부대를 한 번씩 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봄, 이런 기관이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상담을 받거나, 방문하여 호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채널에 대한 홍보(팜플렛)가 필요함. - 간부2: 군대다 보니 인권에 대해 잘 이야기 안함,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 같은 부분을 개선시켜야 함. 인권교육을 후반기 전반기가 아닌 좀 더 자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임. - 간부3: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의견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너무 피해자 중심이면 이차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제도적으로는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을 권고함. 이 부분에서 비밀보장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음. - 간부4: 군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병사들은 군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불이익, 조치미흡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제도에 대한 악용을 막을 수 있음. - 간부5: 징병제 자체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 모병제를 통해서 원하는 인원만 입대한다면 문제가 줄어들 것임. 징병제 하에서는 병사들 간의 계급이 가장 문제임. 계급을 없애고 호봉수나 분대장만 선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함
블루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1: 장병들의 구제 보호 및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남발하고,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 너무 인권적인 측면만 보호를 해주려고 하면 이를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 간부2: 신고를 하면 주의 사람들이 거의 다 앓. 익명성 보장이 미비함, 블루캠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간부3: 너무 과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이를 악용함.

의견조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제안에 의해 수행되는 설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나 응답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52조(비밀누설의 금지)**에 의해 절대 **비밀보장**이 되며, 설문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한 문항, 한 문항이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응답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설문지의 질문들은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2. 내용을 끝까지 잘 읽으신 다음,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해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안내에 따라 각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국 가 인 권 위 원 회

1. 귀하의 계급이 무엇입니까?

-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 병장

2. 소속 군은 무엇입니까?

- ① 육군 ② 해군 ③ 해병대 ④ 공군

3. 귀하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

※ 4번부터 10번까지는 군 내 인권교육경험 관한 문항입니다.

4. 이전에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르겠다 (11번으로 이동)

5. 인권교육을 받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② 인권보호 모범 사례 및 침해 사례
③ 인권 침해 시 권리 구제 제도의 구체적 이용 방법
④ 인권 정책 및 규정의 이해
⑤ 기타 (_____)

6. 받았다면 인권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훈련소 ② 자대 ③ 그린/힐링캠프

7. 입대 후 인권교육을 받았다면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10회 ⑤ 11회 이상

8. 인권교육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분대장 ② 부사관 ③ 소대장 ④ 중대장 ⑤ 대대장 이상 지휘관
⑥ 참모장교 ⑦ 외부강사

9. 인권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까?

- ① 개선되었다 ② 변화 없다 ③ 저하되었다

10. (9에서 ②또는 ③에 답하였다면) 인권 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인권 교육이 형식적이다
② 인권 교육을 받아도 상급자들이 변화가 없다
③ 인권이 침해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
④ 기타 (_____)

※ 11번부터 24번까지는 인권침해 구제제도 관한 문항입니다.

11.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나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방부 등 상급 부대 ② 법무, 헌병, 검찰 등 군 내부 기관 ③ 지휘관
- ④ 장교 ⑤ 부사관 ⑥ 병사
- ⑦ 국가인권위원회 ⑧ 국민권익위원회 ⑨ 외부 NGO 단체
- ⑩ 기타 (_____)

12. 이전에 비해 병사들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 또는 구제 요청 이용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증가하지 않았다 ② 변화 없다 ③ 조금 증가하였다 ④ 매우 증가하였다

13. (12에 ① 또는 ② 에 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휘관의 인식, 의지 등의 문제
- ② 구제 방법에 대한 병사 교육 미흡
- ③ 구제 방법 자체의 문제성
- ④ 구제 방법 활용 여건 문제
- ⑤ 인권침해 사례 감소
- ⑥ 상급자의 제지
- ⑦ 기타 (_____)

14. 현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어느 기관이나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지휘관 및 주임원사 ② 인사부서 ③ 감찰부서
- ④ 법무부서 ⑤ 헌병 ⑥ 국가인권위원회
- ⑦ 국민권익위원회 ⑧ 외부 NGO단체 ⑨ 기타(_____)

15.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르다 ② 별로 아는 것이 없다 ③ 조금 안다 ④ 상당히 알고 있다

21. 다음은 인권침해 구제방법에 대한 경험 유무와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구제제도 중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만족도를 표시해주세요.

구제방법	경험 유무		만족도					불만족 이유
	있다	없다	전혀 만족하지 않음	거의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에서 ①,②에 답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주된 이유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① 비밀보장이 안됨 ②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 불이익을 받음 ④ 신고자 신상에 영향 미침 ⑤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⑥ 처리결과 통보 안됨 ⑦ 사건 재발방지 노력 미흡 ⑧ 기타 () </div>
1.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지휘관과의 대화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국민권익위원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외부 NGO 단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국방신문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국방 헬프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2. 만약 구제방법을 전혀 이용해보지 않은 경우 문제를 제기해본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② 구제 방법을 알지 못해서
- ③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④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 ⑤ 구제 방법으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 ⑥ 기타 (_____)
- ⑦ 해당사항 아님(구제 방법 사용 경험 있음)

23. 다음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각각의 구제방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운영실태)에 대한 문항입니다

구제방법	운영실태					이유
	전혀 운영되지 않음	거의 운영되지 않음	잘 운영됨	매우 잘 운영됨	잘 모르겠음	
						* 운영 실태에서 ①,②에 답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주된 이유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비밀보장이 안됨 ②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 불이익을 받음 ④ 부대 분위기 및 단결에 영향 줌 ⑤ 접근성이 떨어짐 ⑥ 간부들의 인식 부족 ⑦ 기타 (_____)
1.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	①	②	③	④	⑤	
2. 지휘관과의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①	②	③	④	⑤	
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①	②	③	④	⑤	
5.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①	②	③	④	⑤	
6.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①	②	③	④	⑤	
7.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8. 국민권익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9. 외부 NGO 단체	①	②	③	④	⑤	
10. 국방 신문고	①	②	③	④	⑤	
11. 국방 헬프콜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⑤	

24. 귀하는 군 내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다면 어떤 구제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 내 사법제도 이용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지휘관과의 대화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지휘관 및 상급자에게 보고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외부 NGO 단체에 진정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국방 신문고 이용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국방 헬프콜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부모님, 친지, 친구에게 알림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기타 ()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25번, 26번은 인권침해에 관한 문항입니다.

25. 아래의 문항 중 그린캠프 입소 전 겪었던 인권침해가 있다면 아래에서 체크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구타, 가혹행위(신체폭력) ②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 ③ 사생활 침해 ④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⑤ 휴식권 미보장 ⑥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예. 사적 심부름)
- ⑦ 정서적 학대(예. 무시, 따돌림) ⑧ 고의적인 고충처리 방해
- ⑨ 기타() ⑩ 없음

26. 아래에 제시된 문항을 읽고 그린캠프 내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그린캠프 입소를 원하지 않았지만 입소하게 되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입소의 이유를 듣지 못하였거나, 캠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그린캠프에 입소하게 되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구타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개인 고충을 상급자에게 알렸다고 괴롭히고 질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상급자들이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지시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 지시, 간섭을 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자유 시간, 정비시간, 자기계발 시간 등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생필품(보급품) 보급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기에 어렵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그린캠프 내에 마땅히 실 만한 곳이 없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개인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 시설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화장실, 세면장, 목욕탕 등의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의료 시설이나 의료 도구 지원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입소병사에 대한 보호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전화기 등과 같은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구타, 가혹행위 및 폭언을 목격하거나 당해도 보고하지 않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고민이나 건의사항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 상담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계급과 직책의 권위의식으로 인해 위압감을 느낍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27번부터 32번까지는 복무부적응병사에 관한 문항입니다.

27. 귀하는 도움·배려병사 관리 제도가 복무부적응 병사의 군대 적응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상당히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28. 도움이 되지 않는다(27번에 ①번이나 ②번에 응답)고 응답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_____)

29. 도움이 된다(27번에 ④번이나 ⑤번에 응답)고 응답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_____)

30. 귀하는 그린캠프 제도가 복무부적응 병사의 군대 적응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 ④ 상당히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31. 도움이 되지 않는다(30번에 ①번이나 ②번에 응답)고 응답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_____)

32. 도움이 된다(30번에 ④번이나 ⑤번에 응답)고 응답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_____)

※ 33번부터 37번까지는 그린캠프 복귀병사에 관한 문항입니다.

33. 그린캠프 복귀병사들이 겪는 인권침해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구타, 가혹행위(신체폭력) ②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 ③ 사생활 침해 ④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⑤ 휴식권 미보장 ⑥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예. 사적 심부름)
- ⑦ 정서적 학대(예. 무시, 따돌림) ⑧ 고의적인 고충처리 방해
- ⑨ 기타(_____) ⑩ 없음

34. 그린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좋지 않다 ② 별로 좋지 않다 ③ 약간 좋다 ④ 상당히 좋다

35.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36. 귀하는 그린캠프 복귀병사들이 받고 있는 차별, 편견,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 강사의 강의 및 교육 ② 관련 영상 시청 ③ 동료병사 및 간부와의 대화
④ 인식개선 캠페인 ⑤ 기타 ()

37. 병사들의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중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도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조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제안에 의해 수행되는 설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나 응답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52조(비밀누설의 금지)**에 의해 절대 **비밀보장**이 되며, 설문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한 문항, 한 문항이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응답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설문지의 질문들은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2. 내용을 끝까지 잘 읽으신 다음,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해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안내에 따라 각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7 월

국 가 인 권 위 원 회

1. 귀하의 계급이 무엇입니까?

-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 병장

2. 소속 군은 무엇입니까?

- ① 육군 ② 해군 ③ 해병대 ④ 공군

3. 귀하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

※ 4번부터 10번까지 인권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4. 입대 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르겠다 (11번으로 이동)

5. 인권교육을 받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다? (복수응답 가능)

- ①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 ② 인권보호 모범 사례 및 침해 사례
- ③ 인권 침해 시 권리 구제 제도의 구체적 이용 방법
- ④ 인권 정책 및 규정의 이해
- ⑤ 기타 (_____)

6. 인권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훈련소 ② 자대 ③ 그린/힐링캠프

7. 입대 후 인권교육을 받았다면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10회 ⑤ 11회 이상

8. 인권교육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분대장 ② 부사관 ③ 소대장 ④ 중대장 ⑤ 대대장 이상 지휘관
- ⑥ 참모장교 ⑦ 외부강사

9. 인권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까?

- ① 개선되었다 ② 변화 없다 ③ 저하되었다

10. (9에서 ②또는 ③에 답하였다면) 인권 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인권 교육이 형식적이다
- ② 인권 교육을 받아도 상급자들이 변화가 없다
- ③ 인권이 침해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
- ④ 기타 (_____)

※ 11번부터 19번까지는 일반부대 내 인권침해와 구제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11. 병사들의 인권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폭력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②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 ③ 의식주
- ④ 통신 (가족, 친구, 애인과 연락) ⑤ 월급 ⑥ 내무시설
- ⑦ 종교활동의 제한 또는 강요 ⑧ 휴식권 미보장 ⑨ 기타 (_____)

12. 귀하는 현재 군에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② 조금 있다고 생각한다
③ 조금 많다고 생각한다 ④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13. 다음은 인권침해 구제방법에 대한 경험 유무와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구제제도 중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만족도를 표시해주세요.

구제방법	경험 유무		만족도					불만족 이유 *만족도에서 ①,②에 답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주된 이유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비밀보장이 안됨 ②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 불이익을 받음 ④ 신고자 신상에 영향 미침 ⑤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⑥ 처리결과 통보 안됨 ⑦ 사건 재발방지 노력 미흡 ⑧ 기타 ()
	있다	없다	전혀 만족하지 않음	거의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1.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지휘관과의 대화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국민권익위원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외부 NGO 단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국방신문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국방 헬프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만약 구제방법을 전혀 이용해보지 않은 경우 문제를 제기해본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② 구제 방법을 알지 못해서
- ③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④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 ⑤ 구제 방법으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 ⑥ 기타 (_____)
- ⑦ 해당사항 아님(구제 방법 사용 경험 있음)

15. 다음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각각의 구제방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운영실태)에 대한 문항입니다

구제방법	운영실태					이유
	전혀 운영되지 않음	거의 운영되지 않음	잘 운영됨	매우 잘 운영됨	잘 모르겠음	
						* 운영 실태에서 ①,②에 답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주된 이유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비밀보장이 안됨 ②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 불이익을 받음 ④ 부대 분위기 및 단결에 영향 줌 ⑤ 접근성이 떨어짐 ⑥ 간부들의 인식 부족 ⑦ 기타 (_____)
1.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	①	②	③	④	⑤	
2. 지휘관과의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①	②	③	④	⑤	
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①	②	③	④	⑤	
5.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①	②	③	④	⑤	
6.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①	②	③	④	⑤	
7.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8. 국민권익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9. 외부 NGO 단체	①	②	③	④	⑤	
10. 국방 신문고	①	②	③	④	⑤	
11. 국방 헬프콜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⑤	

16.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나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방부 등 상급 부대 ② 법무, 헌병, 검찰 등 군 내부 기관 ③ 지휘관
- ④ 장교 ⑤ 부사관 ⑥ 병사
- ⑦ 국가인권위원회 ⑧ 국민권익위원회 ⑨ 외부 NGO 단체
- ⑩ 기타 (_____)

17. 이전에 비해 병사들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 또는 구제요청 이용이 많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증가하지 않았다 ② 변화 없다 ③ 조금 증가하였다 ④ 매우 증가하였다

18. (17번에 ① 또는 ② 에 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휘관의 인식, 의지 등의 문제
- ② 구제 방법에 대한 병사 교육 미흡
- ③ 구제 방법 자체의 문제성
- ④ 구제 방법 활용 여건 문제
- ⑤ 인권침해 사례 감소
- ⑥ 상급자의 제지
- ⑦ 기타 (_____)

19. 현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어느 기관이나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지휘관 및 주임원사 ② 인사부서 ③ 감찰부서
- ④ 법무부서 ⑤ 헌병 ⑥ 국가인권위원회
- ⑦ 국민권익위원회 ⑧ 외부 NGO 단체 ⑨ 기타 (_____)

※ 20번부터는 그린캠프 내 인권침해에 관한 문항입니다.

20. 아래 제시된 문항을 읽고 그린캠프 내에서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험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구타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 - 입소병사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 - 개인 고충을 상급자에게 알렸다고 괴롭히고 질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 - 상급자들이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지시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 지시, 간섭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자유 시간, 정비시간, 자기계발 시간 등의 사생활이 보장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그린캠프 내에서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그린캠프 내에 마땅히 실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그린캠프 내에 개인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그린캠프 내에 화장실, 세면장, 목욕탕 등의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그린캠프 내에 의료 시설이나 의료 도구 지원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입소병사에 대한 보호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그린캠프 내에 전화기 등과 같은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구타, 가혹행위 및 폭언을 목격해도 보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영창, 휴가 제한 등의 과도한 징계를 받더라도 항소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1. 병사들의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중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도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조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제안에 의해 수행되는 설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나 응답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52조(비밀누설의 금지)에 의해 절대 **비밀보장**이 되며, 설문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한 문항, 한 문항이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응답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설문지의 질문들은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2. 내용을 끝까지 잘 읽으신 다음,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해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안내에 따라 각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7 월

국 가 인 권 위 원 회

1. 귀하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 | | | | | |
|------|------|------|------|------|
| ① 하사 | ② 중사 | ③ 상사 | ④ 원사 | ⑤ 소위 |
| ⑥ 중위 | ⑦ 대위 | ⑧ 소령 | ⑨ 중령 | ⑩ 대령 |

2. 소속 군은 무엇입니까?

- | | | | |
|------|------|-------|------|
| ① 육군 | ② 해군 | ③ 해병대 | ④ 공군 |
|------|------|-------|------|

3. 귀하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

※ 4번부터 10번까지는 인권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4.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르겠다 (11번으로 이동)

5. 인권교육을 받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② 인권보호 모범 사례 및 침해 사례
③ 인권 침해 시 권리 구제 제도의 구체적 이용 방법
④ 인권 정책 및 규정의 이해
⑤ 기타 (_____)

6.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10회 ⑤ 11회 이상

7. 인권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교육기관 (9번으로 이동) ② 자대 (8번으로 이동) ③ 사이버 인권교육 (9번으로 이동)

8. (7번에서 ② 에 답하였다면) 인권교육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 ① 부대의 상관 및 정훈장교 ② 군 전문 강사 ③ 외부 전문강사 ④기타(_____)

9. 인권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까?

- ① 개선되었다 ② 변화 없다 ③ 저하되었다

10. (9번에서 ② 또는 ③ 에 답하였다면) 인권 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인권 교육이 형식적이다
② 인권 교육을 받아도 상급자들이 변화가 없다
③ 인권이 침해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
④ 기타 (_____)

※ 11번부터 22번까지는 그린 캠프 내 입소 병사에 관한 문항입니다.

11. 현재 그린캠프 입소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처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대체로 좋다 ④ 매우 좋다

12. 그린캠프 입소 병사들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3. (12번에 ① 에 답하였다면) 주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그린캠프 입소 병사들에게 인권 관련 문제가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① 해당 병사를 불러 해결한다
- ② 당사자가 아닌 분대장 등 선임병을 통해 해결한다
- ③ 해당 지휘계통으로 보고해 해결하게 한다
- ④ 징계, 사법처리 등 사법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게 한다
- ⑤ 기타 (_____)

15. 그린캠프 입소 병사들의 인권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폭력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②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 ③ 의식주
- ④ 통신 (가족, 친구, 애인과 연락) ⑤ 월급 ⑥ 내무시설
- ⑦ 종교 활동의 제한 또는 강요 ⑧ 휴식권 미보장 ⑨ 기타 (_____)

16. 그린캠프 입소 병사들이 그린캠프에 오게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 중에서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 ① 부당한 명령 및 처벌 ② 비합리적인 군대 문화 ③ 열악한 근무환경 ④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 ⑤ 보직 불만족 ⑥ 고된 훈련 ⑦ 선임병과의 갈등 ⑧ 가정문제
- ⑨ 여자친구 문제 ⑩ 제대 후 진로 부담감 ⑪ 성격문제 ⑫ 많은 암기 및 교육
- ⑬ 비자발적 입대 ⑭ 성문제 ⑮ 기타(_____)

17. 귀하가 주로 접한 그린캠프 입소 병사의 유형을 다음 중에서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 ① 소와 따돌림 당하는 병사 ② 태도불량 및 명령불복종 하는 병사
- ③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는 병사 ④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
- ⑤ 잦은 실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 ⑥ 신체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병사
- ⑦ 기타(_____)

18. 그린 캠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소 병사의 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9. (18번에 ③ 또는 ④ 에 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휘, 통제 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 ② 병사의 효율적 군복무 적응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 ③ 기타(_____)

20. 그린캠프 입소 병사들이 겪는 피해사항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피해사항 예시 : 사적인 명령,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성희롱, 기타]

- ① 구타, 가혹행위 ②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 ③ 사생활 침해 ④ 성추행
- ⑤ 휴식권 미보장 ⑥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 ⑦ 정서적 학대(예. 무시, 따돌림) ⑧ 고의적인 고충처리 방해
- ⑨ 기타(_____)
- ⑩ 없음

21. 그린캠프 입소 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① 피해자에게 참도록 설득 ②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합의를 유도
- ③ 피해자의 피해상황 파악 후 가해자 처벌 ④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처우개선
- ⑤ 군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음
- ⑥ 기타(_____)

22. 그린캠프 입소 병사에게 일어나는 피해사항을 처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 ① 근무평정에 대한 불이익 ② 부적응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 ③ 처리제도 미비 ④ 부대 기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⑤ 병사 요구사항(보직변경, 전역요구 등) 처리 ⑥ 기타(_____)

※ 23번부터 30번까지는 일반 부대에 관한 문항입니다.

23. 복무 부적응 병사 문제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상당히 있다

24. 현재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좋지 않다 ② 별로 좋지 않다 ③ 약간 좋다 ④ 상당히 좋다

25.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나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방부 등 상급 부대 ② 법무, 헌병, 검찰 등 군 내부 기관 ③ 지휘관
④ 장교 ⑤ 부사관 ⑥ 병사
⑦ 국가인권위원회 ⑧ 국민권익위원회 ⑨ 외부 NGO 단체
⑩ 기타 (_____)

26. 이전에 비해 병사들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 또는 구제 요청 이용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증가하지 않았다 ② 변화 없다 ③ 조금 증가하였다 ④ 매우 증가하였다

27. (26번에 ① 또는 ② 에 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휘관의 인식, 의지 등의 문제
② 구제 제도에 대한 병사 교육 미흡
③ 구제 제도 자체의 문제성
④ 구제 제도 활용 여건 문제
⑤ 인권침해 사례 감소
⑥ 기타 (_____)

28. 현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어느 기관이나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지휘관 및 주임원사 ② 인사부서 ③ 감찰부서
④ 법무부서 ⑤ 헌병 ⑥ 국가인권위원회
⑦ 국민권익위원회 ⑧ 외부 NGO단체 ⑨ 기타 (_____)

29. 병사들의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중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도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 병사들의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해 법,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 견 조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제안에 의해 수행되는 설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나 응답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52조(비밀누설의 금지)**에 의해 절대 **비밀보장**이 되며, 설문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한 문항, 한 문항이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응답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설문지의 질문들은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2. 내용을 끝까지 잘 읽으신 다음,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해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안내에 따라 각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7 월

국 가 인 권 위 원 회

1. 귀하의 계급이 무엇입니까?

-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 병장

2. 소속 군은 무엇입니까?

- ① 육군 ② 해군 ③ 해병대 ④ 공군

3. 귀하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

※ 4번부터 10번까지 인권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4. 입대 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르겠다 (11번으로 이동)

5. 인권교육을 받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② 인권보호 모범 사례 및 침해 사례
③ 인권 침해 시 권리 구제 방법의 구체적 이용 방법
④ 인권 정책 및 규정의 이해
⑤ 기타 (_____)

6. 인권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훈련소 ② 자대 ③ 그린/힐링캠프

7. 입대 후 인권교육을 받았다면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10회 ⑤ 11회 이상

8. 인권교육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분대장 ② 부사관 ③ 소대장 ④ 중대장 ⑤ 대대장 이상 지휘관
⑥ 참모장교 ⑦ 외부강사

9. 인권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까?

- ① 개선되었다 ② 변화 없다 ③ 저하되었다

10. (9번에서 ② 또는 ③ 에 답하였다면)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인권 교육이 형식적이다
② 인권 교육을 받아도 상급자들이 변화가 없다
③ 인권이 침해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
④ 기타 (_____)

※ 11번부터 19번까지는 인권침해와 구제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11. 병사들의 인권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폭력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②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 ③ 의식주
④ 통신 (가족, 친구, 애인과 연락) ⑤ 월급 ⑥ 내무시설
⑦ 종교활동의 제한 또는 강요 ⑧ 휴식권 미보장 ⑨ 기타 (_____)

12. 귀하는 현재 군에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 ② 조금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조금 많다고 생각한다
- ④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13. 다음은 각각의 구제제도에 대한 경험 유무와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구제제도 중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만족도를 표시해주세요.

구제방법	경험 유무		만족도					불만족 이유
	있 다	없 다	전 혀 만 족 하 지 않 음	거 의 만 족 하 지 않 음	조 금 만 족	상 당 히 만 족	매 우 만 족	*만족도에서 ①,②에 답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주된 이유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비밀보장이 안됨 ②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 불이익을 받음 ④ 신고자 신상에 영향 미침 ⑤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⑥ 처리결과 통보 안됨 ⑦ 사건 재발방지 노력 미흡 ⑧ 기타 ()
1.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지휘관과의 대화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국민권익위원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외부 NGO 단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국방신문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국방 헬프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만약 구제방법을 전혀 이용해보지 않은 경우 문제를 제기해본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② 구제 방법을 알지 못해서
- ③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④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 ⑤ 구제 방법으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 ⑥ 기타 (_____)
- ⑦ 해당사항 아님(구제 방법 사용 경험 있음)

15. 다음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각각의 구제방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운영실태)에 대한 문항입니다.

구제방법	운영실태					이유 * 운영 실태에서 ①,②에 답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주된 이유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비밀보장이 안됨 ②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 불이익을 받음 ④ 부대 분위기 및 단결에 영향 줌 ⑤ 접근성이 떨어짐 ⑥ 간부들의 인식 부족 ⑦ 기타 (_____)
	전혀 운영되지 않음	거의 운영되지 않음	잘 운영됨	매우 잘 운영됨	잘 모르겠음	
1.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	①	②	③	④	⑤	
2. 지휘관과의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①	②	③	④	⑤	
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①	②	③	④	⑤	
5.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①	②	③	④	⑤	
6.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①	②	③	④	⑤	
7.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8. 국민권익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9. 외부 NGO 단체	①	②	③	④	⑤	
10. 국방 신문고	①	②	③	④	⑤	
11. 국방 헬프콜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⑤	

16. 군 내 인권침해 방지하기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나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방부 등 상급 부대 ② 법무, 헌병, 검찰 등 군 내부 기관 ③ 지휘관
- ④ 장교 ⑤ 부사관 ⑥ 병사
- ⑦ 국가인권위원회 ⑧ 국민권익위원회 ⑨ 외부 NGO 단체
- ⑩ 기타 (_____)

17. 이전에 비해 병사들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 또는 구제요청 이용이 많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증가하지 않았다 ② 변화 없다 ③ 조금 증가하였다 ④ 매우 증가하였다

18. (17번에서 ① 또는 ② 에 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휘관의 인식, 의지 등의 문제
- ② 구제 방법에 대한 병사 교육 미흡
- ③ 구제 방법 자체의 문제성
- ④ 구제 방법 활용 여건 문제
- ⑤ 인권침해 사례 감소
- ⑥ 상급자의 제지
- ⑦ 기타 (_____)

19. 현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어느 기관 및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지휘관 및 주임원사 ② 인사부서 ③ 검찰부서
- ④ 법무부서 ⑤ 헌병 ⑥ 국가인권위원회
- ⑦ 국민권익위원회 ⑧ 외부 NGO 단체 ⑨ 기타 (_____)

※ 20번부터 23번까지는 복무부적응 병사에 관한 문항입니다.

20. 귀하가 경험해본 복무부적응병사의 유형을 골라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소외·따돌림 당하는 병사 ② 태도불량 및 명령불복종 하는 병사
- ③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는 병사 ④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
- ⑤ 잦은 실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 ⑥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병사
- ⑦ 기타 (_____) ⑧ 없음

21. 복무부적응병사 문제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은?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상당히 있다

22. 현재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처우는?

- ① 전혀 좋지 않다 ② 별로 좋지 않다 ③ 약간 좋다 ④ 상당히 좋다

23. 복무부적응 병사들이 겪는 피해사항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피해사항 예시 : 사적인 명령,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성희롱, 기타]

- ① 구타, 가혹행위 (신체폭력) ②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③ 사생활 침해 ④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⑤ 휴식권 미보장 ⑥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⑦ 정서적 학대(예. 무시, 따돌림) ⑧ 고의적인 고충처리 방해 (예: 사적심부름)
⑨ 기타() ⑩ 없음

※ 24번부터 29번까지는 그린캠프 복귀병사에 관한 문항입니다.

24. 그린캠프 복귀병사들이 겪는 피해사항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구타, 가혹행위 (신체폭력) ②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③ 사생활 침해 ④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⑤ 휴식권 미보장 ⑥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⑦ 정서적 학대(예. 무시, 따돌림) ⑧ 고의적인 고충처리 방해 (예: 사적심부름)
⑨ 기타() ⑩ 없음

25. 그린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귀하의 인식과 일치하는 문항에 답해주세요.

- ① 그린캠프 복귀병사와 일반병사는 차이가 없다
② 그린캠프 복귀병사는 자기 조절을 못하고 의지력이 약해서 군 적응이 힘들 것이다
③ 그린캠프 복귀병사가 하는 행동은 군 복무기피를 위한 것이다
④ 그린캠프 복귀병사는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⑤ 그린캠프 복귀병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전우들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다
⑥ 기타 ()

26. 그린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좋지 않다 ② 별로 좋지 않다 ③ 약간 좋다 ④ 상당히 좋다

27.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8. 귀하는 그린캠프 복귀병사들이 받고 있는 차별, 편견,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 강사의 강의 및 교육 ② 관련 영상 시청 ③ 동료병사 및 간부와의 대화
④ 인식개선 캠페인 ⑤ 기타 ()

29. 병사들의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방법 중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로 도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조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제안에 의해 수행되는 설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나 응답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52조(비밀누설의 금지)에 의해 절대 **비밀보장**이 되며, 설문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한 문항, 한 문항이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응답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설문지의 질문들은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2. 내용을 끝까지 잘 읽으신 다음,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해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안내에 따라 각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7 월

국 가 인 권 위 원 회

1. 귀하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 | | | | | |
|------|------|------|------|------|
| ① 하사 | ② 중사 | ③ 상사 | ④ 원사 | ⑤ 소위 |
| ⑥ 중위 | ⑦ 대위 | ⑧ 소령 | ⑨ 중령 | ⑩ 대령 |

2. 소속 군은 무엇입니까?

- | | | | |
|------|------|-------|------|
| ① 육군 | ② 해군 | ③ 해병대 | ④ 공군 |
|------|------|-------|------|

3. 귀하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

※ 4번부터 10번까지는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4.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처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대체로 좋다 ④ 매우 좋다

5. 병사들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7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르겠다(7번으로 이동)

6. (5번에서 ①에 응답하셨다면) 주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군대란 원래 그런 곳이다
- ② 군의 지휘, 통솔, 교육에 문제가 있다
- ③ 인권 법령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
- ④ 장교들 태도에 문제가 있다
- ⑤ 부사관 태도에 문제가 있다
- ⑥ 병 상호간 문제가 있다
- ⑦ 기타 (_____)

7. 병사들의 인권이 개선된다면 군의 기강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보다 저하될 것이다 ② 변화 없을 것이다
- ③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 ④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다

8. 병사들의 인권이 간부의 지휘권과 충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상당히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지휘하는 병사들에게 인권 관련 문제가 생기면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① 해당 병사를 불러 해결한다
- ② 당사자가 아닌 분대장 등 선임병을 통해 해결한다
- ③ 해당 지휘계통으로 보고해 해결하게 한다
- ④ 징계, 사법처리 등 사법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게 한다
- ⑤ 기타 (_____)

10. 병사들의 인권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폭력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②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 ③ 의식주
- ④ 통신 (가족, 친구, 애인과 연락) ⑤ 월급 ⑥ 내무시설
- ⑦ 종교 활동의 제한 또는 강요 ⑧ 휴식권 미보장 ⑨ 기타 (_____)

※ 11번부터 17번까지는 인권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11.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8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르겠다 (18번으로 이동)

12. 인권교육을 받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다? (복수응답 가능)

- ①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② 인권보호 모범 사례 및 침해 사례
③ 인권 침해 시 권리 구제 제도의 구체적 이용 방법
④ 인권 정책 및 규정의 이해
⑤ 기타 (_____)

13. 지난 1년간 인권 교육을 받은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10회 ⑤ 11회 이상

14. 인권교육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 ① 교육기관 (16번으로 이동) ② 자대 (15번으로 이동) ③ 사이버 인권교육(16번으로 이동)

15. (14번에서 ② 에 답하였다면) 인권교육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 ① 부대의 상관 및 정훈장교 ② 군 전문 강사 ③ 외부 전문강사 ④ 기타(_____)

16. 인권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까?

- ① 개선되었다 ② 변화 없다 ③ 저하되었다

17. (16번에서 ② 또는 ③ 에 답하였다면) 인권 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인권 교육이 형식적이다
② 인권 교육을 받아도 상급자들이 변화가 없다
③ 인권이 침해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
④ 기타 (_____)

※ 18번부터 23번까지는 인권침해 구제 및 보호 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18.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나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방부 등 상급 부대 ② 법무, 헌병, 감찰 등 군 내부 기관 ③ 지휘관
④ 장교 ⑤ 부사관 ⑥ 병사
⑦ 국가인권위원회 ⑧ 국민권익위원회 ⑨ 외부 NGO 단체
⑨ 기타 (_____)

19. 이전에 비해 병사들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 또는 구제 요청 이용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증가하지 않았다 ② 변화 없다 ③ 조금 증가하였다 ④ 매우 증가하였다

20. (19번에서 ① 또는 ② 에 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휘관의 인식, 의지 등의 문제
② 구제 제도에 대한 병사 교육 미흡
③ 구제 제도 자체의 문제성
④ 구제 제도 활용 여건 문제
⑤ 인권침해 사례 감소
⑥ 기타 (_____)

21. 현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어느 기관이나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지휘관 및 주임원사 ② 인사부서 ③ 감찰부서
④ 법무부서 ⑤ 헌병 ⑥ 국가인권위원회
⑦ 국민권익위원회 ⑧ 외부 NGO 단체 ⑨ 기타 (_____)

22. 병사들의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중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도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23. 병사들의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해 법,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24번부터 36번까지는 복무부적응 병사 및 그린캠프 복귀병사에 관한 문항입니다.

24. 현재 부대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가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약간 있다 ③ 매우 많다 ④ 잘 모르겠다

25. 만약 병사들이 군대 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음 중에서 V표시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부당한 명령 및 처벌 ② 비합리적인 군대 문화 ③ 열악한 근무환경 ④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⑤ 보직 불만족 ⑥ 고된 훈련 ⑦ 선임병과의 갈등 ⑧ 가정문제
⑨ 여자친구 문제 ⑩ 제대 후 진로 부담감 ⑪ 성격문제 ⑫ 많은 암기 및 교육
⑬ 비자발적 입대 ⑭ 성문제 ⑮ 기타(_____)

26. 귀하께서 주로 접한 복무부적응 병사의 유형을 골라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소외 · 따돌림 당하는 병사
- ② 태도불량 및 명령불복종 하는 병사
- ③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는 병사
- ④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
- ⑤ 잦은 실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
- ⑥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병사
- ⑦ 기타(_____)
- ⑧ 없음

27. 그린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귀하의 인식과 일치하는 문항에 답해주시시오.

- ① 그린캠프 복귀병사와 일반병사는 차이가 없다
- ② 그린캠프 복귀병사는 자기 조절을 못하고 의지력이 약해서 군 적응이 힘들 것이다
- ③ 그린캠프 복귀병사가 하는 행동은 군 복무기피를 위한 것이다
- ④ 그린캠프 복귀병사는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 ⑤ 그린캠프 복귀병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전우들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다
- ⑥ 기타 (_____)

28. 복무부적응 병사 문제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은?

- ① 전혀 없다
- ② 별로 없다
- ③ 약간 있다
- ④ 상당히 있다

29. 현재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처우는?

- ① 전혀 좋지 않다
- ② 별로 좋지 않다
- ③ 약간 좋다
- ④ 상당히 좋다

30. 복무부적응 병사들이 겪는 피해사항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피해사항 예시 : 사적인 명령,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성희롱, 기타]

- ① 구타, 가혹행위 (신체폭력)
- ②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 ③ 사생활 침해
- ④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 ⑤ 휴식권 미보장
- ⑥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예: 사적 심부름)
- ⑦ 정서적 학대(예. 무시, 따돌림)
- ⑧ 고의적인 고충처리 방해
- ⑨ 기타(_____)
- ⑩ 없음

31. 복무부적응 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① 피해자에게 참도록 설득
- ②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합의를 유도
- ③ 피해자의 피해상황 파악 후 가해자 처벌
- ④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처우개선
- ⑤ 군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음
- ⑥ 기타(_____)

32. 복무부적응 병사에게 일어나는 피해사항을 처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근무평정에 대한 불이익
- ② 부적응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 ③ 처리제도 미비
- ④ 부대 기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⑤ 병사 요구사항(보직변경, 전역요구 등) 처리
- ⑥ 기타(_____)

33.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무부적응 병사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 ②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 ③ 약간 침해된다
- ④ 매우 침해된다

34. (33번에 ③ 또는 ④ 에 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군대가 원래 그런 곳이므로
- ②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병사에게 표출되므로
- ③ 지휘, 통제 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 ④ 병사의 효율적 군복무 적응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 ⑤ 기타(_____)

35. 그린캠프 복귀병사들이 겪는 피해사항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피해사항 예시 : 사적인 명령,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성희롱, 기타]

- ① 구타, 가혹행위 (신체폭력)
- ②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 ③ 사생활 침해
- ④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 ⑤ 휴식권 미보장
- ⑥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예: 사적 심부름)
- ⑦ 정서적 학대(예. 무시, 따돌림)
- ⑧ 고의적인 고충처리 방해
- ⑨ 기타(_____)
- ⑩ 없음

36. 귀하는 그린캠프 복귀병사들이 받고 있는 차별, 편견,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 강사의 강의 및 교육
- ② 관련 영상 시청
- ③ 동료병사 및 간부와의 대화
- ④ 인식 개선 캠페인
- ⑤ 기타 (_____)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조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제안에 의해 수행되는 설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나 응답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52조(비밀누설의 금지)**에 의해 절대 **비밀보장**이 되며, 설문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한 문항, 한 문항이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응답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설문지의 질문들은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2. 내용을 끝까지 잘 읽으신 다음,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해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안내에 따라 각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7 월

국 가 인 권 위 원 회

1. 귀하의 계급이 무엇입니까?

-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 병장

2. 소속 군은 무엇입니까?

- ① 육군 ② 해군 ③ 해병대 ④ 공군

3. 귀하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

※ 4번부터 10번까지는 군 내 인권교육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4. 입대 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르겠다 (11번으로 이동)

5. 인권교육을 받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다? (복수응답 가능)

- ①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② 인권보호 모범 사례 및 침해 사례
③ 인권 침해 시 권리 구제 방법의 구체적 이용 방법
④ 인권 정책 및 규정의 이해
⑤ 기타 (_____)

6. 인권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훈련소 ② 자대 ③ 그린/힐링캠프

7.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10회 ⑤ 11회 이상

8. 인권교육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분대장 ② 부사관 ③ 소대장 ④ 중대장 ⑤ 대대장 이상 지휘관
⑥ 참모장교 ⑦ 외부강사

9. 인권교육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까?

- ① 개선되었다 ② 변화 없다 ③ 저하되었다

10. (9번에서 ② 또는 ③ 에 답하였다면)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인권 교육이 형식적이다
② 인권 교육을 받아도 상급자들이 변화가 없다
③ 인권이 침해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
④ 기타 (_____)

※ 11번부터 27번까지는 인권침해 및 구제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11. 병사들의 인권의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폭력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②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 ③ 의식주
- ④ 통신 (가족, 친구, 애인과 연락) ⑤ 월급 ⑥ 내무시설
- ⑦ 종교활동의 제한 또는 강요 ⑧ 휴식권 미보장 ⑨ 기타 (_____)

12. 귀하는 현재 군에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② 조금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조금 많다고 생각한다 ④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13.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나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방부 등 상급 부대 ② 법무, 헌병, 검찰 등 군 내부 기관 ③ 지휘관
- ④ 장교 ⑤ 부사관 ⑥ 병사
- ⑦ 국가인권위원회 ⑧ 국민권익위원회 ⑨ 외부 NGO 단체
- ⑩ 기타 (_____)

14. 이전에 비해 병사들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 또는 구제 요청 이용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증가하지 않았다 ② 변화 없다 ③ 조금 증가하였다 ④ 매우 증가하였다

15. (14번에서 ① 또는 ② 에 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휘관의 인식, 의지 등의 문제
- ② 구제 방법에 대한 병사 교육 미흡
- ③ 구제 방법 자체의 문제성
- ④ 구제 방법 활용 여건 문제
- ⑤ 인권침해 사례 감소
- ⑥ 상급자의 제지
- ⑦ 기타 (_____)

16. 현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어느 기관이나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지휘관 및 주임원사 ② 인사부서 ③ 감찰부서
- ④ 법무부서 ⑤ 헌병 ⑥ 국가인권위원회
- ⑦ 국민권익위원회 ⑧ 외부 NGO단체 ⑨ 기타 (_____)

17.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별로 아는 것이 없다 ③ 조금 안다 ④ 상당히 알고 있다

18.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징계 등 사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별로 아는 것이 없다 ③ 조금 안다 ④ 상당히 알고 있다

19.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관한 사안을 누구와 상담하겠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지휘관 ②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③ 군종 장교 ④ 군의관
 ⑤ 주임원사 ⑥ 행정정보관 ⑦ 분대장/동기 ⑧ 기타

20.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의견건의, 상담, 헌병에 요청, 법무참모부에 요청 등 비 사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별로 아는 것이 없다 ③ 조금 안다 ④ 상당히 알고 있다

21.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별로 아는 것이 없다 ③ 조금 안다 ④ 상당히 알고 있다

22. 그린캠프 입소 전 알고 있었던 인권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에 체크해 주십시오.

-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 지휘관과의 대화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상담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 부대 인권상담관과의 상담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 감찰, 헌병참모에 의한 구제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 외부 NGO 단체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 국방 신문고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 국방 헬프콜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 기타 ()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23. 다음은 인권침해 구제방법에 대한 경험 유무와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구제제도 중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만족도를 표시해주세요.

구제방법	경험 유무		만족도					불만족 이유 *만족도에서 ①,②에 답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주된 이유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비밀보장이 안됨 ②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 불이익을 받음 ④ 신고자 신상에 영향 미침 ⑤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⑥ 처리결과 통보 안됨 ⑦ 사건 재발방지 노력 미흡 ⑧ 기타 ()
	있 다	없 다	전 혀 만 족 하 지 않 음	거 의 만 족 하 지 않 음	조 금 만 족	상 당 히 만 족	매 우 만 족	
1.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지휘관과의 대화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국민권익위원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외부 NGO 단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국방신문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국방 헬프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4. 만약 구제방법을 전혀 이용해보지 않은 경우 문제를 제기해본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② 구제 방법을 알지 못해서
- ③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④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 ⑤ 구제 방법으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 ⑥ 기타 (_____)
- ⑦ 해당사항 아님(구제 방법 사용 경험 있음)

25. 다음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각각의 구제방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운영실태)에 대한 문항입니다.

구제방법	운영실태					이유
	전혀 운영되지 않음	거의 운영되지 않음	잘 운영됨	매우 잘 운영됨	갈 모르겠음	
						* 운영 실태에서 ①,②에 답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주된 이유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비밀보장이 안됨 ②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③ 불이익을 받음 ④ 부대 분위기 및 단결에 영향 줌 ⑤ 접근성이 떨어짐 ⑥ 간부들의 인식 부족 ⑦ 기타 (_____)
1.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	①	②	③	④	⑤	
2. 지휘관과의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간부와의 비공식적 접촉	①	②	③	④	⑤	
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①	②	③	④	⑤	
5. 부대 인권상담관 상담	①	②	③	④	⑤	
6. 감찰, 헌병 참모에 의한 구제	①	②	③	④	⑤	
7.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8. 국민권익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9. 외부 NGO 단체	①	②	③	④	⑤	
10. 국방 신문고	①	②	③	④	⑤	
11. 국방 헬프콜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⑤	

26. 귀하는 군 내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다면 어떤 구제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 내 사법제도 이용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지휘관과의 대화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간부와 비공식적 접촉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지휘관 및 상급자에게 보고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외부 NGO 단체에 진정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국방 신문고 이용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국방 헬프콜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부모님, 친지, 친구에게 알림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 기타 ()	① 효과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27. 아래의 문항 중 그린캠프 입소 전 겪었던 인권침해가 있다면 아래에서 체크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구타, 가혹행위(신체폭력)
- ②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 ③ 사생활 침해
- ④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⑤ 휴식권 미보장
- ⑥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예. 사적 심부름)
- ⑦ 정서적 학대(예. 무시, 따돌림)
- ⑧ 고의적인 고충처리 방해
- ⑨ 기타()
- ⑩ 없음

※ 28번부터 33번까지는 그린캠프 관련 인권침해에 관한 문항입니다.

28. 아래에 제시된 문항을 읽고 그린캠프 내에서 경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그린캠프 입소를 원하지 않았지만 입소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입소의 이유를 듣지 못하였거나, 캠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그린캠프에 입소하게 되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구타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개인 고충을 상급자에게 알렸다고 괴롭히고 질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상급자들이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지시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 지시, 간섭을 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자유 시간, 정비시간, 자기계발 시간 등의 사생활이 보장 되지 않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생필품(보급품) 보급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기에 어렵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그린캠프 내에 마땅히 실 만한 곳이 없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개인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 시설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화장실, 세면장, 목욕탕 등의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의료 시설이나 의료 도구 지원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입소병사에 대한 보호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전화기 등과 같은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구타, 가혹행위 및 폭언을 목격하거나 당해도 보고하지 않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고민이나 건의사항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 상담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계급과 직책의 권위식으로 인해 위압감을 느끼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9. 아래의 문항 중 그린캠프 복귀 후 겪었던 인권침해가 있다면 아래에 표시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 | |
|----------------------|----------------------------|
| ① 구타, 가혹행위(신체폭력) | ② 상급자의 욕설, 괴롭힘 |
| ③ 사생활 침해 | ④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 ⑤ 휴식권 미보장 | ⑥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예. 사적 심부름) |
| ⑦ 정서적 학대(예. 무시, 따돌림) | ⑧ 고의적인 고충처리 방해 |
| ⑨ 기타(_____) | ⑩ 없음 |

30. 그린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처우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좋지 않다 ② 별로 좋지 않다 ③ 약간 좋다 ④ 상당히 좋다

3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32. 귀하는 그린캠프 복귀병사들이 받고 있는 차별, 편견,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 강사의 강의 및 교육 ② 관련 영상 시청 ③ 동료병사 및 간부와의 대화
④ 인식개선 캠페인 ⑤ 기타 ()

33. 병사들의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중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도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쇄일 | 2017년 12월
| 발행일 | 2017년 12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조사총괄과 02)2125-9913
| F A X | 02)2125-0921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제작 | 덕인미디어 02)2278-1289